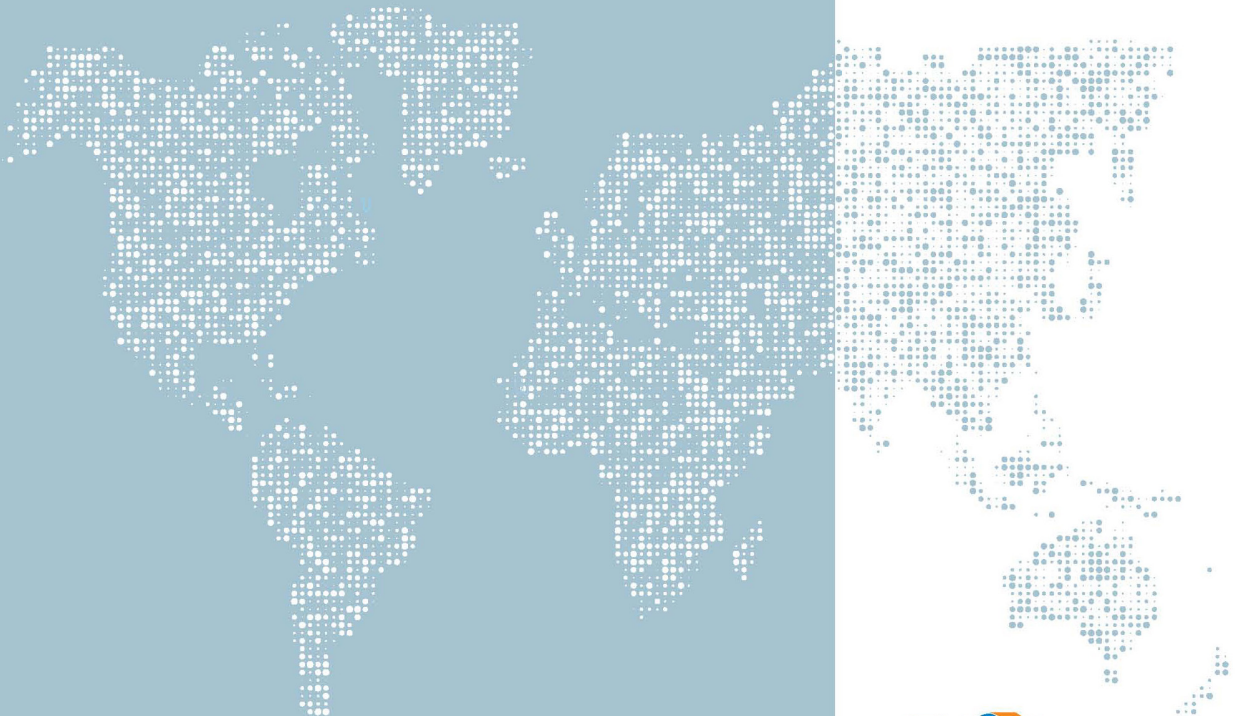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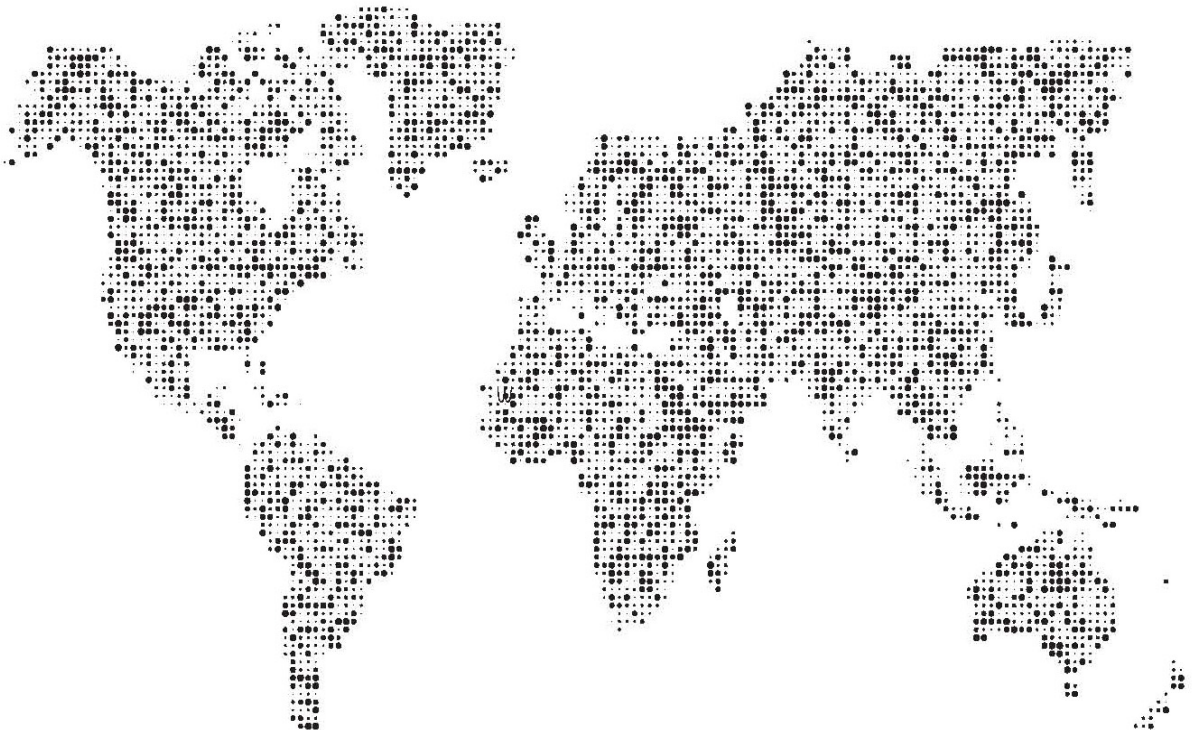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2012. 11

Q&A Foreign Trade Law
Interpretations Casebook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 간 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무역의 확대와 그 궤를 함께 해 오는 한편,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무역을 통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빈약한 자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여 왔고,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 이후 30년간 연평균 6.8%라는 고도성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30% 수준에서 2010년 80%대를 넘어섰으며, 무역규모도 1964년 1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달러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수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무역법」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무역을 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서 무역거래 정의, 원산지 표시, 전략물자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역거래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인,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들의 법령 해석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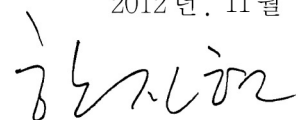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업인, 관세사 등이 무역업무를 하는 데 편의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례집은 대외무역법에 대한 법령해설과 함께 그간의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하였고, 특히 무역거래, 원산지 표시, 전략물자 관리 등 대외무역법의 주요 분야를 통합하여 한권의 책자로 발간한 것으로서 무역종사자들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무역인들이 무역거래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무역투자실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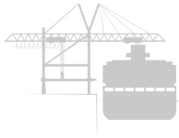
2012년 11월

무역투자실장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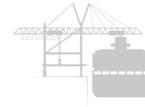
Ⅰ. 수출입 거래	1
1. 대외무역법 및 수출입거래 개요	7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37
Ⅱ. 원산지 관리	109
1. 원산지관리 제도 개요	115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143
Ⅲ. 전략물자의 수출입	201
1. 전략물자관리제도 개요	207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239
첨부. 대외무역법 관련규정	291
1. 대외무역관리규정	295
2. 수출입공고	341
3. 통합공고	353
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425
5.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 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453
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469

I

수출입 거래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Contents

(수출입 거래)



1. 대외무역법 및 수출입거래 개요	7
1. 대외무역법 개요	9
2. 수출입 관리	18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23
4. 수출입 실적	26
5.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31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37
1. 무역의 정의 및 범위	39
2. 용역의 범위	58
3.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정의	60
4. 수출입의 원칙	66
5. 수출입의 제한	67
6. 수출입 승인 면제	69
7. 통합공고	71
8.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75
9. 수출입 실적의 인정	79
10.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86
1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과 외화획득의 범위	90
12. 외화획득 이행기간	93
1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승인	94
1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정의	95
15.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 구매 (구매확인서)	97
16. 벌칙 (무역거래 관련)	107

C Contents



유권해석 사례(주제별)

○ 무역의 정의 및 범위

Q1.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해당 여부	45
Q2.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해당여부	46
Q3. 중계무역 인정 범위	47
Q4. 중계무역 또는 중개무역 해당여부	49
Q5.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의 수출 해당 여부	50
Q6. 4자간 거래에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51
Q7. 임대수출 해당 여부	53
Q8. 면세점 물품판매가 수출에 해당 여부	54
Q9.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도 「대외무역법」 상 수출 여부	56
Q10. 수출선박 제조 시 임가공용역의 수출실적 인정 여부	61
Q11. 해외건설공사를 위한 용역 제공 시 수출실적 여부	62
Q12. 무형서비스 수출실적 확인 증명	63
Q13. 경영 컨설팅 사업의 수출실적 인정 여부	65

○ 수출입의 제한

Q14. 원석 및 부순골재 등을 해외로 수출 가능한지 여부	72
Q15. 전시용 오토바이 수입 요건면제 확인	73
Q16. 수출용 식품 원료 수입 시 요건면제 대상 여부	74

○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Q17. 무환수출 시 특정거래 신고 여부	77
Q18. 수출입 대금 결제 은행이 다른 중계무역의 경우 신고여부	78



○ 수출입 실적의 인정

Q19. 위탁가공무역의 수출실적인정 여부	82
Q20. 위탁가공무역 수출 실적 여부	83
Q21. 무환수출 후 현지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	84
Q22.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물품 판매의 수출실적 인정여부	85

○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Q23. 무역업자에 대한 별도 자격 조건 여부	88
Q24. 무역업고유번호 승계 여부 관련	89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등

Q25. 2~3차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99
Q26.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의 한도	100
Q27. 구매확인서 이중 발급 가능 여부	101
Q28. 구매확인서 사전·사후 발급 기준	103
Q29.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국내물품 구매 시 구매확인서 발급여부	104
Q30. 외화획득용 용역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	105
Q31. 본사와 지점간에 거래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106

1. 대외무역법 및 수출입거래 개요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 대외무역법 개요

1.1 목적 및 성격

☒ 대외무역법 목적 및 운용 원칙

- 「대외무역법」은 ①대외무역 진흥 ②공정 거래 질서 확립 ③국제수지 균형 ④통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외무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을 「대외무역법」의 운용 원칙으로 함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의 성격

● 무역에 관한 기본법

- 무역에 관해 다른 법이 「대외무역법」적용을 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무역거래에 대해 「대외무역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대외무역법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진흥’을 동 법의 첫번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은 무역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 무역에 관한 통합법

- 「대외무역법」 제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이하 수출·수입 요령) 등을 제·개정 시 지식경제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수입 요령의 조정을 요청 가능
-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수입 요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 등(이하 “수출·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령 및 관련 공고의 체계



※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1.2 대외무역법 변천(주요 개정 및 내용)

제 · 개정일	주요 내용
제정 (1986.12.31)	• 산업피해조사제도 • 디자인보호제도 • 무역정책심의회 설치 • 국산원료 · 기재의 사용촉진을 위한 수입승인 • 수입조합 설립 • 상표권 · 의장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불공정수출입행위
개정 (1992.12.8)	•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사유로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인간 · 동 · 식물의 건강 및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 • 통상진흥시책 수립 • 원산지 증명서 제출, 원산지판정기준 신설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 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개정 (1994.12.31)	• 무역대리업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산업설비수주계획 신고 및 산업설비수출기금 폐지 •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신설
전문 개정 (1996.12.30)	• 무역업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수출입승인제도가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사실상 폐지) • 전자문서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 구축조항 신설 • 원산지 표시의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 • 선적전검사제 도입
개정 (1999.2.5)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수출입이행사항 확인 폐지 • 수출입조합 설립인가제 폐지 • 무역정책심의회 폐지
개정 (2000.12.29)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 •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 및 취소 제도 • 산업피해조사제도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01.2.3 개정
개정 (2003.9.29)	• 용역을 무역의 범위에 포함 • 전문무역상사 지정제도 도입 •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 전락물자 수출통제 실효성 확보 • 조정명령 발동 요건의 명확화
개정 (2007.1.3)	• 전락물자의 범위 정비 • 전락물자의 국내유통 관리 도입 • 전락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도입 • 전락물자관리원 설립 도입
개정 (2009.4.22)	• 종합무역상사 및 전문무역상사 지정제도 폐지 •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과 비밀유지의무 •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 전락물자의 국내관리제도(확인 · 신고 · 통보의무)폐지
개정 (2010.4.5)	• 수입 후 단순가공을 통해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물품의 당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 벌칙 강화 • 플랜트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근거 마련

1.3 대외무역법의 관리대상

■ 무역주체

● 연 혁

- '86.12월 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이 허가제(무역대리업은 등록제)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의 자격요건이 요구되었으나, '92.12월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이 등록제로 완화 되었으며, '94. 12월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대리업이 신고제로, '96.12월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업을 신고제로, 시효규정으로 인해 2000. 1월부터 신고제가 폐지되어 현재 무역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됨.

법 개(제)정일	무 역 업	무역대리업
1986. 12. 31	허가제	등록제
1992. 12. 8	등록제	등록제
1994. 12. 31	등록제	신고제
1996. 12. 30	신고제(1999.12.31폐지)	신고제(1999.12.31폐지)
2000. 1. 1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 무역업고유번호 제도

- ① 목적 및 의의 : 국가의 수출입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어도 무역 거래는 가능하나,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② 관련규정 : 시행령 제21조 · 제22조, 관리규정 제24조
- ③ 발급자 : 한국무역협회장
- ④ 신청방법
 -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우편, 전자메일, 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 무역협회에 신청
 - 무역협회는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함
- ⑤ 지위변동(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등)시 기존 고유번호 유지, 수출입실적 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신청



수출입 물품

- 「대외무역법」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법규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국제법규의 이행 · 생물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등에서 지정 · 고시하고 있으며, 이 이외의 품목은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음.

〈 수출입 물품관리체계 〉



수출입 지역

수출입지역제한 사유 (법 제5조)

- ① 교역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시 (제1호)
- ② 교역상대국이 조약,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정하는 경우 (제2호)
- ③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제한을 가하는 경우 (제3호)
- ④ 무역에 관한 조약, 국제법규에 의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호)
- ⑤ 인간의 생명 · 건강 및 안전, 동 ·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호)

* 지식경제부에서는 제4호에 의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고시하여 이라크,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에리트레아, 레바논, 리비아 9개 국가에 대하여 무기 · 탄약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1.4 수출입 정의

▣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정의 (시행령 제2조)

가. 국내(외국)에서 외국(국내)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유 · 무상 불문)

- 여기서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하므로, 관세법상의 보세창고,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등도 국내임.
 - 즉, 수출신고를 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 하더라도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로 간주하지 않으며, 물품을 선적하여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대외무역법상의 수출로 인정하며,
 -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인정되지만,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음.
- 공해상의 선박은 국제법상 해당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므로,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행위로 간주하지만,
 - 선 · 기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상의 외화획득행위로 간주하여 수출개념에 들어가지 않음.

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 (유상거래만 해당)

-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는 유 ·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으로 인정되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만이 대외무역법상의 수출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위탁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현지 위탁가공업체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현지 국가 포함)
 - 중계무역 (한 국가내에서 이동 포함, 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관리규정 제2조 제13호)
 - 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 (관리규정 제2조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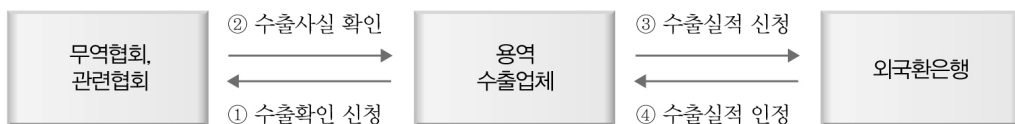
다. 거주자(비거주자)의 비거주자(거주자)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영역

- 거주자 :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비거주자 :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를 의미하며,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 간주.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관리규정 제3조 제1항)

구 분	영역의 수출입 방법
제1항제1호	영역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사례 : 우리나라 SI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업체에 컨설팅 제공)
제1항제2호	비거주자(거주자)의 국내(외국) 소비에 의한 공급 (사례 : 해외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SI업체에게 컨설팅을 제공받음)
제1항제3호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업적 외국(국내)주재에 의한 공급 (사례 : 우리나라 SI업체가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업체에 컨설팅 제공)
제1항제4호	거주자(비거주자)의 개인적 외국(국내) 주재에 의한 공급 (사례 : 우리나라 SI업체 직원이 해외로 파견되어 해외업체에 컨설팅 제공)

- 영역의 범위 (시행령 제3조)
 - 경영상담업, 법무, 회계, 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 (영화·음반·게임 등), 운수업, 관광사업 및 기술(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 영역의 수출실적 확인은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와 외국환은행의 장의 입금확인을 통해 이루어짐
 -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 확인도 동일

〈 영역의 수출실적 확인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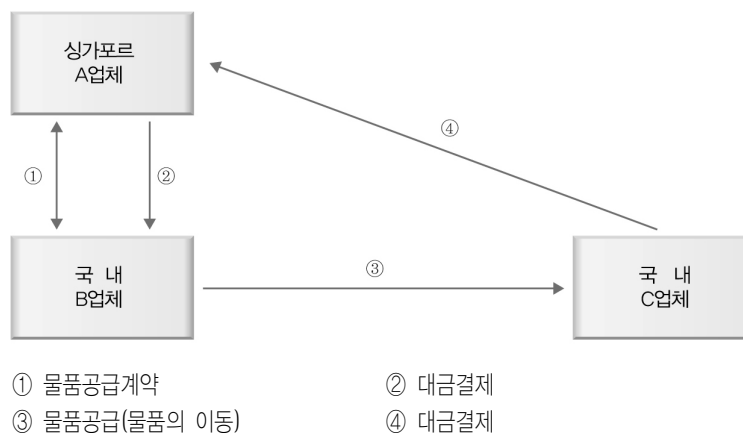
라. 거주자(비거주자)가 비거주자(거주자)에게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도(인수)하는 것

-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영상물, 음반물, 전자서적, DB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의미함
- 전송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이란, 노트북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행위를 말함.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 확인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외국환은행장의 입금확인을 통해 이루어짐

☐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여부 판단 시 유의할 사항

-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란 원칙적으로 통관절차 등을 거쳐 국내와 외국간의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만을 의미.
- 계약 당사자, 대금수령 형태 등은 무역거래 판단에 있어 고려사항일 뿐 필수요소는 아님.
예를 들어 설명하면,

〈 거래예시 〉



- 위 그림과 같은 거래에서 국내 B업체는 싱가포르 A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 C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외화를 영수하였으나, 물품의 이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대외무역법상의 수출로 인정받지 못함.
- 국내 C업체가 물품공급 대가를 싱가포르 A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이루어짐



2 수출입 관리

2.1 수출입의 원칙

- 수출입행위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등 무역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입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짐이 기본원칙.



대외무역법 제10조(수출입의 원칙)

- ①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2 수출입 제한 사유

☒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관련 : 기본 사유

-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 보호 목적 (시행령 제16조제1 · 2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 목적 (시행령 제16조제3호)
- 방위산업용 원료 · 기재, 항공기(부분품 포함)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 산업정책상 필요시 (시행령 제16조제4호)
- 관련고시 : 『수출입공고』

☒ 대외무역법 제12조 관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령을 제 · 개정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통합하여 공고

- 무역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51개 등 개별법을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확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제도
- 관련고시 : 『통합공고』

■ 대외무역법 제5조(특별조치) 관련

● 제한사유

- ① 교역상대국에 전쟁, 사변 또는 천재·지변 발생시
- ②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정하는 경우
- ③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 ④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의 ②, ③항의 경우는 무역보복을 위한 조항이지만 현재 특별조치 고시된 교역상대국은 없으며, ④항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가 운영중

● 관련고시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 동 특별조치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을 위하여 UN 안보리 결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가별 무역제재 및 김벌리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다이아몬드원석 수출입 통제를 위하여 운용

① UN 안보리 결의사항 이행을 위한 수출입 제한

- 제한국가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및 제한국가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의 금지
- 제한국가 : 이라크,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코트디부와르,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에리트레아, 레바논, 리비아(9개국)

② 김벌리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수출입 제한

- 김벌리 프로세스 회원국가간에만 거래가 가능하며, 수출입시 정부에서 발행한 김벌리 프로세스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김벌리 프로세스 체제 : 아프리카내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군들의 군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체제



〈 별표 2-1 〉 김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회원수 (77개국)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가나,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콩고공화국,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고,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카메룬

* 베네수엘라는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을 중지함

*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UN 제재하에 있으며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하지 않음

2.3 수출입공고

☐ 총 칙

-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상의 수출입제한사유에 대한 고시로서, 수출입 품목관리를 위한 기본공고
 -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승인물품이라 함은 수출입공고에 정한 물품등을 의미 (관리규정 제9조)
- 수출입공고에는 수출입승인대상품목 · 승인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8조 및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10조 내지 제14조에 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

☐ 수출입승인 대상품목

-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사유에 따라 수출입공고에 정한 물품 등을 의미. 다만, 중계무역물품 · 외국인수수입물품 · 외국인도수출물품 · 선용품은 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

☐ 수출입 승인기관

- 수출입 승인기관은 수출입공고에서 지정한 당해품목의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한국농림수산 식품수출입조합, 한국골재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 수출입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유권한이나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권한의 위임 ·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제7항에 의하여 당해품목의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 위탁

☒ 수출입 승인면제

- 수출입승인 대상물품중 긴급을 요하는 물품, 기타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승인을 면제한다.
 - 외교관 등이 휴대하는 물품 등
 - 긴급을 요하는 물품
 - 주된 수출입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입하는 물품
 - 무상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는 물품
 - 특정지역에 수출입하는 물품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
 - 해외이주자가 반출하는 장비 등

☒ 수입수량제한조치의 고시

- 대외무역법 제39조의 수입수량제한조치, 제41조의 특정국(중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수입제한의 기본공고인 수출입공고에 고시

2.4 통합공고

☒ 총 칙

- 목적 :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무역업자가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하나의 공고에 통합함으로써 무역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함

* 수출입공고와의 차이 : 이론상으로 수출입공고에서의 수출입제한은 물량의 제한 성격이 강하지만, 통합공고상의 품목은 절차상의 요건확인을 득하면 물량 제한없음

☒ 대상물품

- 51개 주요 개별법 등 및 국제협약에서 관장하는 품목 (통합공고 별표 1·2 품목)



☒ 요건확인 절차

- 요건확인기관 : 통합공고 별표 1·2에 기재 기관
- 유효기간 : 수출입승인기간을 준용
- 요건확인신청시 공통구비서류
 - 수입 : 수출입요건확인 신청서,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 수출 : 수출입요건확인 신청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사본
- 한개의 수출입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되어 2개 이상의 요건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부과된 2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출입 가능

☒ 요건확인 면제

- 요건확인 면제사유 (통합공고 제12조)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 중계무역·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정 별표 4)관련 수입승인면제 사유 해당
 - 해당 법령의 요건확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입공고와의 관계

- 하나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통합공고의 수출입 요건확인 내용과 수출입공고(또는 전략물자수출 입고시)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이 가능

3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3.1 특정거래의 의의 및 유형

☐ 특정거래형태의 의의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개념 및 인정의 의의

- 일반적인 수출입거래 형태(유상거래로서 국내외로 물품이 이동하여 세관 등 관련기관에서 물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거래
-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 및 유통이 되는 등 무역거래환경 변화의 반영 및 수출입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

●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유형

- 수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한 거래
-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등의 이동만 있는 거래

☐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 ① 위탁판매수출 : 환(換)거래없이 물품을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② 수탁판매수입 :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 ③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 ④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
- ⑤ 임대수출(임차수입) :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수출)하거나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이전받는) 수출(수입)



- ⑥ 연계무역 :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
 - 물물교환(Barter Trade) : 화폐(신용장, 어음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교환하는 거래
 -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음.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됨
 -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별도거래 방식으로 쌍방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수출과 수입과 각각 별도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두 개의 일반신용장이 개설. 즉, 형식상으로는 완전 분리된 두 개의 일반무역거래 형태
 - 제품환매(Buy Back) : 플랜트(산업설비)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거래 형태
- ⑦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며,
 - 이 경우 물품을 수입한 현지 국가의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도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으로 인정(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물품 포함)
- ⑧ 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 받는 수입
 - 외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현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외국인 수수입하는 경우 등을 포함
- ⑨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 ⑩ 무환수출입 :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등의 수출입

3.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대상

■ 인정대상의 축소

- '01.4.2일 이전에는 특정거래형태 중 위탁판매수출 · 위탁가공무역 · 임대수출 · 연계무역 · 중계무역 · 외국인수수입 · 무환수출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특정거래인정을 받도록 하였음
- '01.4.20이후는 무환수출 또는 무환수출이 복합된 거래(무환수출이 중계무역 · 외국인도수출 · 외국인 수수입과 복합된 거래)에 대해서만 특정거래인정을 받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
- '03. 2월 이후에는 중계무역을 특정거래 인정대상으로 재지정
- 현재 모든 특정거래가 신고대상은 아니며, 무환수출 일부거래 및 중계무역 일부거래만 정부에 신고가 필요한 거래임

■ 무환수출

● 개념 :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

● 무환수출의 종류

- 無償無換 : 증여, 상속 등
- 有償無換 : 위·수탁판매무역, 위·수탁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수출입, 임대차수출입, 물물교환 등
 - * 위·수탁판매무역, 위·수탁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수출입, 임대차수출입, 물물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有償無換수출은 해당 무역거래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므로 무환수출이 아닌 본래의 무역거래 형태로 분류함(예: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무환수출은 위탁판매무역으로 분류)

● 인정대상인 무환수출

-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에서 정한 사유(수출승인 면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환수출거래는 특정 거래인정 대상
- 다만,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연계무역 등의 목적으로 무환수출되는 무역거래 형태는 인정대상에서 제외

■ 중계무역

-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는 거래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 가능
-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대금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 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대금 영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없이 거래 가능



4 수출입 실적

4.1 개념 및 의의

☐ 개념

- 수출실적의 정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함.
- 수입실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함.
 - 대외무역법규상 물품의 수출입은 국내외간에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나 수출입실적은 국내외간의 물품이동은 물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에서 일어나는 물품이동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무상 수출입 거래는 수출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수출입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의의

- 수출실적은 수출의 개념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국가무역정책의 목표달성 및 원활한 무역거래 촉진 등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결정 및 자금지원, 무역의 날 포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출통계는 수출실적의 합계가 아님
 - * 수출통계는 수출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통관을 거친 경우에만 계상되는 거시통계이나, 수출실적은 무역정책상 인정하는 개별기업의 수출등의 실적수치임

4.2 인정범위

☐ 수출실적

- ①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 국내외간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중 유상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

② 수출입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외국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 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함)

* 무상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실적으로 인정

③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 국내거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수출물품등의 제조공정에서 국내 원료 및 물품등의 사용을 촉진토록 함으로써 외화획득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실적으로 인정

④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수입실적

●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 국내외간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증 유상 거래는 수입실적으로 인정

4.3 인정금액

☒ 수출실적

①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을 기준



- ②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 *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수입금액을 각각 수출입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외화가득금액에서 비해 수출입실적 계상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득액만을 수출금액으로 인정
- ③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단,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 ④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외국현지에서 매각된 것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⑤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경비 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금액의 범위내에서 원양어로작업을 하기 위해 현지에서 사용한 유류비, 원양어선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수출금액으로 인정
- ⑥ 용역 수출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관련 협회장(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업종별 관광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 ⑦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확인한 금액
- ⑧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공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 ⑨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수입실적

-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
-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은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4.4 인정시점

■ 수출실적

- 수출신고수리일 : 수출증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및 해외건설공사 관련 수출의 수출실적 인정 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
- 입금일 :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 현지매각 관련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및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국내인도 한 경우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입금일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결제일

■ 수입실적

-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의 수입실적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인 경우에는 지급일

4.5 실적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인 경우

-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람회·견본시·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외국현지에서 매각된 것,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분,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 하는 경우,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의 경우

- 위 이외의 경우로 수출통관을 거친 물품등의 수출



▶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 용역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관련협회장(해운업은 한국선주협회장, 관광업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이나 업종별 관광협회장)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수출실적 인정범위	수출실적 인정금액	수출실적 인정시점
유상거래 수출 (대북한 유상반출 포함)	원칙 : 수출통관액(FOB) 기준 예외 1. 중계무역 : 수출금액-수입금액 2. 외국인도수출: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3. 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시 : 판매액-원자재수출금액-가공임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경비 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5.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무역협회 등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원칙 : 수출신고수리일 예외 1. 외국박람회 현지매각 : 입금일 2.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 입금일
수출승인 면제품 中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 위해 무상반출 중 현지 매각분 2. 해외건설, 투자목적으로 우리업자(현지법인 포함)에게 무상반출중 해외건설 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단, 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 않는다는 조건 명시분)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확인액	1. 외국환은행을 통한 결제시 :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결제 :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국내공급 中 1.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3. 지식경제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 공급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입금일
기타 1. 외국인에게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확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2. 외국인에게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입금일

5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5.1 의의 및 개념

☐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의의

- 수출입승인제도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이나,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승인제도는 수출 등 외화획득에 사용될 원료 등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원 제도
- 외화획득의 범위는 수출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수출지원제도 만으로 외화획득행위를 적절히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승인제도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일반수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가 존재
 - ㉠ 수출입공고 수량제한 적용배제 :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은 외화획득 이행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이므로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입제한 품목이라도 수량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 가능
 - ㉡ 관세환급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당초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 ㉢ 무역금융 지원 : 원자재수입대금 등을 무역금융에서 융자지원
 - ㉣ 원산지표시 면제 :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시 원산지 표시 면제

☐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개념

-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총칭.
 - 외화획득용 원료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물품의 제조 · 가공 · 조립 · 수리 · 재생 · 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 부자재 · 부품 및 구성품
 -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 기계 · 장치 · 부품 및 구성품(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
 - 외화획득용 제품* :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 모든 수입 완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국관광상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 부대용품, 수입선용품 및 군납용 물품만 해당



- 외화획득용 용역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용역
-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외 무역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5.2 외화획득의 범위 및 이행

▣ 외화획득의 범위(외화획득행위)

-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
 - ① 수출
 - ②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
 - ③ 관광
 - ④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 ⑤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 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
 -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 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도 외화획득행위로 인정

5.3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 구매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국내 구매

-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 (임가공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의 발행이 어려울 경우에 주로 사용됨

☒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정의

-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
 - 구매확인서라 함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

☒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과의 차이점

-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만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이 당사자간에 대금결제가 됨
-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물품의 구매에 한정하나(즉, 수입완제품의 구매는 불가), 구매확인서는 수출 보다 광의의 개념인 외화획득용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발급됨
- 내국신용장의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물품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금지 되었으나, '03.2월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는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이 가능 (사후 발급시, 세금계산서 제출)



☒ 구매확인서 발급목적 및 혜택

-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수출, 군납,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특정한 국내물품공급) 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원활히 조달토록 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함이 목적
- 구매확인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수출실적인정,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지원제도가 존재

☒ 구매확인서 신청자

-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려는 자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구매확인서의 발급방법

- 구매확인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에 따라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 발급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
 - 임가공위탁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임가공 위탁을 내국신용장의 개설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국신용장 발급에 준하여 구매 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음

* '11.7월부터 구매확인서는 전용 사이트(www.utradehub.or.kr)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만 발급하고 있음

☒ 구매확인서 발급절차(사전발급 기준)

- ①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체결
- ② 구매자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구매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

☐ 구매확인서 발급근거 및 신청서류

● 외국환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규정 제37조 제1항)

- ① 수출신용장
- ② 수출계약서(품목 · 수량 · 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입증서류)
- ③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입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④ 내국신용장
- ⑤ 구매확인서
- ⑥ 수출신고필증(사후발급시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 ⑦ 영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구매확인서 발급한도 및 차수

● 발급신청자가 제시하는 발급근거서류(수출신용장 등)의 범위내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제조 · 가공 · 유통(완제품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차수 제한없이 발급가능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 무역의 정의 및 범위

법령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해 설

-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①물품 ②용역 ③전자적 무체물의 (이하 물품 등) 수출입을 의미
-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한 것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형의 거래는 수출로 인정
 - 여기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형의 거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①중계 무역 ②외국인수입 ③외국인도수출 ④무환수출입을 말함
 - ※ 참고로, 대외무역법 상 ‘국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 지역도 ‘국내’에 해당
- 대외무역법상 용역의 수출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 방법이 있음
 - ① 용역의 국경을 넘는 이동에 의한 제공
 - ②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 ③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 ④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 대외무역법 상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 여기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것”을 말함

【참고】「대외무역법」 VS 「관세법」 VS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의 정의 비교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대외무역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은 각 법률의 제정 목적 등에 따라 ‘수출’의 정의를 달리 정하고 있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이하 생략 ===



◆ (관세법) 제2조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특히, 관세법은 물품의 통관관리 및 관세부과를 목적으로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수출을 정의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와 외국간의 물품이동을 기준으로 수출을 정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예를 들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보세구역 야적장에 장치되어 있을 경우, 관세법에서는 수출에 해당되지만, 대외무역법에서는 동 물품이 선적되어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벗어나야 수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참고】 대외무역법상 정의하고 있는 무역거래 유형

가. 국내 → 외국 또는 외국 →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무역거래

- ①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 ②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 ③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
- ④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
*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인정.
- ⑤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 ⑥ “임차수입”이란 임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
- ⑦ “연계무역”이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

나. 외국 →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무역거래

- ①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 ②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
- ③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 ④ “무환수출입”이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출·수입.



법 령

시행령

제2조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해 설

-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한 것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형의 거래는 수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형의 거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①중계 무역 ②외국인수수입 ③외국인도수출 ④무환수출입을 말합니다.
- 대외무역법상 용역의 수입은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 여기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 ②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 ③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
 - ④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 대외무역법상 전자적무체물의 수입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 여기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권해석

Q1.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해당 여부

Question

질의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을 홍콩소재 관계회사 A사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제품을 일본고객에게 현지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홍콩의 A사에게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일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되는 지?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 상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됩니다.

Why

이유

- 위탁가공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 위탁자인 국내업체는 홍콩의 A사에 가공임을 조건으로 원료의 일부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일본)으로 인도하는 형태로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대외무역법 상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합니다.



Q 2.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해당여부

Question
질의

중국에 A해외법인에서 위탁제조를 하여 국내에 물품을 반입을 하거나 중계무역을 하고자 합니다. 원자재 일부를 구입 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 거래가 위탁가공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인지?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 상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됩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6호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 반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3호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 따라서, 민원인이 질의하신 수출형태는 A업체에 위탁 제조한 물품 수출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6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 판단됩니다.

Q 3. 중계무역 인정 범위

Question
질의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없이 외국으로 직접 운송 및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회사가 아래와 같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A사 / B사 / C사

A사가 B사로부터 물품의 주문을 받아 C사에 생산의뢰를 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C사에서 B사로 직접 운송(국내 경유없이)하도록 하고 B사로부터 물품대금 영수를 하고 C사에는 물품대금을 지불하여 차액을 남기는 거래를 하고자 할때,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에 해당됩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중계무역은 원칙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 지역 등에 물품이 반입한 후에 수출하는 것도 중계무역으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반입없이 외국으로 직접 운송 및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도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에 포함됩니다.



【참 고】

〈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비교 〉

구 분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정 의 (대외무역법)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 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계약 형태	수입계약 + 수출계약	수출계약
거래 유형	3자 거래(A ⇄ B ⇄ C)	2자 거래 (A⇄B)
대표 사례	국내업체가 중국에서 완구를 수입하여 미국 으로 수출 * 중국업체와는 수입계약, 미국업체와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송. 수입 대금과 수출대금의 차액을 취함	국내건설업체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한 건설장비를 중국에 수출 * 중국업체와 수출계약 체결, 건설장비는 베트남 에서 중국으로 운송. 수출대금을 취함

Q 4. 중계무역 또는 중개무역 해당여부

Question
질의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하여 중국과 대만간의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여 한국을 통하여 중국에서 대만으로 물품이 이동 합니다. 중국과 대만 수출입업자간에 거래량, 가격, 운송조건 등 무역과 관련된 모든 조건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물품의 흐름은 중국에서 한국의 보세창고를 거쳐 대만으로 이동합니다. 물품 대금의 지급은 직접 대만에서 중국으로 지급하며, 한국은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 무역이 대외무역관리규정상에 중계무역인지? 중개무역인지? 아니면 외국인도수출인지요?

Answer
답변

중개무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은 ‘중계무역’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으며,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인정하는 무역거래 형태는 아닙니다.
-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 또한,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 상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중개업자가 수출자와 수입자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만 취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따라서, 민원인이 질의하신 거래형태는 ‘중계무역’이 아닌 ‘중개무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Q 5.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의 수출 해당 여부

Question 질의

국내 A사가 독일B업체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않고 국내보세창고에 장치한 상태에서 중국업체 B사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합니다. 이후 중국업체 C사는 국내업체D사에 물품을 매도하고 국내업체D사는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동 거래에서 국내 A사가 독일업체 B와 중국업체 C사와 행한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답변

물품의 이동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 상 수출(중계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상 수출입은 기본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내’란 보세구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함

■ 문의하신 거래는 외국(독일B업체)에서 국내(A업체)로의 물품 이동만 존재할 뿐,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 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소유권 이동은 고려 대상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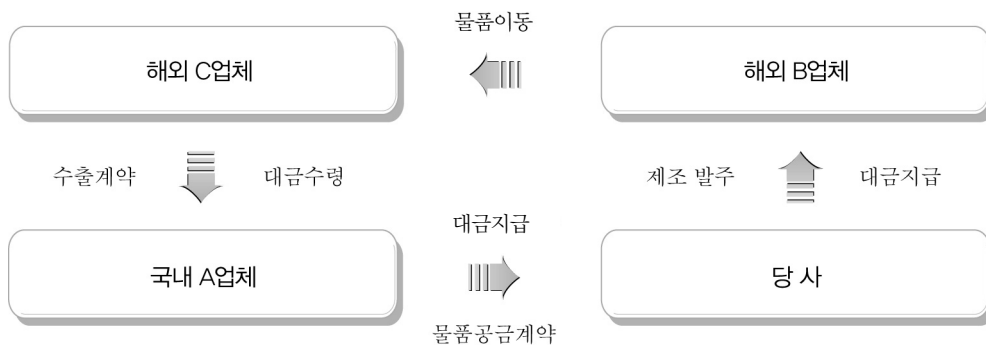
■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거래는 대외무역법 상 ‘수입’만 존재하므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6. 4자간 거래에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Question
질의

국내A라는 업체로 부터 발주를 받아, 저희 회사에서 다시 해외 공급업체 B로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금 결제는 국내 A업체로 부터 받고, 다시 저희 회사에서 해외 공급업체B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내 A업체의 요청으로, 물건이 해외 업체 B에서 A업체의 해외 거래업체인 C로 직접 선적되게 되어, 외국인도수출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본 건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요?

※ 거래요약



Answer
답변

A업체가 해외 C업체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해외B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해외 C업체에 인도하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됩니다.

당사가 해외B업체에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C업체에 물품을 인수하는 거래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됩니다.



Why
이유

- ‘외국인도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 또한, ‘외국인수수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2호에 따라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거래를 살펴보면 민원인의 회사(이하 질의업체)은 국내 A업체와 계약에 따라 해외B업체에 물품 제조를 발주하고, 해외B업체는 제조 완료된 물품을 (국내A업체의 명의로) 국내A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 C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형태로 판단됩니다.
- 동 거래에서 국내A업체가 해외C업체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을 국내에 영수하고, 해외B업체가 제조한 물품을(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수출계약에 따라 해외C업체에 인도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 질의업체가 해외B업체에 물품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C업체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거래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Q 7. 임대수출 해당 여부

Question
질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장비 등을 수출한 후 기간 만료 후, 재수입하거나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도 임대차수출 계약에 의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에 해당됩니다.

Why
이유

- ‘임대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 위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임대수출의 물품등이 반드시 국내로 재수입되어야 임대수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효용가치가 없어 현지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임대수출로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물품의 효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기자재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여 자금의 해외도피 목적이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Q 8. 면세점 물품판매가 수출에 해당 여부

Question

질의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는지?

Answer

답변

면세점 물품판매는 국내에서 거래가 완료되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국내”란 대한민국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 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등이 그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가 매매를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것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은 「관세법」 제154조에 근거한 보세구역의 한 종류로서 같은 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관세법」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은 외교관면세점 · 출국장면세점 · 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점으로 구분되며,

■ 특히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부분 이상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1-2조제5항 · 제7항 및

Why
이유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매장(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공항만 보세 구역 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물품 판매 행위 및 물품 인도는 모두 출국장면세점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하 “출국인등”이라 함)과 물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그 물품이 출국장면세점 매장 또는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구매자인 출국인등에게 인도됨으로써 매매 계약의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그 물품이 여객기(선)을 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출국인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매매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수출용 원재료 등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 특례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의 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관세환급특례법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법이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을 수출보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9.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도 「대외무역법」 상 수출 여부

Question
질의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Answer
답변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Why
이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은 수출을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북한지역과의 사실상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바48 결정 참조).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성격상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조항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06.30 선고 2003헌바114 결정 참조).

Why
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면서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을 외국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남북한 특수관계적 성격상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대외무역법」 등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2 용역의 범위

법령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無體物)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응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 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해설

-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물품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으로 한정하고 있던 무역의 범위에 용역을 포함하고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는
 -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 및 그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되며
 - *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①전기통신업 ②금융 및 보험업 ③임대업 ④광고업 ⑤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⑥교육 서비스업이 해당됨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①양도, ②전용실시권의 설정 ③통상실시권의 허락도 대외무역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해당업종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 반드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업종이 시행령에 명시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3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정의

법 령

법 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無體物)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해 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0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무역의 범위에 포함
-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로 인정되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은 ①소프트웨어 ②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포함) ③음향·음성물 ④전자서적 ⑤데이터베이스 ⑥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것을 말함

Q10. 수출선박 제조 시 임가공용역의 수출실적 인정 여부

Question
질의

당사는 전남 소재 "○○중공업(주)"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수출하는 선박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조립 및 가공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가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Why
이유

-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①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②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하는 경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는 ‘외화획득용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임가공위탁용역의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1. 해외건설공사를 위한 용역 제공 시 수출실적 여부

Question
질의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A업체(수출업체)가 해당 공사작업 중 일부를 국내의 B업체(공급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B업체가 해외에서 동 작업을 수행한 후, 해당 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A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B업체도 해당 금액만큼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답변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한 수출실적 인정 가능합니다.

Why
이유

- B업체가 A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3호에 따라 수출실적의 인정범위에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도 포함됩니다.
- 또한,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용역을 포함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외화 획득에 제공된 물품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말하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화획득’의 범위에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이 포함되므로 B업체가 수행한 용역 제공은 ‘외화획득용 용역’에 해당되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2. 무형서비스 수출실적 확인 증명

Question
질의

저희 회사는 IPTV 셋톱박스 제조사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셋톱박스과 콘텐츠공급, 네트워크 서비스, 통제관리시스템 등 종합서비스이기 때문에, 셋톱박스가 예를 들어 60불이면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160불 정도 입니다. 즉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60불이면, 한국에서 공급하는 무형의 서비스(통제관리시스템/콘텐츠/서버관리 등)와 네트워크 비용이 100불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품 외 무형의 서비스를 수출 및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및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Why
이유

대외무역법 상 수출은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제공·인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중략 ----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중략 ----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Why
이유

- 따라서, 민원인이 문의하신 셋톱박스와 함께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컨텐츠 공급’, ‘통제관리시스템’, ‘서버관리’)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됩니다.

* 용역 : 서버관리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컨텐츠, 통제관리시스템

- 이러한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확인기관으로 부터 수출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이를 위해, 수출신청서 및 수출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출입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수출입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확인기관(용역) : 한국무역협회

* 수출입확인기관(전자적 무체물)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 협회

Q13. 경영 컨설팅 사업의 수출실적 인정 여부

Question
질의

저는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중국에 투자하여 중국법인을 설립 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과 컨설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강사를 중국에 초청하여 강의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한국에 송금하고 있습니다(물론 한국법인인 한국○○컨설팅(주)로) 이 경우, 한국○○컨설팅(주)의 교육 및 컨설팅의 해외제공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Answer
답변

교육 및 경영컨설팅 해외 제공은 대외무역법 상 용역 수출에 해당됩니다.

Why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3호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식 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으로 시행령 제3조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로 인정되며, 용역수출 실적에 대한 확인은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위탁기관인 무역협회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경영컨설팅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용역에 해당 하여 수출실적 인정 대상이 됩니다.



4 수출입의 원칙

법 령

법 률	시행령
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물품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으로 한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2.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4.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항공기 및 그 부분품, 그 밖에 원활한 물자 수급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

해 설

- 대외무역법 상 수출입은 무역거래자의 책임하에 동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①조약 및 국제법규 이행 ②생물자원 보호 ③교역상대국과 경제협력 증진 ④통상·산업정책상 필요에 의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5 수출입의 제한

법령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9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수출입승인 물품)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이란 제16조 각 호의 물품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고시한 물품등을 말한다. 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물가 안정, 수급 조정, 물품등의 인도 조건, 그 밖에 거래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물품등의 수량·가격 2. 승인의 유효기간 3.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설

- 시행령 제17조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물품 등으로 지정·고시한 물품 등”이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출입공고」에서 정한 물품 등을 말함
 - 다만,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은 제외함
- 「수출입공고」에 지정된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은 승인이 면제됨
- ‘12.7월 현재, 「수출입공고」지정 물품은 수출금지 품목으로 ①고래고기 ②화강암(자연석) ③사암(자연석) ④개의 모피가 지정되어 있으며
 - 수출제한품목은 ①사과 및 배(대만지역 수출용) ②천연모래 ③자갈 등이 지정되어 있음
 - 수입제한품목은 국내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항공기 및 부품을 지정

6 수출입 승인 면제

법 령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 마.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해 설

- 「수출입공고」에 지정된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물품 등의 수출입은 승인이 면제됨
-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범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에 규정되어 있으며
 - 외교관, 항공기 승무원이 출국할때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이 수출입 승인 면제에 해당
-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라, 외국환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중 반입 목적 및 사유 등에 의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수출입 승인이 면제됨
 - 다만,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수입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통합공고

법령

법률

제12조(통합 공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무역업자가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공고하여 무역업자에게 편의를 제공
- 현재, 약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51개 주요 법률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 또는 수입요건 등을 공고하고 있음
- 다만, 통합공고 제12조에 따라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라도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요건 및 절차를 면제할 수 있음
 - 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 ②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 ③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출·입 승인 면제
 - ④ 각 개별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14. 원석 및 부순골재 등을 해외로 수출 가능한지 여부

Question
질의

토사석 채취 허가로 인한 원석 및 부순골재 등을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수출할 수 없다면 해외로 수출 할 수 있는 원석 및 골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nswer
답변

화강암, 사암의 자연석은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되며, 천연모래, 자갈·왕자갈·쇄석 등은 수출제한품목으로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가능합니다.

Why
이유

-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하고 있으나,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11조에 의거 일부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골재에 제한사항은 수출입공고 별표1. 수출금지품목(자연석)과 별표2. 수출제한품목(한국골재협회의 승인, 02-470-0150)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암석 종류를 확인 후 수출입공고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수출입공고에 따라, 화강암, 사암의 자연석은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되며, 천연모래, 자갈·왕자갈·쇄석 등은 수출제한품목으로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 가능합니다.

Q 15. 전시용 오토바이 수입 요건면제 확인

Question
질의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시용 오토바이 수입 시 요건면제 대상인지요?

Answer
답변

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요건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Why
이유

■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별표의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요령을 따라야 하는 물품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요건 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면제 사유>

- 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 ②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 ③ 수출·입 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각 개별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전시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은 대외 무역관리규정 별표4(수입승인의 면제)의 '4. 영 제19조제2호 라목에 따른 수입 승인면제'에 해당되어 요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6. 수출용 식품 원료 수입 시 요건면제 대상 여부

Question 질의

전량 수출용으로 알로에꽃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알로에꽃은 수입 후 국내 티백 업체에서 포장 후 다시 미국으로 전량 수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알로에꽃은 식약청 문의 결과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하지 않기에 수입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외화획득용 원료의 경우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제한되는 원료도 수입이 가능한데 미국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알로에꽃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Answer 답변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령에 해당하는 품목은 통합공고 상 요건면제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요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Why 이유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은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을 면제할 수 있으나, 국민생활·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위생법」 등 15개* 법률에 해당하는 수출입물품은 수출용이라고 할지라도 요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물방역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8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법 령

법 률	시행령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領收)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 설

- ‘특정거래’에 해당하는 형태의 수출입 거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아래 거래를 말함



<특정거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① 위탁판매수출 ② 위탁판매수입 ③ 위탁가공무역 ④ 수탁가공무역 ⑤ 임대수출 ⑥ 임차수입 ⑦ 연계무역 ⑧ 중계무역 ⑨ 외국인수수입 ⑩ 외국인도수출 ⑪ 무환수출입

- 다만, 모든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거래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대외무역관리규정」제21조에 따라, 중계무역 및 무환수출입 중에 일부 형태 거래만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는 특정거래라 하더라도 별도의 인정은 불필요



<인정이 필요한 특정거래 >

1. 중계무역으로서 ①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의 거래
②선적서류를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인수 및 송부하지 않는 거래
※ 다만, 수출입 대금을 별개의 은행을 통해 지급·영수하는 경우라도,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불필요
2.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5만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으로 수출승인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무환수출
※ 다만, ①위탁판매수출 ②위탁가공무역 ③임대수출 ④연계무역을 위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무환수출은 별도 인정 불필요

유권해석

Q 17. 무환수출 시 특정거래 신고 여부

Question
질의

당사의 생산라인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장비를 신규로 업그레이드 된 장비로 교체를 하고 교체된 중고 장비를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무환수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품가액은 약 미화 8천만불입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전에 지식경제부 관련 부서에 수출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답변

특정거래로 신고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5만달러 상당액 초과물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 대외무역법 제13조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로 인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수출승인의 면제)에 해당되거나, 대외무역관리 규정 상의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연계무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18. 수출입 대금 결제 은행이 다른 중계무역의 경우 신고여부

Question
질의

당사는 중계무역을 하며 수입대금 지급은행과 수출대금 영수은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특정거래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하는지요?

Answer
답변

수입대금 지급은행과 수출대금 영수은행이 다른 경우 특정거래로 신고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 방식의 거래는 특정거래인정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됩니다.

■ 다만,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절취선 이하 부분을 지정된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특정거래인정신고는 거래건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특정거래인정신고서와 함께 아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거래요약서
2.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승인 대상 품목인 경우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타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 수출입 실적의 인정

법령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수출실적”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해설

☐ 수출실적 인정범위

- 수출실적은 수출업체가 무역금융 용자를 받는 기준이 되며, ‘무역의 날’ 등 정부 행사 시 포상에 반영됨
-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수출실적 인정 범위>

1.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2.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출에 부수되는 수출 중
 - ①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을 위해 무상반출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 ②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재반입하지 않는 것만 해당)
3.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 ①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②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③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수출실적 인정금액 및 확인·증명발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출통관액(FOB 기준) 및 한국무역협회이며, 예외적으로 외국환은행
- 거래유형별 인정금액 및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음



<수출실적 인정금액>

1.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1-1. 수출통관을 하는 경우

- ① 인정금액 :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
- ② 인정시기 : 수출신고수리일
- ③ 확인기관 : 한국무역협회

1-2. 수출통관을 하지 않는 경우

가. 중계무역의 경우

- ① 인정금액 : 수출통관액(FOB금액)에서 수입통관액(CIF금액)을 제외한 가득액
- ② 인정시기 : 입금일 (수출통관을 하지 않으므로 수출신고 수리일이 아님)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나. 외국인도수출

- ①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 입금액*
- ② 인정시기 : 입금일 (수출통관을 하지 않으므로 수출신고 수리일이 아님)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단, 외국인도수출 중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제외한 가득액만을 인정

다.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

- ①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이 확인한 금액
- ②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라. 용역의 수출

- ① 인정금액 :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 ② 인정시기 : 입금일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수출확인인 한국무역협회장, 수출실적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

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 ① 인정금액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 ② 인정시기 : 입금일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수출확인인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수출실적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

2. 무상수출로서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
 - 2-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을 위해 무상반출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 ①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② 인정시기 : 입금일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2-2.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만 해당)
 - ① 인정금액 :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
 - ② 인정시기 : 수출신고수리일
 - ③ 확인기관 : 한국무역협회장
3. 외화획득용 원료·물품의 국내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
 - 3-1.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①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 ② 인정시기 : 결제일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 3-2.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①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액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은행의 확인액
 - ② 인정시기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대금결제일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 3-3.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 ①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액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은행의 확인액
 - ② 인정시기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대금결제일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①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② 인정시기 : 입금일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의 공급
 - ① 인정금액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 ② 인정시기 : 입금일
 - ③ 확인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



유권해석

Q 19. 수탁가공무역의 수출실적인정 여부

Question
질의

국내A업체는 대만C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탁 가공 후 국내 B업체에 물품을 인도하고 있고, 대금은 대만C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국내 A업체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거래형태만 인정 가능합니다.

Why
이유

- 문의하신 거래형태는 국내 A업체가 대만 C업체로 수탁을 받아 가공 후 국내 B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탁가공무역’에 해당되며
- 수탁가공무역의 형태 중 위탁자(대만C업체)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국내 B업체)에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국내A업체)가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에 한하여 수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 따라서, 문의하신 거래에서는, 국내A업체가 국내B업체에 공급한 물품은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이 아니므로 수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20. 위탁가공무역 수출 실적 여부

Question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일 경우에는 판매액-(원자재수출금액 및 가공임)=수출인정금액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자재수출금액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가공원자재 수출신고필증 FOB 금액을 적용시키면 되는건지....

Answer
답변

원자재수출금액은 위탁가공원자재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으로 인정됩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령상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 위탁가공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의 수출실적 인정금액과 관련하여,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한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대금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즉,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에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출실적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원자재의 범위는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은 물론 재생, 개조를 위한 완제품도 포함됩니다.

■ 이와 관련,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제공하였다면 그 원자재 제공부분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자재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으로 인정됩니다.



Q 21. 무환수출 후 현지에 판매된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

Question
질의

외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국내에서 무환수출 신고한 귀금속을 갖고 가서 현지에서 판매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 수출실적인정의 범위는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제1항제3호에 의거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수출실적금액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외국에서의 판매대금을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입금액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22.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물품 판매의 수출실적 인정여부

Question
질의

e-bay 등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EMS(국제특송우편)등으로 소액물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방법

Answer
답변

수출통관 시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실적은 기본적으로 통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200만원이하 소량 물품을 국제특송우편(EMS)으로 해외 보내는 경우 간이 수출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 통관 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액만큼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법 령

법 률	시행령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기록 등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설

- 지식경제부는 장관은 대통령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을 위해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우편, FAX, 전자우편, 전자무역교환체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함
-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는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지 않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무역금융 및 정부포상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함



유권해석

Q 23. 무역업자에 대한 별도 자격 조건 여부

Question
질의

저희회사는 식품 등 수입업을 신고하여 실제 식품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에 대한 조건 등이 별도로 있는지요?

Answer
답변

무역업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규정은 없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0년 1.1일 부터 대외무역법상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업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통계작성 및 수출실적제공 편의 등의 목적으로 무역거래자에 대한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24. 무역업고유번호 승계 여부 관련

Question
질의

기존 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고 기존 회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기존 법인의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요?

Answer
답변

한국무역협회에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승계 가능합니다.

Why
이유

-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1조 1항에서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무역업 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하여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고, 동 업무는 무역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등 지위의 변경되어 승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24조4항에 의거 변동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무역업고유번호의 승계 등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 하시면 승계 가능합니다.



1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과 외화획득의 범위

법령

법률	시행령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 이행기간,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① 제17조에 따라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등을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해설

-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조약, 국제법규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입제한 품목이라도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기재 등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량·금액·규격 및 지역 등에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음
- 또한, 대외무역법 상 ‘외화획득’의 범위는 아래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 대외무역법령 상 ‘외화획득’은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대외무역법상 ‘수출’보다 넓은 개념임

1. 수출
2. 주한 UN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6가지에 해당하는 거래
 - ①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②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③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④ 정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⑤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 ⑥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제도는 수출 등 외화획득에 사용될 원료 등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지원혜택이 존재

① 수출입공고 수량제한 적용 배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은 외화획득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것이므로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입제한 품목이라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공고」에 따른 품목, 수량, 규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

② 관세환급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당초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③ 무역금융 지원 : 원자재수입대금 등을 무역금융에서 융자지원

④ 원산지표시 면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시 원산지 표시 면제

12 외화획득 이행기간

법령

시행령

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②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 수입제한 품목 중 외화획득용을 위해 수입하는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외화획득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기간은 세부적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①외화 획득 행위의 경우 2년 ②국내공급(양도를 포함)인 경우 1년 ③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1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승인

법령

법률	시행령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당초의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양도(讓渡)하려는 때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讓受)하려는 자가 함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는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나 교역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등으로서 그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험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해설

- 대외무역법 상 수입제한품목을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화획득 이행 의무가 있음.
- 다만,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을 승인받은 자가 천재지변, 제도 변경, 고도기술 필요, 불가항력 등 부득한 사유로 인해 외화획득 이외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아울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을 승인받은 자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4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정의

법령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 략 ==

5.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제조 · 가공 · 조립 · 수리 ·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 · 부자재 ·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 · 기계 · 장치 · 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 ·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해설

- 대외무역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은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시설, 기재 등 범위를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 “외화획득용 원료”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 · 용역 · 전자적무체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 부자재 ·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하며,
 -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음.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1.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외화가득율(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 ①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②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③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④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⑤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등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외화획득으로 인정하는 거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 “외화획득용 제품”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국내에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하며,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외화획득용 제품>

1.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터(이하 “관광용품센터”라 한다)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 물품 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 물품 공급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선용품
3.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 “외화획득용 용역”은 외화획득용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의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말함

- “외화획득용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용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방식의 자료 및 정보’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말함

15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 구매 (구매확인서)

법령

법률	시행령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 ‘구매확인서’는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며,
- 이미 물품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내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증서에 한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기 : 1월~6월 / 2기 : 7월~12월) 종료후 20일 이내



-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2조 제1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구매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

-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별지 제13호의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 구매(공급)확인(신청)서’에 아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입증 서류>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포함되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 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입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만 해당)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를 구매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7.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현재, 구매확인서는 발급전용 사이트(www.utradehub.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발급하고 있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02-6000-2056)

-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 할 수 있음

- 또한, 구매확인서를 발급 한 후 발급근거 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매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음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규정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 등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입증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 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토록 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있음

- 구매확인서 실적분에 대해서는 ①수출실적인정 ②관세환급 ③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정책적 지원을 실시

유권해석

Q 25. 2~3차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Question
질의

수출업체가 외화획득용 원료를 여러단계에 걸쳐 구매한 경우에 각각의 업체들 모두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A업체가 B업체로, B업체는 C업체로, C업체는 D업체로 판매 한 후 D업체가 완성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A, B, C 업체 모두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두업체 이상은 구매확인서를 근거서류로 영세율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가능합니다.

Why
이유

■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거나 구매한 자가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 받는 증서입니다.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3항에 따라,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 가공, 유통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A, B, C업체가 순차적(1차발급 → 2차발급 → 3차발급)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26.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의 한도

Question
질의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하여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0세율 진행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수출금액 보다 구매금액이 작은데요

반대로 수출금액보다 구매금액이 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계약완료후 구매 금액상승등의 이유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위와 같은때에 구매확인서를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Answer
답변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은 외화획득 금액 한도내에서 발급가능합니다.

Why
이유

■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은 외화획득행위가 있는 단계에서의 금액 한도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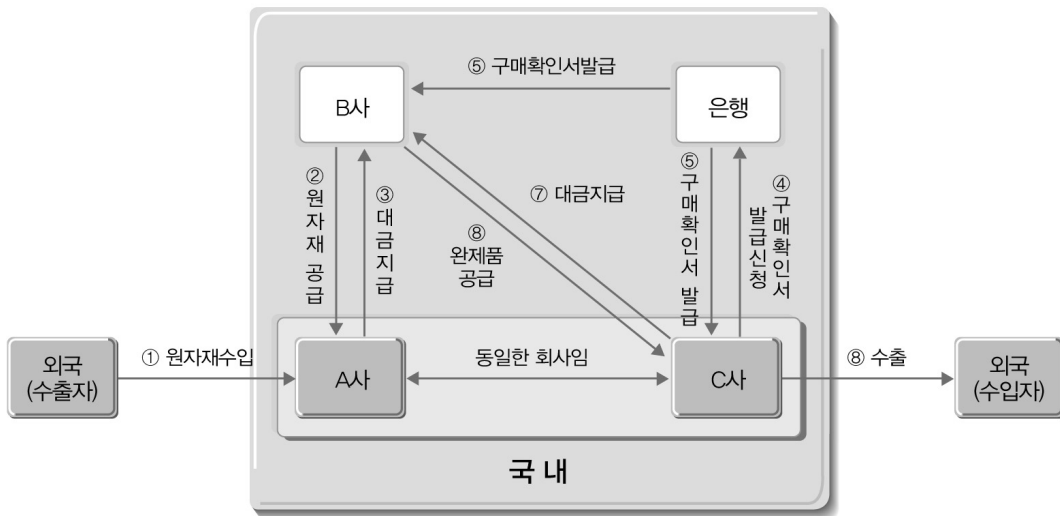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에서와 같이 계약완료후 구매금액 상승 등을 근거로 하여 수출금액 한도보다 높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27. 구매확인서 이중 발급 가능 여부

Question
질의

국내의 A사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의 B사에게 공급하고 대금지급을 받았으며, B사는 원자재를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의 A사와 동일한 회사인 국내의 C사에게 공급하고 대금지급을 받았으며, C사는 이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하였다. 이때 국내의 B사가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공한 원자재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B사가 A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현황



Answer
답변

A사는 C사와 동일회사이므로 A사를 위해 B사가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세 영세율 등 중복 혜택이므로 발급 불가합니다.



Why
이유

- C사는 수출자로서 외화획득용 원료(완제품)를 공급받은 B사를 위해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A사와 C사가 별개의 회사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라 B사는 C사로부터 받은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A사를 위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A사는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C사와 동일한 회사이고, C사가 이미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수출실적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A사가 2차 구매확인서를 받는다면 중복 수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A사와 동일한 회사인 C사가 이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A사를 위한 2차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Q 28. 구매확인서 사전·사후 발급 기준

Question
질의

구매확인서는 사전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후 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사후발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답변

물품구매일을 기준으로 구매확인서 사전·사후 발급을 구분합니다.

Why
이유

-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영(零)세율을 적용받기위해 신청·발급받는 서류이며 (이하 사전발급)
-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도 신청·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사후 발급)
- 여기서, 사전·사후 발급은 대외무역법령 상 실제 물품 구매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

제2조(정의) 18.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Q 29.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국내물품 구매 시 구매확인서 발급여부

Question
질의

해외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으로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외국에 수출한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Answer
답변

‘수출’ 여부에 따라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Why
이유

- 해외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이 중계무역 등을 통해 ‘수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위탁가공 후 ‘수입’되는 것인지에 따라 구매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탁가공하여 수출한다면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것이나,
-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다시 수입된다면 이것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30. 외화획득용 용역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

Question
질의

국내업체 A가 해외업체B로부터 반도체장비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00억원으로 수주하였습니다. 국내업체 A는 반도체 장비 설치공사를 국내업체 C와 계약금액 80억원 (물품대가 및 용역대가 포함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C가 A를 대신하여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업체C는 해외업체 B에게 설치공사를 완료 후 대금은 국내업체A에게 결제 받을 예정입니다.

국내업체C가 국내업체A에게 국내에서 반도체장비 제공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가 C앞으로 구매확인서 발급해줄 수 있는가요?

Answer
답변

외화획득용 용역이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Why
이유

■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 민원인께서 설명하신 거래관계에서, 국내업체C가 국내업체A에게 국내에서 반도체장비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업체C와 국내업체A와의 계약 금액의 범위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업체C가 반도체장비 제조업체로서 반도체 장비의 공급에 부수하여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Q 31. 본사와 지점간에 거래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Question
질의

본사·지사간 거래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Answer
답변

동일 법인내의 거래이고 수출실적이 중복적으로 계상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Why
이유

-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로써,
-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 문의하신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는 동일 법인내의 거래이고 수출실적이 중복적으로 계상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6 벌칙 (무역거래 관련)

법령

법률 및 해설

제53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 (해설)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이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교역상대국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아 물품의 수입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

== 중 략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해설)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가 기업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해설)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에 따라 수출입의 제한·금지 품목에 대해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없이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면제 받은 자

4. 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 (해설)수출입 제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사유로 수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획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양도받았음에도 외화획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5.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 (해설)수출입 제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사유로 수입승인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외 용도를 사용 시에는 별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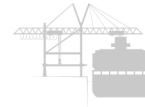
☞ (해설)수출입 제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사유로 수입승인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외 용도를 사용 시에는 별도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자

Ⅱ

원산지 관리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C

ontents

(원산지 관리)



1. 원산지관리 제도 개요	115
1. 원산지 제도 개요	117
2. 우리나라 원산지제도 및 소관부처	122
3.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관리 제도	125
4. 원산지제도 Q & A	135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143
1.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145
2.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169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184
4. 수출입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191
5.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 금지	195
6. 벌칙	199

C Contents



유권해석 사례(주제별)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Q1. 인터넷상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149
Q2. 수출할 때도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150
Q3.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하는 기관은?	151
Q4. 수입 의약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152
Q5. OEM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153
Q6.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154
Q7. 수입산 밀가루, 설탕의 원산지 표시 방법?	155
Q8.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156
Q9. 국내 거래물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	157
Q10. 수출용 안마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158
Q11.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159
Q12. 제조·가공에 여러 국가를 거친 수입 초콜릿 원산지 표시 방법은? ..	160
Q13. 국산과 수입산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161
Q14. 드라이플라워를 장식한 벽시계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162
Q15.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163
Q16. 수출할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164
Q17. 제3자가 수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제 가능한지?	165
Q18. 다른 법령에서 추가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166
Q19. 행사에 사용되는 전시용 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167
Q20. 원산지 표시의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168



○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 Q21.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은? 172
- Q22. 수입 고형차의 적절한 원산지 판정은? 173
- Q23. 특정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174
- Q24. 2개 국가의 가공으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175
- Q25. 커피의 원산지는 원두생산국인지 로스팅 국가인지? 176
- Q26. 수입물품을 국내 가공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 방법은? 177
- Q27. 국내에서 가공, 봉제하여 수출하는 담요의 원산지 표시는? 178
- Q28. 제3국에서 어획한 대게를 중국에서 단순가공한 경우 대게의 원산지는? 179
- Q29. 안마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180
- Q30.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어획한 조기의 원산지는? 181
- Q31. 골뱅이를 가공하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지? 182
- Q32. 지경부 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183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Q33.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는? 187
- Q34. 수입후 국내에서 혼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는? 188
- Q35.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한지? 189
- Q36. 수입합판과 국내산 합판을 결합한 경우 원산지는? 190



○ 수출입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 Q37. 한-미 FTA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경우 별도로 일반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는지? 193
- Q38.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근거와 구비 서류는? 194

○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 금지

- Q39. 중국산 면장갑을 국내에서 회사 로고를 프린트하고 재포장하여
수출할 경우 동 물품에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는지? 196
- Q40. 수출국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 판정을 받은 경우
물품에도 한국산 표시가 가능한지? 197
- Q41. 수입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처벌은? 198



1. 원산지관리 제도 개요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 원산지 제도 개요

1.1 원산지의 개념

- 원산지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무관한 개념임
- 일반적으로 지역은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 (교토협약 부속서 D.1)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고

-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1.2 원산지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원산지제도의 개념

- 원산지제도란 어떤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판정하고,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
- 원산지 판정 : 어떤 상품이 여러 국가를 거쳐 제조·가공된 경우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판정절차 등을 규정
- 원산지 확인 : 수입물품제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하여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확인·제출받는 절차를 규정
- 원산지 표시 : 판정된 원산지를 최종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당해 물품에 알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방법을 규정

2. 원산지의 종류 및 필요성

- 특혜원산지 : FTA 등 협정국간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협정국 내에서 재배·사육, 제조·가공된 것임을 확인
- 일반(비특혜)원산지 : 관세혜택 등 특혜 없이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이 당해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가공된 것임을 확인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종류	필요성	관련 법령
특혜 원산지	■ 관세혜택 - 관세감면 또는 면제 특혜	○ 해당 협정문에서 관할 - GSP, GSTP, APTA, GATT 관세 양허, FTA 협정문 등
일반 원산지	■ 물품에 원산지표시 - 시장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를 보호 -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 특정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쿼터제도 등에서 원산지를 확인 ⇒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관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피법, 식품위생법, 표시광고공정화법 * WTO통일원산지(협상중)

※ 특혜원산지제도와 일반원산지제도는 별개로 운영

- 원산지 판정의 기준, 원산지증명서 등도 다름

예)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못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함과 동시에 관세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 일반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1.3 FTA원산지과 일반원산지 비교

1. 개요

- ❑ 무역거래에서 해당물품의 생산국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제도가 필요한 바, 수입시 저율 관세와 같은 특혜부여 여부에 따라 특혜와 비특혜 제도로 구분
- ❑ 특혜 원산지제도는 국제협약이나 양자간 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FTA 원산지제도는 특혜원산지의 대표적인 제도로 대두
- 최근 우리나라는 전세계를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어 FTA 원산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2. 법적 근거 등

- ❑ 법적 근거
- 일반원산지제도 :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이 기준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수입후 일정한 가공행위를 한 제품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그 목적에 따라 원산지를 운용
- 특혜 원산지제도 : 다자간 협상(WTO), 지역무역협정에 의한 양자간 협상(FTA), 일방적 공여(개도국, 최빈국에 대한 특혜) 등에 의거하여 부여되고, FTA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과 양자간 FTA 협정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

3. 일반원산지와 FTA 원산지

- ❑ 일반원산지와 FTA 원산지 모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국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목적과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
- ❑ 일반원산지와 FTA 원산지의 목적
- 일반원산지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통계, 원산지표시, 정부조달, 반덤핑·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쿼타 등 여러가지 비특혜무역제도 운영에 활용되며 통상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적용



- FTA 원산지는 물품의 수입시 협상 체결국간 상호 양허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원산지로 체결국간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양허관세 적용

-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의 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교역의 증대를 도모

■ 원산지 판정기준

-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일반원산지와 FTA 원산지 판정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생산·가공과정에서 2개국가 이상이 관련된 경우 다양한 판정기준을 적용

- 일반원산지 판정의 핵심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 국가로서 그 기준으로 HS세번 변경, 부가가치, 주요공정 수행 등을 채택

- 우리나라는 수입전 최종적으로 HS 6단위의 변경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세 번 변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와 주요공정 수행을 기준으로 함.

- FTA 원산지기준은 HS 세 번 변경, 부가가치, 주요공정 수행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원산지 기준보다는 복잡하게 적용

-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 50%, 60%) 이외에도 HS세번 변경과 가공공정, 그리고 이들의 혼합기준을 선택 활용

- 이는 FTA 협정은 양 협정체결국간 관세혜택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교역을 유도하자는 목적이 있으나, 양 국가간 품목별 경쟁력을 감안하여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복잡한 원산지기준이 결정됨

1.4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1.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a)

- 어떤 물품이 1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당해국에서 수확·채취·사육한 식물, 광물, 동물 또는 당해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말함

2.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 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이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하는 것으로써, 다음 3가지 기준으로 판정함

- ㉔ 세번(稅番)변경기준 : 세계 통일 상품분류체계인 HS 코드(稅番)를 기본으로 원재료의 HS 코드와 상이(相異)한 HS 코드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원산지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기준

· HS 2단위(CC), HS 4단위(CTH), HS 6단위(CTSH) 변경기준을 이용

예) HS 6단위 변경 기준으로 할 경우, A국으로부터 부품(HS 9613.90)을 수입하여 B국에서 완제품(HS 9613.10)을 제작했을 때 B국에서 HS 6단위 변형이 일어났으므로 B국이 원산지가 됨

※ HS 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이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HS협약)에 근거하여 HS 6단위 5,225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6단위 범위 내에서 10단위로 세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한다.

- ㉕ 부가가치기준 : 물품의 전체 가치 중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기준

- ㉖ 가공공정기준 : 제품의 제조공정 중 주요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기준

※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을 적용



2 우리나라 원산지제도 및 소관부처

2.1 우리나라 주요 원산지제도 도입 연혁

- ☑ 원산지허위 표시물품 수출입 금지 (1986)

 - 대외무역법 제정시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금지 조항 마련
-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1991)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지정 - HS 4단위 326개
 - 원산지관리세칙 제정 - 관세청고시
- ☑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1993)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스티커 · 날인 · 꼬리표 표시 등) 도입 (1999)
- ☑ 수입원료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마련 (2006.1)

 - HS 6단위가 변경되고 국내부가가치 51%이상일 때 또는 국내부가가치 85% 이상일 때 국산표시가능
- ☑ 세관의 시중유통검사권 확보 (2007)

 - 세관의 시중유통단속권 확보(대외무역법 시행령 '07.4.4)
- ☑ 수입물품 원산지판정에서 세번변경 원칙의 예외규정 마련(2008.7)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경우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지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제85조제3항)하여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2.2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

☐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관련 단일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법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동법을 근거로 관세청고시에서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
-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원산지관련 부처별 소관업무

관련법령	업 무	소관 부처	단속기관
대외무역법	○ 수출입물품 원산지제도 전반 -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 지정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 수출입 및 국내생산물 원산지 판정기준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경부	지자체 관세청 (세관)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물품별 구체적 원산지표시 방법 지정 - 대외무역법령상 일반적 표시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 표시방법을 규정	관세청	관세청 (세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원산지제도 -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지정 · 원산지표시 방법 및 판정 - 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에 의함 * 국내 음식점 : 쇠고기, 쌀, 배추김치 등	농식품부	지자체 농·수산물품질 관리원

※ 기타 원산지관련 법령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 돼지, 닭, 오리고기, 수산물(6종)원산지 표시
-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 표시광고 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 규정
-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조사법 : 무역행위 중 원산지위반 금지 규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품질표시란에 제조국명 표기시 대외무역법령상 표시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2.3 단속기관 : 물품의 이동단계별로 구분

❑ **수입단계** : 수입물품의 경우 통관 시 관세청에서 일차적으로 사전판정 및 적정표시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

❑ **국내 유통단계**

- 통관 후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 시·도, 무역위원회, 공정위, 농·수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에서 단속
- 국내 생산물품의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 공정위에서 단속
-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에서 단속
- 국내 음식점의 경우 식약청 및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

수입단계 (통관)	국내 유통 단계		수출 해외생산
	단속기관	업무내용	근거법 및 행정처벌
관세청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판정, 표시검사 ○대외무역법 -시정명령, 과징금(3억)	관세청	유통 중인 수입물품	○대외무역법 -시정명령, 과징금(3억)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수입 및 국산농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쌀, 쇠고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정명령, 과태료(1천)
	시·도	유통중인 수입물품 수입 및 국산 농산물	○대외무역법 -시정명령, 과징금(3억), 과태료(1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정명령, 과태료(1천)
	식약청	음식점 원산지표시 (쌀, 쇠고기)	○식품위생법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1천)
	공정 거래위	표시·광고 중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법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무역 위원회	유통중인 수입물품	○불공정무역및 산업피해조사법 -지경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건의
형사처벌 대외무역법, 관세법, 징역5, 벌금1억	형사처벌 대외무역법 : 징역 3, 벌금 3천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 징역7, 벌1억 표시광고공정화법 : 징역2, 벌금1.5억 식품위생법 : 징역3, 벌금3천		형사처벌 대외무역법 징역5, 벌금1억

3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관리 제도

원산지제도가 적용되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①수입품, ②국내생산물, ③수출품)로 분류할 수 있음

- 그 중에 대외무역법에서는 ①수입품, ②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 ③수출품에 대한 표시 및 판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원산지 적용형태에 따른 분류

원산지 적용형태	표시 의무	판정기준	위반형태별 벌칙
① 수입품	지경부장관 고시품목 (규정별표8) 위무사항	① 1개국에서 100%생산한 경우 - 완전생산기준 ② 2개국이상 걸쳐 가공된 경우 - HS 6단위 변경이 원칙 (단, 단순가공활동은 제외)	▶ 無표시 (과징금 3억, 징5 or 벌1억) ▶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과징금 3억, 징5 or 벌1억)
② 국내 생산 (내수 판매)	순수 국내 생산	- 임의사항	▶ 허위 또는 오인표시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처벌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농수산물 위무사항	※생산지역과 원산지표시의 일치여부 ex) "의성산" : 의성에서 생산 여부	▶ 無표시 (1천만원 과태료) ▶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징7,벌1억)
③ 수출품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임의사항	▶ 허위 또는 오인표시 *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처벌
	임의사항	※한국산 표시를 원할 경우 아래 하나에 해당 ① HS 6단위가 바뀌고, 부가가치의 51%이상을 국내에서 유발한 경우 ② 부가가치의 85%이상을 국내에서 유발한 경우	▶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장(징5, 벌1억)

※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상 음식점내 원산지표시 : 위무사항 - 쌀, 쇠고기 등

※ 벌례 : - 대외무역법관할영역

➡ 이후로는 이 3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각각의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과 판정기준에 대해 설명함



3.1 수입물품

1. 원산지 표시

① 표시대상 물품 : 표시의무(○) (규정 제75조제①항)

● 수입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 별표8 (별첨)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계기

- HS 4단위 기준으로 총 1221개 중 664개 품목(공산품 493개, 농수산물 171개)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54%를 차지

② 표시방법

● 표시위치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규정 제75조제①항)

※ 예외적으로 최소포장·용기에 표시가 허용되는 경우 (규정 제75조제②항)

a.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b. 원산지 표시로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예: 당구공, 콘택트렌즈 등)

c. 원산지표시로 인해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d. 원산지표시의 비용이 당해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e.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f.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원재료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경우

g.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가능성이 적은 경우

(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 같은 과일·채소)

h.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표시방법의 일반원칙 (규정 제76조)

①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기

- a.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b.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c.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d. 크기가 작아 위 a~c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국명만 표시도 가능
- e.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오인우려가 없는 방식

- ② 최종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③ 최종 구매자가 식별이 쉬운 곳에 표시할 것
- ④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 ⑤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이 원칙
* 예외 : 물품의 특성상 위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때 날인(stamping), 라벨, 스티커, 꼬리표(tag)를 사용
- ⑥ 오인우려가 없을 경우 통상적 국가의 약어도 가능(예 : USA)
- ⑦ 타법령(품공법, 식품위생법 등)에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 추가하여 기재

● 특례 표시방법

- ① 원산지 오인가능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 제77조)
 - 다음 하나의 경우 포장·용기 전면에 표시하고, 판매 또는 진열시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푯말 등을 이용하여야 함

- a.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최종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b.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상호, 상표, 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오인

- ②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 제78조)
 - a. 단순한 가공과정에서 은폐·제거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품
 - ➡ 완성 가공품에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해야 함
 - b. 대형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 ➡ 재포장용기에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 (날개일 경우 스티커 등 사용)
 - c.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물품
 - ➡ 제조자는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당해 물품명의 원산지 : 국명”의 형태로 표기
 - * 이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를 알려야 함



③ 수입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규정 제79조)

● 별표 10의 세트물품 (예: 공구세트, 구급상자 등)

-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포장·용기에 표시 가능

● 그 외 세트물품

- 개별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 개별물품 + 포장·용기에 모든 원산지를 나열
(ex : “Made in China, Taiwan...”)

④ 관세율표에 따라 별도 분류된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규정 제80조)

-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함(ex : “Bottle made in 국명”)
- 다만,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④ 원산지 표시의 면제 (규정 제82조)

- ①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7호의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②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③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 ④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 ⑤ 연구개발용품(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 ⑥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닐 것)
- ⑦ 보세운송·환적 등 단순경유 물품
- ⑧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 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⑩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 ⑪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세관장이 인정한 것에 한함)
- ⑫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위 표시사항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은 물품별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음 (규정 제81조①항)

- 관세청장이 물품별로 표시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을 지정

*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2.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

① 원산지 판정기준 (시행령 제61조)

① 1개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시행령 제61조제①항제1호)

-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완전생산물품에 해당하는 것 (규정 제85조제①항)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 또는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1~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

② 2개국 이상 걸쳐 생산된 경우 (시행령 제61조제①항제2호)

- 세번(稅番)변경기준이 원칙 : 최종적으로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규정 제85조제②항)

※ 예시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 주요공정기준을 적용 - 별표 9*에서 정한 품목에 한하여 (규정 제85조제④항)

* 별표 9 : 카메라, 가축(소, 돼지), 의류, 섬유



-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음 (시행령 제61조제①항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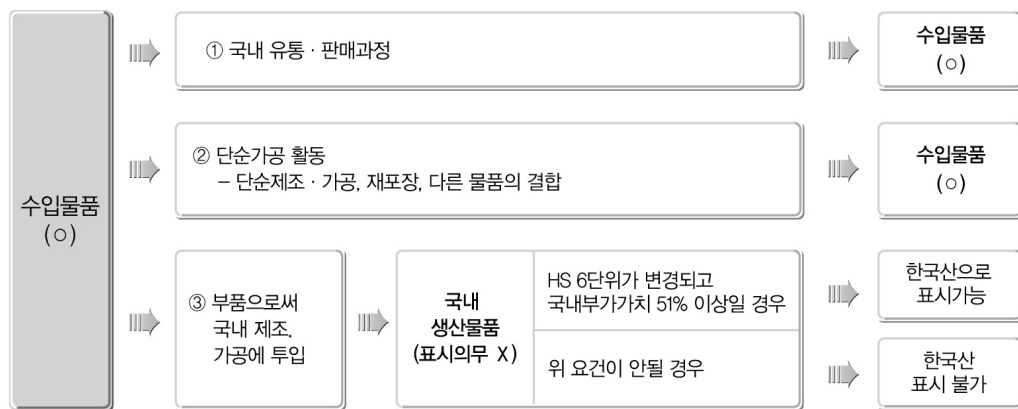
※ 단순가공에 대한 예시 (규정 제85조제⑧항)

1. 운송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가공활동
3. 판매목적 포장 등
4. 제조, 가공 결과 HS 6단위의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가공과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

* 다음 :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열, 가당, 전리(ionizing),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도축, 펴기, 압착, 기타.

※ 참고 : 수입물품 유통과정상 원산지 표시의무

(원산지표시 의무여부 : ○, ×)



1. 수입물품이 국내유통·판매과정을 거친 경우, 그대로 수입물품의 지위를 가진다.
➡ 원산지표시의무가 그대로 존속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경우, 그대로 수입물품의 지위를 가진다.
➡ 원산지표시의무가 그대로 존속
3. 수입물품이 부품으로 국내에 생산·제조과정 투입된 경우, 국내생산물품이 되어 수입물품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다.
➡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음

3.2 국내 생산물품 : (규정 제86조)

1. 원산지 판정 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품 중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음

1류~24류(농수산물 · 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 · 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 · 신문 · 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한국산 표시를 원할 경우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어야 한다.

※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국산 표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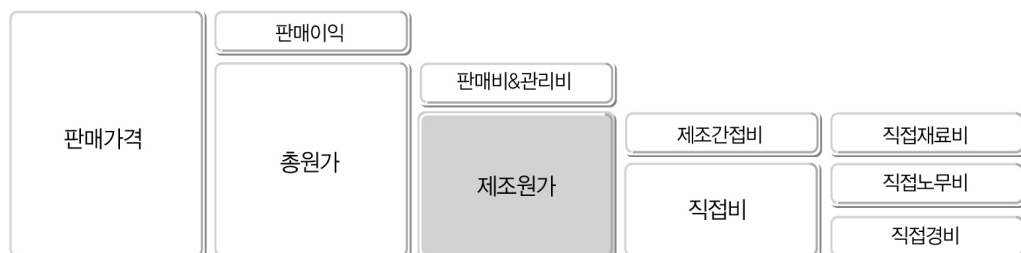
- ①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물품을 생산하고,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 ②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 CIF(Cost, Insurance & Freight/운임 ·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지(목적항) 까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까지 지급하는 거래조건
- 제조원가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분류(원가계산방법에 따라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로도 분류 가능)

※ 한국회계기준원의 「원가계산준칙」에 따름

증명 : 대기업 - 재무제표공개, 그 외 기업 -연말 세금신고

〈 물품의 원가구성 〉





2. 원산지의 표시

① 원산지표시 의무 : 없음

② 원산지표시 방법

① 한국산으로 판정된 경우 표시방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글·한자·영문으로 표시

- a. “한국산”, b. “韓國產”, c. “Made in KOREA,
- d.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② 한국산 판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표시방법

- a.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
- b.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 - “원료의 원산지 : 국명”으로 표기
- c.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제조원가의 재료비에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 표시 - “원산지 : 국명(%), 국명(%)

3.3 수출물품

1. 원산지의 표시

● 원산지표시 의무 : 없음

● 원산지표시 방법

- 수입물품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방법이 다를 경우 그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시행령 제56조제⑤항)

2. 원산지의 판정

● 수입물품의 판정기준과 동일하나, 수입국에서 정한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61조제③항)

※ 참고 : 원산지증명서 종류

- ① 일반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
- ② 특혜 원산지증명서 (관세양허 원산지 증명서)
 -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원산지증명서 (7개국)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
 - GSTP 원산지증명서 : 개발도상국 간 자조정신 아래 상호 특혜무역 (48개국)
 -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 (13개국)
 -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6개국)
 - 방콕협정에 따라 회원국간 특혜 관세를 적용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 한-칠레,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EFTA
- ③ 기타 : 수출자(제조업자) 원산지 증명서, 특정국 원산지 증명서 등 수출자 및 수입국에서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요구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현황

구 분	발 급 기 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대한상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FTA포함)	대한상의, 세관



3.4 표시위반에 따른 벌칙

1. 수입품

구 항	유 형	제재대상	제 재				
			형사처벌 (고발)	과징금(A) 3억원이하	과징금(B) 2억원이하	과태료 1천만원이하	시정 조치
1	표시방법 위반 (법 제33조제5항)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		●
2	허위·오인표시, 표시 손상 또는 변경 (법 제33조제5항)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	●			●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미표시 (법 제33조제5항)	무역거래자	●		●		●
4	1~3호의 시정조치명령 위반 (법 제54조제9호)	1~3호 시정조치명령 위반자	●				
5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수입하여 분할·재포장·단순가공·소분 후 유통시 당초 원산지 미표시 (법 제59조제2항제2호)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	
6	원산지 검사 거부·방해·기피 (법 제59조제2항제3호)	행위자				●	

2. 국내생산물품

- 허위 또는 오인 표시 : 대외무역법상 처벌규정 없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처벌 가능

3. 수출물품 및 해외 생산물품

- 허위 또는 오인 표시, 손상·변경 : 과징금, 시정조치, 형사처벌
-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자 및 외국에서 판매한자 : 형사처벌

별첨 1

원산지제도 Q & A

〈Q.1〉 원산지의 개념 : 한국의 회사가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생산하였다. 이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A : 한국으로 표시할 수 없고, 중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함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중요한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자본의 투자국, 디자인 수행국, 기술의 제공국, 상표의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임
 - * 다만, Hong Kong, Macao, Guam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관세청 고시)

〈Q.2〉 원산지의 개념 : 공산품 표시사항 중 “제조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인지?

A :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님

- 일반적으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 등에 “제조국”이 사용되고 있음
 - 품질표시에서 “제조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
 - 안전인증표시의 “제조국”은 당해 전기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립·생산한 제조업체가 소재한 국가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Q.3〉 원산지표시 대상 : 모든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A :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만 표시하면 됨

- 현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664개(HS 4단위 기준)로 전체물품 1,221개의 54%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고시) 별표 8참조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HS 코드, 대상여부 등 문의 :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T.1577-8577 (품목분류)

★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물품 : 지경부장관이 지정한 수입물품,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국산 농산물, 음식점에서 쌀·쇠고기

〈Q.4〉 수입물품원산지 표시의무 : 수입 후 가공활동을 거치면서 원산지가 지워진 경우 원산지표시를 다시 해야 하는지?

A : 국내에서 수행된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단순 제조·가공, 재포장, 타 물품과 결합)이면 수입될 때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야 함

● 다만, 수입부품으로 국내 생산·제조에 투입된 경우에는 더 이상 수입물품이 아닌 국내생산물품으로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음

〈Q.5〉 대외무역법 적용범위 : 대외무역법은 공산품에만 적용되는지?

A :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도 적용됨

●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수출입 되는 물품이라면 우선적으로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음

〈Q.6〉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어떻게 : 수입물품별 구체적인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정하는지?

A :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대외무역법상 표시원칙에 기초하여 물품별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함

*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통관 시 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사전판정

▶ 따라서 수입전 관세청과 원산지 판정 및 표시방법을 미리 협의한 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 함

〈Q.7〉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차이 :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제도의 차이는 무엇인지?

A :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물품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국내 생산물품(농수산물 포함)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없음

-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표시 방법에 있어서 국가명 외에 지역명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음

구 분	대외무역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표시의무자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출하자(생산·가공) 또는 판매자
표시대상	수입물품	국내유통 농·수산물, 국내가공품의 원료
표시방법	“원산지 : 중국”, “Made in China” 등	“국산”, “포천군”, “연근해산” 등
대상분류	HS 코드	물품명

〈Q.8〉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 인도네시아의 원료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1차가공을 하고, 일본에서 2차가공을 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는 어디인지?

A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하여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 실질적변형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HS 6단위의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국으로 보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별표9(카메라, 소, 돼지, 의류, 섬유)에 한하여 부가가치 또는 주요 공정기준을 적용

〈Q.9〉 해외 임가공의 경우 원산지 판정 : 한국에서 모든 부품을 제작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공장 에서 조립만 하여 완제품으로 국내 수입한 경우 원산지는?

A : 해외 임가공시 HS 6단위의 변경은 없으나, 국내 부품 전부를 수출할 경우 HS 코드를 완제품으로 미리 부여하는 HS분류 규정(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해왔으나*,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한국산으로 판정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단서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제85조 제2항 단서 삭제, 2012.7.31)



〈Q.10〉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 인도네시아의 원료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1차 가공을 하고, 일본에서 2차 가공을 하고 한국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는 어디인지?

A :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는 물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 표기 가능

- ①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물품을 생산하고,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이거나
- ②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음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Q.11〉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입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

A :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는 물품은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음

● 먼저 한국산으로 인정된 경우 표시방법

- “한국산”, “韓國產”, “Made in KOREA”,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

- 한국을 “가공국”,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예> 가공국 : 한국 (원료의 원산지 : 중국 40%, 대만 35%, 한국 25%)

〈Q.12〉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 베트남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였고,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이 경우 “Made in Korea” 표시를 해도 되는지?

A :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은 수입물품과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HS 6단위의 변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출상대국 기준이 이와 다를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부품의 HS 6단위와 한국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HS 6단위가 변경이 되면 “Made in Korea”로 표시가 가능

- 다만, 미국의 규정이 이와 다를 경우 그에 따라 판정 및 표시가 가능

※ 즉,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로 수출되는지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별첨 2

원산지표시대상품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HS류별	품 목 코 드
01류	0102, 0106(자라에 한함)
02류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3류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4류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0410
05류	0504, 0506, 0507, 0510
06류	0601, 0602, 0603, 0604
07류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08류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0814
09류	0901, 0902, 0903, 0904, 0906, 0907, 0908, 0910
10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류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2류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1, 1212
13류	1302
15류	1501, 1502, 1503, 1504,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20, 1521, 1522
16류	1601, 1602, 1603, 1604, 1605
17류	1701, 1702, 1703, 1704
18류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9류	1901, 1902, 1903, 1904, 1905
20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류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2류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3류	2301, 2303, 2308, 2309
24류	2401, 2402, 2403
25류	2501
28류	2815.11, 2853
30류	3003, 3004, 3005, 3006
31류	3101
32류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33류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4류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HS류별	품 목 코드
35류	3504, 3505, 3506
36류	3604, 3605, 3606
37류	3702, 3703, 3704, 3707
38류	3808, 3814, 3820, 3824
39류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40류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1류	4114, 4115
42류	4202, 4203, 4205, 4206
43류	4303, 4304
44류	4402,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6류	4601, 4602
48류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3, 4814,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3
49류	4905, 4909
50류	5006, 5007
51류	5109, 5110, 5111, 5112, 5113
52류	5204,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53류	5309, 5310, 5311
54류	5401, 5406, 5407, 5408
55류	5502, 5508,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6류	5601, 5602, 5603, 5604
57류	5701, 5702, 5703, 5704, 5705
58류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
59류	5909(소방호스에 한함)
60류	6001, 6002
61류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117
62류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6217
63류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6309, 6310
64류	6401, 6402, 6403, 6404, 6405, 6406
65류	6501, 6502, 6504, 6505, 6506, 6507
66류	6601, 6602, 6603
67류	6704
68류	6801, 6802, 6804, 6806, 6809, 6809, 6810, 6815
69류	6902, 6903, 6906, 6907, 6908, 6910, 6911, 6912, 6913, 6914
70류	7003, 7004, 7005, 7006, 7007, 7008, 7009, 7010, 7013, 7014, 7015, 7018, 7019, 7020



HS류별	품 목 코 드
71류	7113, 7114, 7116, 7117
72류	7216
73류	7307(플랜지에 한함), 7311, 7315,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 7325, 7326
74류	7415, 7418, 7419
75류	7508
76류	7607, 7612, 7613, 7615, 7616
78류	7806
79류	7907
80류	8007
82류	8201, 8202, 8203, 8204, 8205, 8206, 8207, 8208, 8209, 8210, 8211, 8212, 8213, 8214, 8215
83류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4류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16, 8417, 8418, 8419, 8421, 8422, 8423, 8424, 8425,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40, 8441, 8442, 8443, 8448, 8450, 8451, 8452, 8453, 8456, 8465, 8466, 8467, 8468, 8469, 8470, 8471, 8472, 8473, 8476, 8479, 8481, 8482, 8483, 8484, 8487
85류	8501, 8502,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5, 8526, 8527, 8528, 8529,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87류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1, 8712, 8713, 8715, 8716
89류	8903
90류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10, 9011, 9012, 9013, 9015, 9016, 9017, 9018, 9019, 9021,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1, 9032, 9033
91류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 9111, 9112, 9113, 9114
92류	9201, 9202, 9205, 9206, 9207, 9208, 9209
94류	9401, 9402, 9403, 9404, 9405
95류	9503, 9504, 9505, 9506, 9507, 9508
96류	9603, 9604, 9605, 9607, 9608, 9609, 9610, 9611, 9612, 9613, 9614, 9615, 9616, 9617, 9618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법령

법률	시행령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0.4.5> ③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0.4.5>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2010.10.1>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10.10.1]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률	시행령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0.4.5> ⑦ 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10.10.1> ⑤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① 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제57조의2(서류검사)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서류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서류

법 률	시행령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10.1]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 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법 률	시행령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0.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11.2>

해 설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계기된 수입물품임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모든 수출입 물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물품에 한하여 표시의무를 부과
 -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표시 여부가 임의사항이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무역거래자,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

유권해석

Q1. 인터넷상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Question
질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상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Answer
답변

온라인 거래 사이트상에서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님.

Why
이유

■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해 무역거래자가 해당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온라인 거래 사이트상에서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이트에 원산지를 허위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 그 자체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위반에 해당되나, 해당 물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사이트상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는 관계로 온라인사이트상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은 아님.



Q 2. 수출할 때도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Question

질의

물품을 수출할 때도 해당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임.

Why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이나,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물품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당 물품을 수입 하는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 따라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면 적절한 표시가 될 것으로 보임.

Q 3.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하는 기관은?

Question

질의

수입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하는 기관은?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전국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단속 권한 위탁 및 위임.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허위·오인·미표시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권한(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권한 포함)을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탁·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에 대한 신고는 지역세관 또는 시·도로 접수 가능.



Q 4. 수입 의약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Question
질의

수입 의약품의 경우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Answer
답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Why
이유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더불어, 원산지표시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 3-2조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 <3-2조제4항>

④ 약사법·식품위생법·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상기의 법령에 의거하여, 약사법 등의 표기사항에 따라 표기한 제조국 등이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국과 일치할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표시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사법에 따른 제조국 등이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표시를 적정한 원산지 표기로 볼 수 없음.

Q 5. OEM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Question

질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생산)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해당 물품을 물리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의미함.

Why

이유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해당 물품을 물리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의미함. 이에 따라,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생산(OEM)을 통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이 실질적으로 제조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됨.
- 참고로 OEM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에서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을 명확히 확인한 후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함.



Q 6.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Question
질의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국문, 영문)이 있는지?

Answer
답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법령은 현재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이 있음.

Why
이유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법령은 현재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이 있으며, 동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별 적정 표시방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6항에 의거하여 관세청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대외무역법령의 경우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함.
- 더불어, 대외무역법 또는 시행령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등의 기관에서 영문 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고시의 경우는 공식적인 영문규정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무역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무역관련 규정의 통번역서비스 이용도 가능하오니,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 함.

Q 7. 수입산 밀가루, 설탕의 원산지 표시 방법?

Question

질의

수입산 밀가루, 설탕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Answer

답변

농산물(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Why

이유

■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농산물(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2. 수입물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경우 상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령상 구성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의무는 없음.



Q 8.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Question
질의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Answer
답변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10에 열거함.

Why
이유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10에 열거된 수입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피스톤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경우, 본체는 일본에서 제조하고, 피스톤의 부품이라 할 수 있는 피스톤핀은 중국에서 제조하여 결합상태가 아닌 동일 상자에 세트로 들어있는 상태로 수입되어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포장·용기에는 개별물품의 원산지(일본, 중국)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함.

Q 9. 국내 거래물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

Question

질의

국내 거래물품(수입면사 가공품)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지?

Answer

답변

수입면사(HS 5205, 5206)는 원산지 표시 대상 수입물품이 아님.

Why
이유

- 면사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염색가공 후 동 제품을 내수 판매 하는 경우,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수입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 8」에 계기된 수입물품이며, 면사(HS 5205, 5206)는 원산지 표시 대상 수입물품이 아님.
-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염색가공한 후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음. 다만,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의 표시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름.



Q 10. 수출용 안마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Question
질의

수출용 안마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임.

Why
이유

- 중국에서 안마기를 부품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공정 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임의사항)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따라서, 안마기를 수출하는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면 적정한 표시가 됨,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없음.

Q 11.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Question

질의

수입 물품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Answer

답변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농수산물의 경우 관련법에서 특정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

Why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물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등)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물품만 해당됨.
-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 우리부에서 관할하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음.
-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관련법에서 특정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



Q 12. 제조·가공에 여러 국가를 거친 수입 초콜릿 원산지 표시 방법은?

Question

질의

제조·가공에 여러 국가를 거친 수입 초콜릿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생산, 제조 과정에 여러 국가가 관련된 경우의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국가가 됨.

Why

이유

- 벨기에산 초콜릿 원료를 사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헝가리에서 포장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EU로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질의와 관련,
- 현행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생산, 제조 과정에 여러 국가가 관련된 경우의 원산지 판정은 최종적으로 HS 6단위 변경을 시킨 국가가 되며, 단순한 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음.
- 따라서, 포장을 한 헝가리는 원산지가 될 수 없으며, 네덜란드에서의 가공공정으로 HS 6단위가 변경되고 그 공정이 단순한 공정이 아닌 경우 네덜란드가 원산지가 될 것임. 또한, 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는 특정 국가명을 사용하며, EU,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Q 13. 국산과 수입산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Question

질의

물품의 구성 부분품이 국산과 수입산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Answer

답변

수입물품과 국내생산 물품이 결합되어 판매된다면 당초의 물품(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유지되어야 함.

Why

이유

- 물품의 구성 부분품이 국산과 수입산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으며, 국내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으므로
- 수입물품과 국내생산 물품이 결합되어 판매된다면 당초의 물품(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Q 14. 드라이플라워를 장식한 벽시계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Question
질의

각기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드라이플라워를 장식한 벽시계의 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은?

Answer
답변

각기 다른 국가에서 드라이플라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벽걸이용 시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드라이플라워의 원산지가 지워졌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다시 표시하여야 함.

Why
이유

■ Dry Flower와 벽시계 등을 각각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디자인(배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지워진 경우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대외무역법 제33조)

■ 따라서, A국 액자와 B국 드라이플라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벽걸이용 시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드라이플라워의 원산지가 지워졌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다시 표시해야 함. 다만, 질의에서 제시하신 물품(드라이플라워가 장식된 벽시계)의 경우 주기능이 꽃이 아닌 시계로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품 구매시 장식된 드라이플라워는 고려하지 않고 벽시계에 중점을 두고 구매하는 경우라면 드라이플라워의 원산지 표기는 생략 가능 할 것으로 보임.

Q 15.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Question

질의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외 없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Answer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원산지표시 면제 요건을 충족 할 경우 표시 면제가 가능.

Answer

답변

- 현행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한 경우 표시를 면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 등
-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 또한 원산지표시 운영에 관한 고시 제 3-5 제1항에서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 수입자의 상호·상표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 기계류 등의 본제품과 같이 세트에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Q 16. 수출할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Question
질의

베트남에서 작업용장갑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코팅장갑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지?

Answer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원산지표시 면제 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

Why
이유

- 현행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한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 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작업용장갑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8호의 “외화획득용 제품”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Q 17. 제3자가 수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제 가능한지?

Question
질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시 제3자가 수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제 가능한지?

Answer
답변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

Why
이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인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란 물품 판매장 (매장) 실내 장식용 물품 등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3자가 아닌 실수요자(판매장 등)가 직접 수입하여 동 물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지 않고 판매장 장식용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함.



Q 18. 다른 법령에서 추가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Question
질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 외 추가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Answer
답변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추가로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

Why
이유

-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이외에 추가로 원산지 표시 면제를 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원산지표시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수입자의 상호·상표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Q 19. 행사에 사용되는 전시용 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Question
질의

행사에 사용되는 전시용 물품(카메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Answer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각 호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6호에서는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에 대해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도 제3-5조 제1항제5호에서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 질의한 물품이 상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견본품 또는 전시용 물품일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함.



Q 20. 원산지 표시의 경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Question
질의

수입물품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국가명 등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어로 표시 할 수 있음.

Why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어로 표시 할 수 있으며 표시 형식은 다음과 같음.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 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 기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 표시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업무가 위탁되어 있음.

2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법 령

법 률	시행령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2.29> ③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5>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품목명



법 률	시행령
	(모델명을 포함 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④ 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0.1> ⑤ 원산지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제목개정 2010.10.1] 제63조(이의제기)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법 률	시행령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0.20> ④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해 설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주요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 적용 : 수입물품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식물성 생산물
 -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 또는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 해당국 또는 해당국 선박에서 1~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
 - 세번변경 기준 : 최종적으로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 주요공정기준 적용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서 정한 품목에 한해 적용
 - 카메라, 가축(소, 돼지), 의류, 섬유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상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Q 21.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은?

Question
질의

생산국이 다수인 건조과실(라임 HS 0813)을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원산지 판정) 및 판정 기관은?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음.

Why
이유

-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실질적 변형)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함.
-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 통칙 제2호가목을 예외적용하여 미조립완제품은 HS 세번 변경이 없어도 임가공국을 원산지로 함.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음.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 판정을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특수통관과, 042-481-7644)에게 신청할 수 있음.

Q 22. 수입 고행차의 적절한 원산지 판정은?

Question
질의

스리랑카산 차를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에서 완제품인 고행차를 생산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의 원산지는?

Answer
답변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함.

Why
이유

- 홍차 추출물의 원료인 스리랑카산 홍차잎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홍차분말을 만드는 제조과정을 거친 후 일본산의 다른 원재료와 혼합하여 고행차를 생산하여 동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동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
- 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HS 6단위 세번 변경)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 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공정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경우 스리랑카산 홍차잎을 이용하여 홍차분말을 만드는 일본에서의 가공공정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넘어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는 공정인 경우 동 국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일본이 될 것임.



Q 23. 특정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Question
질의

제3국 어선이 특정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Answer
답변

원산지 판정 기준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배하는 특정국에 원산지가 인정되고 선박 소유 국가에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음.

Why
이유

- 중국 어선이 러시아 및 북한 영역(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허가를 받아 채포한 물품(수산물)의 원산지 국가 판정과 관련
-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은 해당국 영역에서 어로로 채포한 물품,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해당국에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질의의 경우 원산지는 당초의 물품이 어획된 북한, 러시아가 될 것임.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국가 판정에 있어 조업허가 획득 여부 등은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Q 24. 2개 국가의 가공으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Question
질의

2개 국가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는?

Answer
답변

2개국 이상의 국가를 통하여 물품이 가공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함.

Why
이유

- 2개국에 걸쳐서 생산된 과일 분말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국에서의 단순한 가공 여부에 따른 적정 원산지 판정에 관하여
- 추출, 거르기, 흡수, 불순물 및 에탄올 분리, 건조, 그라인딩, 혼합,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과일 추출물의 제조 공정은 일부 공정의 경우 포장, 건조, 이물질 제거 등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며, 일부 공정은 자세한 세부 공정 과정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음.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특수통관과, 042-481-7644)에게 신청 가능 함.



Q 25. 커피의 원산지는 원두생산국인지 로스팅 국가인지?

Question
질의

자메이카산, 콜롬비아산, 브라질산 커피 원두를 영국으로 수입하여 로스팅(볶음)하고 동 로스팅 커피를 영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국가는?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상 로스팅커피의 원산지 국가는 원두 생산국이 아닌 원두를 로스팅한 국가가 됨.

Why
이유

- 자메이카산, 콜롬비아산, 브라질산 커피원두를 영국으로 수입하여 동 원두를 브랜딩하고, 로스팅하여 동 물품(HS 0901.21, 0901.22)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커피의 원산지는 기존에는 로스팅 수행 국가의 커피 볶음공정은 대외무역법상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아 커피 원두 생산국인 자메이카, 콜롬비아, 브라질을 동 로스팅커피의 원산지로 인정했으나,
- 현재, 로스팅공정 수행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커피 볶음공정 수행국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어 영국이 원산지가 됨.

Q 26. 수입물품을 국내 가공후 수출할 때 원산지 표시 방법은?

Question

질의

해외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로 가공하여 동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하는지 혹은 수입 당시의 원산지 국가를 표시 하는지?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함.

Why

이유

- 베트남에서 작업용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코팅장갑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그 물품의 수입국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 할 수 있음.
- 결국, 코팅장갑을 수출하는 해당국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면 됨.



Q 27. 국내에서 가공, 봉제하여 수출하는 담요의 원산지 표시는?

Question
질의

중국에서 담요 원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봉제하여 동 물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임.

Why
이유

- 중국에서 담요원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봉제한 완제품(담요)을 해외(사우디 등)로 수출할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한국산 표시 가능)에 관하여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이나,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 또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그 물품의 수입국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할 수 있음.
- 따라서, 담요를 수출하는 해당 수입국(사우디 등)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면 적절한 표시가 됨.

Q 28. 제3국에서 어획한 대게를 중국에서 단순가공한 경우 대게의 원산지는?

Question
질의

제3국에서 어획한 대게를 중국에서 가공한 경우 대게의 원산지는?

Answer
답변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가 됨.

Why
이유

- 제3국에서 어획한 대게를 중국에서 가공한 경우 적정 원산지 판정이 어떻게 되며, 중국국적 어선이 공해상에서 어획한 대게의 원산지는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 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기준은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HS 6단위 변경,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제외)를 원산지로 보고 있음.(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
- 따라서, 북한 또는 러시아산 대게(0306241020)를 중국에서 머리와 내장 제거, 다리부분 자숙, 냉동 등의 공정을 거쳐 최종물품(0306149000)을 생산하는 경우 동 가공과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단순절단, 단순가열, 냉동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될 것이며 동 물품의 원산지는 대게를 어획한 국가가 되는 것이 원칙임.
- 또한,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採捕)한 물품,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국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Q 29. 안마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Question
질의

중국에서 안마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Answer
답변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사항임.

Why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임의사항)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따라서, 귀사가 안마기를 수출하는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먼저 확인
하고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적절한 표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Q 30.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어획한 조기의 원산지는?

Question

질의

우리나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어획한 조기의 원산지는?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결정은 조업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외 무역법상 원산지 판정 기준에 의해 결정됨.

Why

이유

-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역에서 불법 어로로 채포한 물품(수산물)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해당국에 어업 허가권을 득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함.
- 대외무역리규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은 해당국 영역에서 어로로 채포한 물품,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경제 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해당국에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음.



Q 31. 골뱅이를 가공하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지?

Question 질의

냉동된 골뱅이의 해동, 껍질 제거, 가열 등 골뱅이를 가공하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지?

Answer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Why 이유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제품의 가공공정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계기된 단순한 가공활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음.
- 골뱅이의 제조공정은 “해동”, “가열”, “껍질제거”등이 주된 공정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공정은 별도의 특수한 공법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가공을 수행한 국가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될 수 없음.

Q 32. 지경부 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Question
질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규정된 “지경부 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는지?

Answer
답변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이 가목에서 파목까지의 공정 외에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예상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목을 두어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 할 수 있도록 규정.

Why
이유

-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이 가목에서 파목까지의 공정 외에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예상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모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목을 두어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 할 수 있도록 규정.
- 하목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공정을 별도로 미리 정하여 둔 것은 아니며 물품별 구체적인 가공공정 과정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 령

법 률	시행령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4.5>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해 설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내에서 판매·유통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가 적용됩니다.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 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4.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⑤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제조 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농수산물, 식품, 의료용품, 향료 및 화장품, 지와 판지, 서적, 신문, 인쇄물, 섬유, 유리, 철강, 일반차량, 선박

● 천일염의 경우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국산 표시 가능합니다.



● 국내산 판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판정 대상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해당되어야 하고 판정 제외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물품을 생산하고,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
 - ※ CIF(Cost, Insurance & Freight/운임 ·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제조원가(한국회계기준원의 원가계산 준칙)

유권해석

Q 33.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는?

Question
질의

수입산 원료(부품)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동 물품의 원산지는?

Answer
답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은 국내 판매하는 물품에만 적용됨.

Why
이유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임.

■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봄.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즉, 원료·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공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니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참고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는 대외무역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기준임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Q 34. 수입후 국내에서 혼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Question
질의

여러 국가에서 원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혼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한지?

Answer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함.

Why
이유

- 2개 국가에서 제품(원료)을 수입한 후 동 수입제품(원료)을 혼합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여 동 물품을 국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에서 행하는 가공(두 제품을 혼합하는 과정)이 단순한 가공 활동인 경우에는 당초의 수입물품 원산지가 그대로 표시되어함.
- 국내 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을 초과하여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지위가 없어져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음. 이 경우 동 물품에 한국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HS 6단위가 변경된 경우 총 제조 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 HS 6단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85% 이상)을 구비하면 가능함.
- 다만, 농·수산물, 식품 등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산 판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Q 35.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한지?

Question
질의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물품을 생산하였으나 동 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한지?

Answer
답변

국내에서의 생산된 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 하지 않음.

Why
이유

- 외국에서 반제품인 부품을 수입한 후, 동 부품과 국내 다른 부품을 혼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국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산 표시를 할 수도 있음.
- 다만,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한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계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판정 하지 않음.



Q 36. 수입합판과 국내산 합판을 결합한 경우 원산지는?

Question

질의

수입합판과 국내산 합판을 접착한 합판의 원산지는?

Answer

답변

국내에서 행한 추가공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결정됨.

Why

이유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 제조·가공업자가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규정하고 있음.
- 즉, 합판의 국내 접착공정이 “단순한 결합” 수준의 공정이라면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78조에 따라 수입된 합판 부분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만일, 국내에서의 접착공정이 두 물품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의 “실질적 변형” 수준의 공정에 해당할 경우 완성된 물품은 더 이상 수입물품이 아니므로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표시의 의무는 없음.
- 다만, 동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6조에 따라 표시가능 여부가 결정.

4 수출입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법 령

법 른	시행령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그 물품등의 원산지 국가 또는 물품등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2.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3. 제1호의 국가 또는 제2호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②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법 률	시행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해 설

-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 기관
 -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 대한상의
 - 특혜원산지증명서(FTA 포함) : 대한상의, 전국 세관
 - 기타 수출자(제조업자)원산지증명서, 특정국 원산지증명서 등
- 일반 원산지제도와 특혜 원산지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증명서도 각각 다름

유권해석

Q 37. 한-미 FTA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경우 별도로 일반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는지?

Question
질의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인데 한-미 FTA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경우 별도로 일반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는지?

Answer
답변

일반 원산지제도와 FTA 원산지제도는 그 운영 목적이 달라 별도로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Why
이유

- 일반 원산지제도와 특별 원산지제도는 그 목적을 달리 함
- 일반원산지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통계, 원산지 표시, 정부조달, 반덤핑·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비특혜무역제도 운영에 활용됨.
- FTA원산지는 물품의 수입시 협상 체결국간 상호 양허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원산지로 체결국간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양허관세 적용
- 두 원산지제도의 원산지 판정 기준도 달리 함
- 일반원산지의 경우 실질적변형(HS 6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FTA의 경우 HS 세번 변경, 부가가치, 주요공정 수행국 등 다양한 기준 적용.
-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FTA원산지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못할 경우도 있음.



Q 38.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근거와 구비 서류는?

Question
질의

제3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근거와 구비 서류는?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상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나 대한상의에서 국제협약에 의거 발급하고 있음.

Why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물품의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한상의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자의 편의를 위해 국제협약인 교토협약 원산지 관련 부속서 D2(규범 제10조)에 의거 제3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음.

■ 2006. 10월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국내에서 수출되는 제3국 물품에 대하여서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했으나, FTA 확산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 2011. 4월부터는 제3국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국원산지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5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 금지

법령

법률	시행령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 제4호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5>	

해설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임의 사항이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하며, 특히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 외국산 물품과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함
 -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 허위발급, 물품등에 허위표시 하는 등으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해당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조치



유권해석

Q 39. 중국산 면장갑을 국내에서 회사 로고를 프린트하고 재포장하여 수출할 경우 동 물품에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는지?

Question

질의

중국에서 수입한 면장갑을 국내에서 회사 로고를 프린트하고 재포장하여 이를 수출할 경우 동 물품에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는지?

Answer

답변

한국산으로 표시 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외국산 물품 국산 가장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됨.

Why

이유

- 국내에서 행하는 추가공정(회사 로고를 인쇄하고 재포장하는 과정)은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어 국내 가공 후에도 수입물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
- 외국산 물품에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38조의 외국산물품 한국산 가장 수출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또한 대외무역법 제33조의 원산지 허위표시에도 해당 됨.
- 따라서 이 경우 대외무역법상 행정조치(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병행이 가능 함.

Q 40. 수출국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 판정을 받은 경우 물품에도 한국산 표시가 가능한지?

Question

질의

중국산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 동 물품을 수출할 때 해당 수출국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 판정을 받은 경우 물품에도 한국산 표시가 가능한지?

Answer

답변

원산지 판정 기준에 있어 해당 수출국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를 수 있거나 이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는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없음.

Why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수입 물품 원산지 판정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 국가별 원산지 기준이 통일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의 경우 교역 상대국 기준에 따르는 것이 수입 통관 등 국제 무역의 신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며, 국내 원산지 기준만을 고집할 수는 없음.
- 다만, 원산지는 해당 수입국 기준에 의거 판단하되, 물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경우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Q 41. 수입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처벌은?

Question
질의

수입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nswer
답변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경우에 따라서 과징금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Why
이유

- 대외무역법상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이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포함)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가장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됨.
- 동 규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또한 동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위반 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도 가능함.

6 벌칙

법령

법률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3.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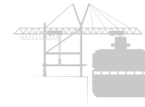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법제33조 제4항 제1호)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법제33조 제4항 제2호)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법제33조 제4항 제3호)
-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포함)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법제38조)

Ⅲ

전략물자의 수출입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C

ontents

(전략물자의 수출입)



1. 전략물자관리제도 개요	207
1.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개요	209
2.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	217
3.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221
4. 자율준수 무역거래 제도	229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239
1.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241
2. 전략물자의 판정	267
3. 전략물자의 수입목적확인서	277
4. 전략물자의 중개	280
5. 자율준수무역거래자	285
6. 벌칙	289

C Contents



유권해석 사례(주제별)

○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Q1.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제한의 경우는?	245
Q2. 전략물자에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247
Q3.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무엇인가?	249
Q4.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250
Q5.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251
Q6. 수출 후 사후허가를 받아도 되는가?	253
Q7. 수출허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54
Q8. 전략물자 비해당인 경우 허가 없이 수출해도 되는지?	255
Q9. 우려거래자의 정의 및 확인하는 방법은?	257
Q10.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258
Q11. 전략기술만을 수출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259
Q12. 수출지역 구분의 기준은?	260
Q13. 나지역을 경유하여 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261
Q14.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262
Q15. 수출허가 면제 중 당초 수출자의 범위는?	263
Q16.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수출가액은 얼마인가?	264
Q17. 암호화품목의 수출허가 면제 여부?	265
Q18. 부득이한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송 시 수출허가 면제 여부?	266



○ 전략물자의 판정

Q19.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270
Q20. 전략물자 판정결과의 유효기간은?	271
Q21. 전략물자 통제번호의 숫자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272
Q22.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은 모두 관리대상인지?	273
Q23. 자가판정 시 HSK를 모르는 경우는?	274
Q24.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은?	275
Q25. 해외 판정기관의 판정결과 효력은?	276

○ 전략물자의 수입목적확인서

Q26. 수입목적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279
-----------------------------------	-----

○ 전략물자의 중개

Q27. 중개무역 시 허가가 필요한가?	282
Q28. 중개무역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83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Q29.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 시 혜택은?	287
Q30. 포괄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288



1. 전략물자관리제도 개요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개요

1.1 국제수출통제체제 소개

- 전략물자(strategic items) :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 무기 및 이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
- 전략물자 수출관리 : 이러한 전략물자가 확산국가나 불량국가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전략물자의 무역을 관리하는 제도
- 국제다자간 수출통제체제 : 세계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선진국들의 비공식적 협의체들로 각 체제별로 별도의 회원국과 운영체계를 운영
 - 수출관리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거래부적격자에게 전략물자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요구
 - 관리와 관련한 제도로는 수출허가 심사제도, 재수출통제, 기업의 자율관리제도 등이 있으며, 수출관리 뿐만 아니라, 연구, 제조, 비축시설 및 활동까지 감시하는 제도로 강화 추세
- 국제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종류
 -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heical Weapons Convention; CWC)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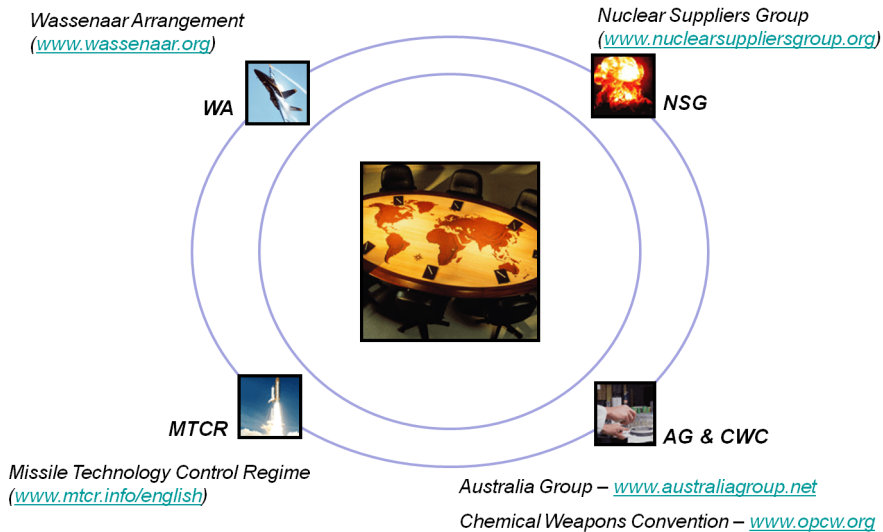


〈 수출통제체제별 품목, 회원국 등 현황 〉

(2012년 10월 현재 기준)

구 분	통제대상품목	회원국	출범연도	한국가입
핵공급국그룹(NSG)	원자력 전용 및 이중용도품목	46개국	1978년	1995년
호주그룹(AG)	생·화학물질 및 이중용도품목	41개국	1985년	1996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무인항공기 및 이중용도품목	34개국	1987년	2001년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41개국	1996년	1996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화학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188개국	1997년	199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생물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177개국	1975년	1987년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1)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개요

-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했던 ‘다자간수출통제조정 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를 대체하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물품(dual-use goods)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설립
- WA는 1996년 7월 네덜란드의 헤이그 근교 작은 도시인 바세나르에 본부를 두고 출범하였으며, 공식 명칭은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untrie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임

● WA 관리품목 : 재래식무기(conventional arms)와 이중용도품목으로 구분

- WA는 COCOM과는 달리 수출통제 대상국 명단(country list)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핵비확산 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과 같은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WA의 협약 사항의 이행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 WA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참여국들은 자체적인 수출관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관리품목의 수출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2)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 개요

● 1970년대 초에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비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일쇼크'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 이러한 추세는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1974년에는 NPT 비회원국인 인도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자국의 우라늄을 이용하여 핵실험에 성공하였음
- 이러한 국제정세는 일명 '런던클럽'으로도 불리는 NSG의 발족을 촉발하였음

●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 ZC)¹⁾는 NPT회원국만이 참여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NPT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교역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NSG는 프랑스 등 ZC 비참여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ZC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여 국제 핵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NSG 관리품목 : 1978년 IAEA문서 INFCIRC/254로 발표된 NSG 관리지침(Guideline) 1 (Part I)은 원자력 전용으로 설계되거나 만들어진 품목들에 대한 수출에 관한 지침을 제공

- ① 핵원료물질 및 특수핵분열성물질
- ② 원자로 및 관련 장비

1) 핵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1970년 NPT가 발효된 후 1971년 NPT 제3조 2항의 시행을 위해 '원자력수출국위원회(Nuclear Exporters' Committee)'가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974년 원자력 수출통제의 기본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최초로 실질적인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가 마련되었다. 이 위원회는 초대 의장인 스위스의 쟁거(Claude Zangger) 교수 이름을 따서 '쟁거위원회'라 불리고 있다. 쟁거위원회의 수출통제 품목은 핵물질, 원자로 및 부속장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재처리 시설, 핵 연료 가공시설, 농축시설, 중수 및 관련 생산시설 등이 있으며, 이중사용 품목과 기술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 ③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 ④ 조사후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 및 관련장비, 핵원료 성형가공시설,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시설 및 장비로서 분석기기를 제외한 것과 중수생산(heavy water production)에 사용되는 생산설비
- ⑤ 상기 품목과 관련된 기술 등²⁾

- 1991년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서구권 국가로부터 유입된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1992년 NSG는 관리지침(Guideline) 2(Part II)를 발표하였는데, 관리지침 2는 일반 산업용도 등의 원자력 활동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원자력 활동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물품과 기술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3) 호주그룹(Australia Group : AG) 개요

- 생·화학무기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무기의 제조·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이나 장비, 동·식물 병원균 등이 국가간에 이전(수출입)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
 - AG 참여국들은 매년 정기적 회의와 협의를 통해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장비 등의 수출허가 대상을 ‘공동관리리스트’(CCL)로 만들어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음
- AG는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의 수출 허가절차 규정 등 소정의 이행책임은 개별 가입국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러한 국내적인 수출관리 조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입국에 요구하고 있음
- AG 참여국 모두는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and Toxins Weapons Convention: BWC)과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의 가입국으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방지를 위한 최근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UNSCR 1540)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 AG는 관리지침(Guideline)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 시행근거를 BWC와 CWC에 두고 있으며, CWC의 경우는 강력한 감시·검증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BWC의 경우 감시·검증제도가 취약하여 AG가 보완적 관리수단이 되고 있음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se include: (i) nuclear material; (ii) nuclear reactors and equipment therefor; (iii) non-nuclear material for reactors; (iv) plant and equipment for the reprocessing, enrichment and conversion of nuclear material for fuel fabrication and heavy water production; and (v) technology associated with each of the above item.” NSG의 홈페이지 <http://www.nuclearsuppliersgroup.org/> 참조.

4)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 개요

-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무인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
 - MTCR 주요 참가국들은 미사일선진국이며 공동의 관리지침과 관리품목(Annex)을 만들어 국가 간의 수출허가 사항을 조율하고 있음
- 관리품목 : 유효탑재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이상 되는 미사일, 로켓완성품, 무인비행체 및 관련 기술
 - 특히, 1987년 MTCR 출범 당시 핵무기 운반수단을 관리할 목적으로 미사일에 탑재할 때 소요 되는 핵탄두의 최소 중량을 감안하여 유효탑재중량을 500kg으로 제한
- ‘미사일’(missile)은 원래 “물건을 나르는 도구”라는 뜻으로 전장에서 탄두(핵, 생·화학무기 포함)를 적진에 떨어지도록 운반하는 수단을 의미함
 - 아무리 위력 있는 핵탄두라도 운반수단이 없으면 이를 적진에 가져갈 수 없으므로 원하는 장소 까지 정확하게 운반하는 방법은 인간이 전쟁을 수행해온 이래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해 왔음
 - 유도무기의 일종인 미사일은 유도방식에 따라 장거리 전략미사일에 많이 원용되는 관성유도 방식과 주로 전술 미사일에 사용되는 종속유도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 국제사회에서 규제의 주요 대상은 관성유도방식인 중·장거리 전략(지대지)미사일임
 - 지대지 미사일은 군사목표나 산업시설 및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 등을 주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사거리에 따라 500km 이하의 단거리 전술 미사일과 중거리(500 ~ 5,500km), 장거리(5,500km 이상) 전략 미사일로 분류되는 것이 통례임³⁾
- 이 같은 미사일 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급속도로 발전되었으며 기타 유럽 선진국과 이스라엘 등 일부 제3세계국가에서도 자국의 지형조건,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에 관심을 보여 왔음

3) 학자에 따라서는 사거리 분류를 단거리(SRBM) 799km 이내, 준중거리(MRBM) 800 ~ 2,399km, 중거리(IRBM) 2,400 ~ 5,499km, 대륙간거리(ICBM) 5,500km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손영환·이무성,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741호(98-430, 1998.11.2), p.2.



1.2 최근 국제사회의 수출관리 동향

1) 기술수출의 관리 강화

- IT기술의 발달과 국제적 인력교류의 확대로 기술정보의 이전은 보다 용이해졌으며, 기술이전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함
 - ① 기술자료(매뉴얼, CD, 책자, USB)의 전자적 매체(이메일, 팩스, 전화 등) 또는 그 밖의 수단(우편, 직접 전달 등)을 통한 이전
 - ② 전시회나 연구발표·인력파견·컨설팅 등의 기술지원과 같이 사람을 매개로 일어나는 이전
- 수출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술 이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배경이 조성 된 반면, 물리적 이전이 아닌 무형이전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기술이전 자체를 인지하기는 어려움
 - 이로 인해 수출관리상 ITT⁴⁾(기술의 무형이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으며, 일부 국제수출 관리체제(WA, AG)에서는 ITT 관리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기술이전을 규제
 - 주요 국가들은 ITT 관리의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기술의 존재방식에 대한 정의 명시, 전략물자 유형 명확화, 기술의 이전시점 명확화, 관리제외 기술의 근거 명시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중

2) 확산우려국 제재 강화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유엔안보리결의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SCR) 1695호와 1718호를 시작으로 2009년 결의 1874호까지 일련의 對北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수출관리 대상 품목 및 경제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그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 한편, 2012년 4월 12일에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여 북한계 은행 1곳과 무역회사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
- UNSCR 1695 : 2006년 7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06년 7월 15일에 UNSCR 1695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의

4)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기술의 무형이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북한에 6자회담, NPT(Non Proliferation Treaty) 및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회원국에 미사일 및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관련 품목의 대북 이전 및 조달에 유의하고 방지할 것을 요구

- UNSCR 1718 :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함경도 화대에서 지하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2006년 10월 14일 UNSCR 1718을 채택해 이를 규탄하는 한편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WMD 및 탄도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때부터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 부과
- UNSCR 1874 : 북한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를 발사하자 유엔안보리는 이를 UNSCR 1718 위반으로 규정하고 14일 의장성명(9)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2009년 5월 25일 2차 지하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역시 이어진 6월 13일 UNSCR 1874를 채택하여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확대 등 대북제재 수위를 높임

☐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06년 UN 안보리결의 1686과 UNSCR 1737을 시작으로 '07년 UNSCR 1747, '08년 UNSCR 1803, UNSCR 1835, UNSCR 1929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수출관리 대상 품목 및 경제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그 제재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 UNSCR 1696 : '03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 이란에서 농축시설 및 중수생산 연구로 건설이 진행 중임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05년 8월 강경보수파인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가 이란 대통령이 육불화 우라늄 제조시설인 이스파한(Isfahan) 우라늄 변환공장의 봉인을 제거하고 우라늄 농축을 강행함에 따라 IAEA는 2월 개최된 특별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채택
- UNSCR 1737 : 이란이 UNSCR 1696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안보리는 '06년 12월 UNSCR 1737을 채택하였으며 60일의 기한 내에 이란에 핵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
 - 특히 UNSCR 1737에서는 본격적인 對이란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시작되었으며 금수품목, 최종 사용자 제재(여행금지, 자산동결) 등을 채택
- UNSCR 1747 : '07년 3월 24일, 이란이 아무런 진전 없이 기한을 넘기자 안보리는 UNSCR 1747을 채택하여 다시 60일의 기한 내에 이란이 핵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제재품목의 범위를 확대



하는 한편, 제재대상자 역시 추가 지정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음

- UNSCR 1803 : '08년 3월 3일, UNSCR 1803을 채택하여 이란에 대해 농축·재처리 관련 활동과 Arak 중수로 건설 중단을 재촉하였고, 아울러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란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할 것과 이란 입출항 항공기,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촉구하였으며 제재 대상자를 추가 지정(기업 12개, 개인 18명)
- UNSCR 1835 : '08년 9월 28일 안보리는 UNSCR 1835를 채택하였고, 기존의 결의들을 재확인 하면서 이에 대한 이란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지는 않았음
- UNSCR 1929 : '10년 6월 일 안보리는 이란의 지속적 핵 개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기존 제재 결의를 확대·강화한 대이란 제재결의 UNSCR 제1929호를 채택하였다. 기존 제재규정을 금융, 무역, 운송분야의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

1.1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

-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도입
 - 2003년부터는 상황허가 제도(Catch-all)⁵⁾를 시행하고,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 환적 ·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ITT) 등에 대한 제도도 운영
- 전략물자 담당기관 : 품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

〈 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 〉

품목 구분	관련법령		담당부처(허가기관)
일반산업용 품목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지식경제부
일반 방산물자			
주요 방산물자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원자력전용 품목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북 반출입물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통일부

2.2 수출관리품목

- 지정기준 :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에 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는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은 WA에서 지정한 군용물자품목으로 구성

5) 상황허가(Catch-all)제도란 수출품목이 관리목록에는 없는 품목이나 우려용도로 전용될 것을 알았거나(Know), 의심되는 경우(Suspect)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Inform)에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관리리스트 구성 체계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 : 통제번호의 기본 체계는 다섯 자리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숫자는 범주, 두 번째 영문은 제품그룹, 나머지 3단위 숫자는 통제체제를 의미

〈 수출통제품목 통제번호 체계 〉

범주	제품그룹	통제체제
1 :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A : 제품	000 ~ 099 : 바세나르체제
2 : 소재가공	B : 생산 및 테스트 장비	100 ~ 199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3 : 전자	C : 소재	200 ~ 299 : 핵공급국그룹
4 : 컴퓨터	D : 소프트웨어	300 ~ 399 : 호주그룹
5 : 통신 및 정보보안	E : 기술	400 ~ 499 : 화학무기금지협약
6 : 센서 및 레이저		900 ~ 999 : 독자통제
7 : 항법 및 항공전자		
8 : 해양, 조선		
9 : 미사일 추진장치, 우주		
0 : 원자력 전용품목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의 군용물자 : 크게 22종으로 구분되며, 총기류, 대포류, 탄약 및 신관장치, 군전용으로 설계된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기타 폭발장치와 관련 장비 및 부속품 등으로 구성
 -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되는 방산물자와는 다른 개념이나 대부분이 방산물자를 포괄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의 군용물자 :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되는 방산물자와는 다른 개념이나 대부분의 방산물자를 포괄

▶ 국제체제별 주요 관리품목

- WA 관리품목 : 분야별 이중용도품목 리스트(Dual-use list)와 군용물자품목 리스트(Munition list)로 구성
 - 이중용도 품목 : 재래식 무기의 개발 · 제조 · 이용을 위한 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 추진장치 등
 - 군용물자품목 : 폭탄, 탱크, 항공기, 군함, 총기 및 그와 관련 기술 등을 포함

〈 WA 이중용도물자 및 군용물자 〉

구 분		주요 관리물자
이중용도 물자리스트	Category 1 신소재	알루미늄 파이프, 티타늄 튜브 등 금속 합금, 텅스텐 분말, 알루미늄 분말, 탄소섬유 등
	Category 2 소재가공	베어링, CNC 선반, 밀링머신, 연삭기, 방전가공기, 표면증착장비, 치수 측정기, 로봇, 유동성형기 등
	Category 3 전자	집적회로, 반도체웨이퍼, 축전지, 리튬전지, 신호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주파수변환기, 반도체 장비 등
	Category 4 컴퓨터	컴퓨터 및 부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장비 등
	Category 5 통신/정보보안	네트워크 서버, 통신장비, 무선영상수신장비, 교환기, 광통신케이블, 정보보안장비, 집적회로 등
	Category 6 센서 및 레이저	수심측량기, 지층탐사기, 음향송수신기, 광센서, 열화상카메라, 지층탐사 장비, 레이더 시스템 등
	Category 7 항법/항공전자	가속도계, 위성항법시스템, 관성시스템, 자이로스코프, 진동장비, 항해 장비 등
	Category 8 해양기술	잠수정, 수상선, 수중카메라, 수중로봇, 수중관측시스템, 추진 프로펠러, 펌프제트 추진시스템 등
	Category 9 항공/추진장치	가스터빈엔진, 터보엔진, 진동시험장비, 로켓엔진, 무인항공기, 우주발사체, 로켓 등
	Sensitive List	Category 1-9의 물자 중 중요도가 높은 민감물자
	Very Sensitive List	Category 1-9중 물자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초민감물자
군용물자 리스트	Item 1 ~ 22	활강무기, 탄약, 신관장치, 군용차량, 생화학 독성작용제, 최루가스, 방사성물질,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무인항공기, 항공기엔진, 군용 영상장비 등

● NSG 관리품목 : 이중용도 품목과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구성

- 이중용도 품목 : 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 소재(알루미늄 합금 등),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펌프 등), 핵무기 기폭 및 측정장치 등
- 원자력 전용품목 : 핵물질, 원자로, 중수 생산시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

● MTCR 관리품목 : Cat I (WMD 운반 가능한 미사일 및 관련 기술)과 Cat II (Cat I 구성품인 이중용도 물자)로 구성



- Cat I : 완성로켓시스템(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무인항공시스템(순항미사일)이 있으며 사거리 300km이상, 탑재중량 500kg이상인 것이 관리대상이고,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제조설비 포함) 수출 허가 시 수입국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 Cat II : 완성로켓시스템 및 무인항공시스템(사거리 300km이상, 탑재중량 500kg미만), 터보제트 엔진, 추진제, 항법장치, 비행제어, 환경 챔버, 레이더 등
- AG 관리품목 : 화학작용제 및 전구체, 생물작용제(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식물성 병원균 및 동물성 병원균, 이중용도 화학제조 시설, 장비 및 기술(열교환기, 증류탑, 펌프 등), 이중용도 생물장비 및 관련기술(발효조, 동결건조기 등) 등

3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3.1 전략물자 판정

- 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기초적이며 핵심절차임
 -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방법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판정하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판정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신청하여 판정하는 '사전판정'으로 구분
 - 수출 품목에 대한 기술적 사양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기 판정된 품목의 경우(통제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자가판정이 유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같은 판정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략물자에 해당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에 의거 수출 시에 수출허가를 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함
 - 비해당으로 판정된 경우는 수출 시에 상황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필요(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9조)
 - 또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상의 거래상대방의 우려대상자(Denial List) 여부도 확인 필요

■ 자가판정

- 자가판정 : 물품 등의 제조자 또는 무역거래자 스스로 사전에 취급물품 및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자가판정 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상의 자가판정시스템은 HS 코드와 통제번호를 연계한 'HS 연계표', 품목키워드와 통제번호를 연계한 '품목키워드 연계표' 등을 활용하여 업체가 자가판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먼저 판정에 필요한 근거자료(품목의 기술사양서, 카달로그 등)를 준비하고 Yestrade 홈 >> 산업용 판정/허가 >> 자가판정 메뉴를 선택하여 HS번호 또는 품목키워드를 통하여 관련 통제번호를 확인
 - 기존에 통제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제번호추가'를 이용하여 판정 가능
 - 동일(유사)품목은 기존의 판정사례를 참고하여 자가판정하는 것도 가능



■ 사전판정

- 사전판정 : 물품 등의 제조자 또는 무역거래자가 취급물품 및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신청하고 이를 판정기관이 판정하는 방법
- 판정기관 : 품목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전문기관이 구분됨
 - 일반산업용 품목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 전략물자관리원
 - 일반 방산물자 : 전략물자관리원
 - 주요 방산물자 : 방위사업청 품목통제담당관
 - 원자력전용 품목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대북 반출입물자 : 전략물자관리원
-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2년이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0조에 의거하여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
 -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
- 전략기술 사전판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즉,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의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으로 한정

3.2 전략물자 수출허가

-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전략물자)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필요
 - 전략물자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8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의미
- 상황허가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필요

● 전략물자 허가기관 : 품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

〈 수출허가 기관 및 소관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5) 〉

구 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고
산업용전략물자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제1부 ~ 제9부 · 상황허가	· 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 에는 해당 전략물 자의 수출 허가기 관이 수출허가를 담당
일반방산물자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일반방산물자 및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 기술을 제외한 기술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	
군용전략물자	방위사업청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른 일반 방산물자 제외)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 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	

※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에서 반출허가

☐ 개별수출허가

- 정의 :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의미
- 유효기간 :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 다만,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 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변경 가능



▶ 포괄수출허가

- 정의 : 관련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의미
 -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음
- 포괄수출허가 종류 : 일반포괄수출허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
 - 일반포괄수출허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품목 수출에 대한 허가
 - 특정포괄수출허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나”지역을 목적지로 하고 동일 상대방과 동일 물품의 반복적인 수출에 대한 허가
- 유효기간 : 일반포괄수출허가는 3년, 특정포괄수출허가는 2년

▶ 상황허가

- 정의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관련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 필요

〈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상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 〉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 등이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상의 특별조치 관련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로서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게시된 자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

☐ 중개허가 및 경유·환적허가

- 중개허가 : 관련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 하고자 할 경우 허가하는 것을 의미
- 경유·환적허가 : 관련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 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경우 허가하는 것을 의미

3.3 허가 면제조항 및 처벌

☐ 허가 면제조항

-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8조(개별수출허가)에 따른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를 면제
 - 수출 후 7일 이내 수출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 필요



〈 수출허가 면제(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 〉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포함)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후 전략물자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7.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과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로서 수출가액이 미화 3천불 이하인 경우(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으로 수출되는 경우, 동일 수입자와의 연간거래가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4의 “2B001”(공작기계와 전용설계된 부품), “2B201”(공작기계와 그 부품), “2B350”(화학물질 제조설비, 장비 및 부품)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나”지역을 경유할 경우 제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9.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암호화품목 등(5A002.a, 1, 2, 5, 6, 9, 5B002, 5D002, 5E002)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 또는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민간 최종사용자의 내부개발 또는 생산 용도에 한하며,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지역 수출시 또는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시 최종사용자가 해외 본사 또는 현지법인(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민감·초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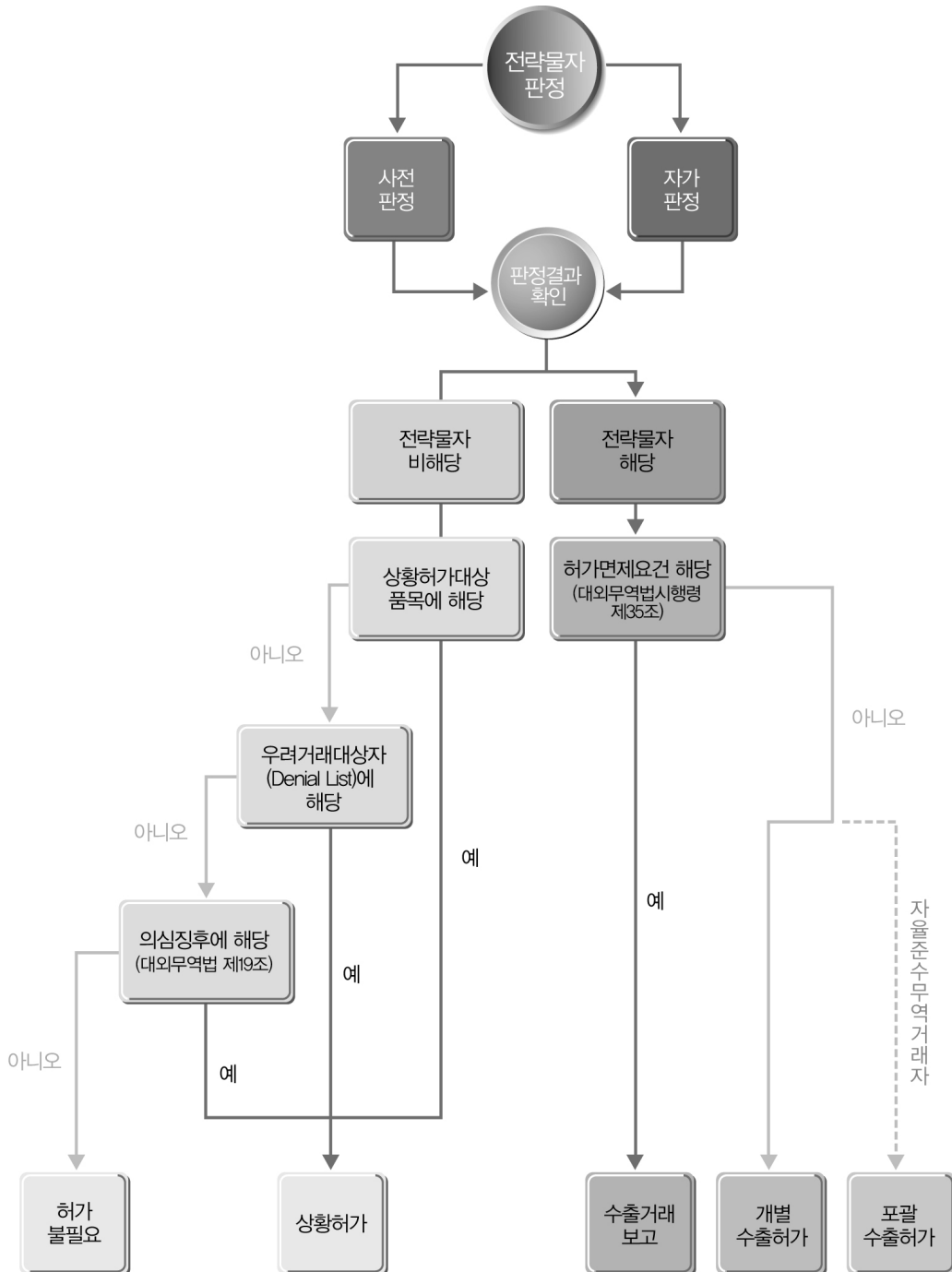
- 형사처벌 :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하거나 제도를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에 의거하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형이 부과
- 행정처분 : 형사벌과 별개로 전략물자 수출입이 최장 3년간 금지 가능

〈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위반시 처벌 〉

구 분	조항	조치 내용	위반 내용
형사처벌	대외무역법 제53조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 5배 이하 벌금	·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출 혹은 중개한 자
	대외무역법 제53조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배 이하 벌금	· 허가 없이 수출 혹은 중개한 자 · 거짓으로 수출 또는 중개 허가 받은자
	대외무역법 제5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고 면제 또는 수출입한 자
	대외무역법 제59조②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보관의무 위반자
행정처분	대외무역법 제31조①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없이 수출 ·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입 질서 위반자
교육명령	대외무역법 제49조	교육명령을 부과	·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없이 수출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 전략물자 수출허가 확인 절차 〉



4 자율준수 무역거래 제도

4.1 자율준수체제의 개념

-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수출관리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거래심사, 교육, 감사 등의 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
- 일반적으로 영업부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출물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법령상 수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의 내부관리 체제

4.2 자율준수체제 운영 필요성

- 전략물자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게 된다면 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손실 가능
 - 전략물자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이란, 파키스탄 등 우려국과 거래하거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상황허가가 필요하므로 수출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 내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법규를 준수해야함
 - 최근 사법당국을 통해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 우수기업들도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로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이행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대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중견 이상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전체 공급망 관리차원에서 해외의 거래상대방에게도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거래조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선진국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신규 거래를 수주하는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 가능
- 마지막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무역규범으로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완수라는 측면에서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스스로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



4.3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제도

■ 개요

-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의거하여 사내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 중에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특정능력을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
- 2004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2년 6월까지 지정받은 기업수는 총 160개사이며, 주요 지정업체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 수출업체 및 삼성물산, SK네트웍스 등 무역업체와 최근에는 쉵커코리아 등 물류업체들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는 등 제조, 무역,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율준수체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정업체 특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 자격,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수출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
- 포괄수출허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 제1호에 의거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에 한해 부여되는데 수출지역에 따라 일반포괄수출허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으로 수출)와 특정포괄수출허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나'지역으로 수출)로 구분
 - 포괄수출허가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 가능
- 허가 면제 및 서류제출 면제
 - 일부의 경우 본지사간 거래에 대한 허가면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 서류제출 면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
 - 포괄수출허가 신청시 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수하인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 면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

- 처리기간 단축 : 일부의 경우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에서 10일로 단축(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
- 이러한 제도적 혜택 외에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략물자 자율준수 우수업체로서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무역의 날 포상 관련 가산점 부여 등의 특례도 가능

■ 신청 절차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은 아래와 같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13호)
 - ② 사내 자율수출관리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8조 제1항)
 - ③ 회사소개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14호)
 - ④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 지식경제부는 신청 기업에 대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 구비 등 아래와 같은 자율준수무역 거래자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
 - ①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 ②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및 사용용도 파악 능력
 - ③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 능력
 - ④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4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

- 기업이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규정, 거래심사, 화물관리, 감사, 교육,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문서관리, 벌칙 등 총 9가지 필수요소를 갖추어야 함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7에서는 이러한 9개 필수요소를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을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기업은 내부적 환경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는 체제를 구축 가능



❏ 조직

-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수행하는 내부 운영조직을 자율수출관리기구라고 하며,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① 자율수출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② 별도의 자율수출관리 전담부서(자)를 설립하여 기구를 운영하는 형태가 있으며 ③ 통관팀, 출하팀 등 수출입 관련부서(자)가 겸임하여 기구를 운영하는 등의 형태가 있음
 - 단, 자사 영업행위와 독립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시 최고책임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함
-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확인, 거래 심사 및 승인, 수출허가 신청, 감사, 교육,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의 지도, 보고, 조사 등 사내 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전방위적인 업무를 담당
 -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은 부서 간 업무분장 내역을 조율하고, 필요시 관련부서에 대한 지원 명령 및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필요

❏ 규정

- 기업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 자율수출관리기구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수적임
 - 규정의 명칭이나 서식은 기업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 58조에 의거하여 ①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②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 통보 및 수출심사 절차, ③ 화물관리, ④ 감사, ⑤ 교육, ⑥ 문서관리, ⑦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⑧ 보고, ⑨ 벌칙의 9가지 사항은 반드시 규정에 반영 필요

❏ 거래심사

- 거래심사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의무 이행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자율준수체제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임
 - 거래심사는 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② 상황허가 대상여부 확인, ③ 거래상대방 및 최종 용도 확인, ④ 허가신청으로 구성됨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 판정 : 전략물자를 자율관리함에 있어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가 취급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일
 - 판정 방법 : 무역거래자⁶⁾가 스스로 하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사전판정으로 구성
 - 전략물자 판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목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 뒤 진행해야 함

❏ 상황허가 대상여부 확인

-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함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에서는 상황허가의 요건을 의심징후(Red Flag)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 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서 해당 의심징후를 포착하였다면, 반드시 수출허가기관에 상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전 협의해야 함

❏ 거래상대방 및 최종용도 확인

-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이거나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의심징후를 발견한 경우, 기업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격성여부 확인과 수출하는 품목의 최종용도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수출허가 신청여부 및 거래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허가신청

- 기업은 위와 같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거래심사를 통해 허가대상 여부인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
 - 수출허가의 신청은 사내 자율수출관리기구 상의 전략물자 관리 총괄부서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사적인 전략물자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바람직함

6)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 제3호)



화물관리

- 제조·무역업체는 출하단계에서의 관리를 의미하며, 운송·창고업체 등 물류업체는 선적, 내륙·해상 운송, 보관 및 입출고단계에서의 관리를 의미
- 화물관리 부서는 품목과 서류의 일치여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인지 여부 그리고 허가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최종 점검해야 하며, 미진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절차를 정지시키고, 사내 자율수출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조치 필요
- 또한, 운송·보관 중 손상이나 도난 등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화주에 통지하고, 전략물자 등 민감한 화물일 경우 정부 관련부처에 신고 필요

교육

- 적절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서는 자율준수체제 구축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인식제고, 국내외 수출관리 동향 및 관련 법령 개정 동향 인지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은 전략물자 관리 총괄부서의 주도 하에 교육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 목적에 따라 교육 내용, 교육 대상, 실시 책임자, 일정 등을 제도화하고 적절한 강사 육성과 교재 작성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 효율적인 교육 수행을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연계를 통해 e-교육관 활용이나 강사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 사원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강사 양성도 필요
- 또한, 사무국이나 전담부서의 담당자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각종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지식을 습득 가능함.
- 자율준수기업은 교육 수행 후 교육 내용과 그 결과를 관리해야하며 특히, 교육 수료 후 이해도 및 교육 실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테스트나 의견 교환은 반드시 필요
- 교육 실시에 관한 수강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이를 통해 어느 부문의 누가 교육을 받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함

7)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일정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www.kosti.or.kr)이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e-교육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감사

- 기업은 자율준수 관련업무가 전반적으로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되는지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확인 필요
 - 확인결과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선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과 대응책을 지시
- 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자를 지정하고, 감사자는 감사항목과 감사방법을 계획
 - 전략물자 수출관리 최고책임자는 감사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게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최대한 지원 필요
- 감사의 객관적인 기준은 사내 자율수출관리규정(운영세칙 등 포함)에 근거한 적절한 실시 여부임
 - 주요 감사항목으로 관련자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및 사내규정의 이해도, 문서화된 규정에 따른 수출관리절차의 준수도, 기록보관 상태 등으로 해당 직무에 맞는 감사항목을 규정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
 - 이때 체크리스트는 사내 수출관리 규정 및 사내 매뉴얼에 준해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거래 심사 및 수출허가 이행여부 등 특별 중점 감사항목을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대상 부문 별로 중점항목을 정해서 감사를 실시

■ 자회사 관리

- 자회사 및 관련회사(이하 '자회사 등')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으나, 자회사 등이 수출관리 위반할 경우 모회사에 간접적인 경영상의 손실은 물론 모회사 및 모회사와 관련된 기타 자회사의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모회사는 자회사 등의 수출관리 책임이 결국 모회사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든 자회사가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 필요
- 모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관리는 국내와 해외의 경우로 구분 가능
 - 먼저, 국내 자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행 방법에 대해 주지시키는 교육은 반드시 실시



- 자회사 등에 대해 자율준수체제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자율관리규정을 감안한 자회사용 표준 자율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자회사에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도를 실시
- 자율준수체제가 구축된 자회사 등으로부터는 정기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조사한 뒤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지도를 실시
- 판정정보 및 최종사용자 정보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자회사 등이 실효적인 거래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서관리

- 수출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서류를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관련 문서는 유사시 해당 기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가 되므로 필수 보관서류는 반드시 물품 수출일 또는 기술 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유사시 기업의 관리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여타 선택 보관서류도 동일한 기간 동안 보관 필요
- 전략물자 관리 총괄부서는 구매에서 출하, 통관에 이르는 일련의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작성하고 제출하는 관련 문서 중 보관대상 문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기간, 보존 및 열람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문서는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보존이 용이하도록 전자파일과 같은 기록매체를 통하여 별도 관리 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서류에 대한 열람방법 및 대상에 대한 관리도 동시에 고려 필요

☐ 벌칙

- 자율준수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분명한 처벌 필요
 - 따라서 자율수출관리규정에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야 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내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조치 필요
 - 이러한 처벌 규정 이외에도 기업은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필요
 - 보고체계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미리 보고대상 등을 정해두어야 하며, 대외무역법 등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정부부처와의 보고체계도 필요

- 만일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위반사실이 발견 된 경우 관계자는 신속하게 전담부서에 보고하여 신속한 조치 필요
- 전담부서는 위반 사실의 유무, 경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게 취해야 할 조치를 지시함과 아울러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사실이 판명된 경우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

〈 자율준수체제 9대 운영요소 〉

조직	사내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자율수출 관리기구 구성
규정	자율수출관리기구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규정 제정
거래심사	판정, 상황허가, 거래상대방, 최소용도파악, 허가신청
출하관리	출하, 선적, 내륙, 해상운송, 보관, 입출고 관리
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제도변경 등 동향인지
감사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점검 및 문제점 개선
자회사 등 관리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 및 관련회사의 수출통제 교육, 지도
문서관리	대외무역법령 상 전략물자 관련서류 5년간 보관
벌칙	자율준수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위반 시 처벌



2. 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사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법령

법률	시행령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제32조(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2]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법 률	시행령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受荷人)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 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 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 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이에 준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35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하되,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 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법 률	시행령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

해 설

-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전략물자)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8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 또한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란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한다.
- 시행령 제32조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iological and Toxins Weapons Convention)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는 수출통제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거래부적격자에게 전략물자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품목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관리 소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산업용 품목(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 일반 방산물자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주요 방산물자 : 방위사업청 품목통제담당관
 - 원자력전용 품목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대북 반출입물자 : 통일부 남북경협과
-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다.
- 다만,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 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유권해석

Q1.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제한의 경우는?

Question
질의

CCTV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제한(규제)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출제한(규제) 경우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소관부서는 어디인가요?

Answer
답변

대외무역법 상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지역으로의 수출 제한 :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으로 문의
2. 농축산물 및 자연물의 수출제한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문의
3. 전략물자의 사전 수출허가 :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으로 문의

또한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88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하며, 수출 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Why
이유

1. 분쟁지역으로의 수출 제한

■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 및 제11조에 따라 국제 사회의 평화유지 및 안전 이행을 위해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국제 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고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 고시에 대해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국가로는 현재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코트디브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에리트리아, 레바논, 리비아 등 분쟁 지역입니다.

2. 농축산물, 자연물의 수출제한

■ 대외무역법 제5조제5호 및 제11조에 따라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고래고기, 사과 및 자연석 등 농축산물이 주로 해당됩니다.



Why
이유

3. 전략물자의 사전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WMD 개발 등 국제평화를 해칠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고사양 품목(이하 전략물자)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하며, 이를 전략물자 수출허가라고 합니다.

■ 그 세부 내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8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조(용어의 정의)>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 또한 허가 유형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및 경유·환적허가로 구분됩니다.

Q 2. 전략물자에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Question
질의

세관에서 수출통관시 전략물자 비해당 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전략물자에는 어떤 품목이 있나요?

Answer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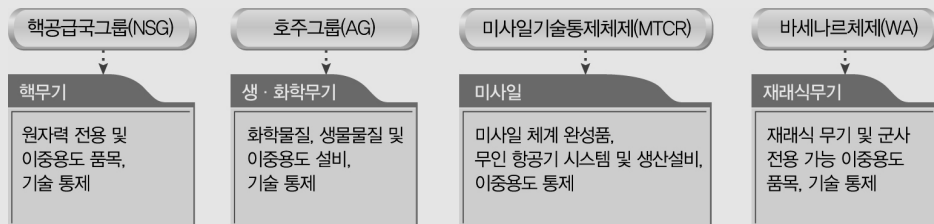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88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란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합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재래식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한 전용품목 및 산업용품목(이중용도품목)입니다.

〈 다자간국제 수출통제체제 〉



■ 즉,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SW를 의미합니다.

■ 또한 전략물자는 무기류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재, 생화학, 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Why
이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관리품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	제1부 : 소재(금속, 세라믹),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제2부 : 소재가공(기계) 제3부 : 전자 제4부 : 컴퓨터 제5부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제6부 : 센서 및 레이저 제7부 : 항법 및 항공전자 제8부 : 해양 제9부 : 추진장치, 우주비행체 및 관련장비 제10부 : 원자력 전용품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	군용물자품목



전략물자 예시



펌프(2B350.i)

내화학성 소재로, 최대유량
0.6m³/h 초과 (진공펌프의 경우
0.5m³/h) [화학무기 제조]



NC 선반(2B001.a)

정밀도 6μm, 2축 이상 동시제어
[핵무기 부품 가공 가능]



밸브(2B350.g)

접액부가 내화학성 소재로,
호칭치수 10mm 초과
[화학무기 제조]



탄소섬유(1C010.b)

비탄성률 12.7x10³m, 비인장강도
23.5x10³m [로켓 및 전투기의 동체,
원심분리기 로터 제작용 소재]



열화상카메라(6A002.a.3)

사용 파장대역 8,000nm ~
14,000nm [군사용 야간투시경
으로 사용 가능]



건조에칭장비(3B001.c)

식각 가능한 최소선폭 180nm
이하 [고정밀 집적회로 제작]



발효조(2B352.b)

용량 20ℓ 이상
[생물무기 대량생산]



3차원 측정기(2B006.a)

정밀도 (1.7+L/1000)μm 이하
[핵무기 등의 부품 측정]

Q 3.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무엇인가?

Question
질의

전략물자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Answer
답변

9.11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UN은 안보리결의 1540호('04.4)를 통해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국제 규범화하고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수출관리체제에서 수출관리 원칙과 관리품목을 결정하고, 회원국은 이를 자국법에 반영하여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에 의거하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에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2조(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Q 4.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Question
질의

취급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받고 수출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무엇인가요?

Answer
답변

지식경제부에서는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허가, 상황허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제2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8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 제22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 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5.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Question
질의

전략물자는 수출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답변

무역거래자는 먼저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 후 수출허가(개별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등) 대상인지 확인하고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관은 품목에 따라 달리 운영됩니다.

Why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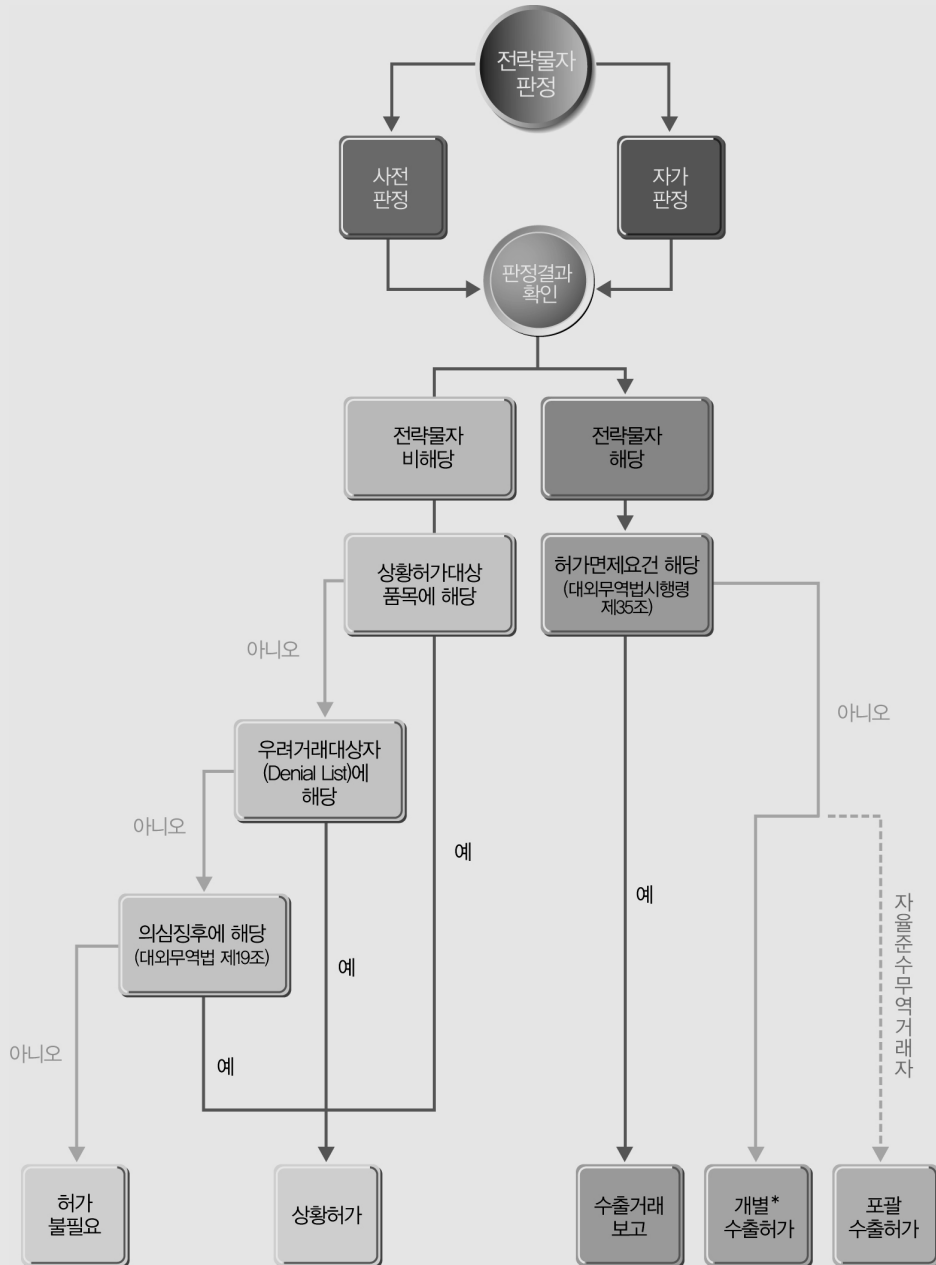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품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르며, 품목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품목 구분	관련법령	소관부처(허가기관)
일반산업용 품목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대외무역법	지식경제부
일반 방산물자		
주요 방산물자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
원자력전용 품목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대북 반출입물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Why
이유

■ 또한 자세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확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제3국에서 제3국으로 중개할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6. 수출 후 사후허가를 받아도 되는가?

Question
질의

납기일이 다급해서 일단 전략물자를 수출하고, 그 후에 수출허가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매 수출 건마다 사전허가 받는 것이 원칙이며, 허가가 필요한 건에 대하여 사전허가 없이 수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제19조에서 수출허가의 개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매 수출 건마다 사전허가 받는 것이 원칙이며, 허가가 필요한 건에 대하여 사전허가 없이 수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 7. 수출허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uestion
질의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허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가의 종류 및 허가 대상 물품은 무엇입니까?

Answer
답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조에 의거하여, 허가는 ①수출허가(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②중개허가, ③상황허가, ④경유·환적허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합니다. 또한, 허가별 신청자격 및 대상품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허가종류	수출허가			중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개별	일반포괄	특정포괄			
신청자격	누구나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누구나	누구나	운송사업자
수 출 품	전략물자	전략물자	전략물자	전략물자	非 전략물자	전략물자, 상황허가 품목
신청기준	계약 건별	수출계획	수출계획	계약 건별	계약 건별	계약 건별
허가 유효기간	1년	3년	2년	1년	1년	1년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허가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 상황허가 및 경유·환적허가로 구분한다.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Q 8. 전략물자 비해당인 경우 허가 없이 수출해도 되는지?

Question
질의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외 다른 이행사항 없이 수출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답변

수출품목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부적격자와 거래하는 경우, 또는 지정된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기타 이상징후가 있다면 사전허가를 받고 수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상황허가라고 부릅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제19조3항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외무역법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는 14가지 항목이 있으며,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게서 확인해야 하는 의심징후 및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Why
이유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 등이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상의 특별조치 관련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로서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게시된 자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

■ 따라서, 취급품목이 전략물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황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상황허가를 득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Q 9. 우려거래자의 정의 및 확인하는 방법은?

Question
질의

상황허가 대상 중 우려거래자는 누구이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nswer
답변

상황허가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황허가의 대상이 되는 우려거래자는 UN(국제연합)에서 WMD 확산 등의 사유로 지정한 개인·기업 등을 말하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에서 다음과 같이 상황허가 대상 및 우려거래자 확인 방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3.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 등이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상의 특별조치 관련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 조치에 따른다.)로서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게시된 자



Q10.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Question
질의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답변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2.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사전판정서 제출 시 면제)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사전판정서 제출 시 면제)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리품목 중 3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
5. 수출자 서약서 1부
6.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7.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 및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에서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면제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Q 11. 전략기술만을 수출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Question
질의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Answer
답변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전체 (계약서, 수출자서약서,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2. 기술수출계약서안(국·영문) 1부
3. 전략물자수출허가 기술 명세서 1부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2항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2. 기술수출계약서안(국·영문) 1부
3.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수출허가 기술 명세서 1부



Q12. 수출지역 구분의 기준은?

Question
질의

수출허가 시 수출지역을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출지역 구분 중 “가”지역 국가는 대체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들의 그룹이며, “가”지역 이외의 국가는 “나”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지역이라 하더라도 “나”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Why
이유

■ “가”지역 국가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에 모두 가입한 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29개국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지역 이외의 국가를 “나”지역 국가라 하고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기업들이 “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를 면제하고 수출허가 처리 기간도 단축하는 등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허가를 받도록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Q 13. 나지역을 경유하여 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Question
질의

중국(나지역)을 경유하여 최종목적지인 미국(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답변

최종목적지가 “가”지역이라 하더라도 “나”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나”지역을 기준으로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이며, “나”지역을 기준으로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제2조에 의거하여,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지역이라 하더라도 “나”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수출허가 처리기간 및 신청서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 제23조(수출허가의 처리)에 의거하여 “나”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14.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Question
질의

이미 전략물자를 수출한 후, 同 전략물자의 운용·설치·보수 등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파견이나 기술자료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nswer
답변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수출(이전)시 예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일반 기술해설(General Technology Note)”에서는 “수출 허가된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통제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에 대해 이미 수출허가를 받으셨다면 그에 따른 설치, 운용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수출(이전)행위 모두에 대해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15. 수출허가 면제 중 당초 수출자의 범위는?

Question
질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A 기업의 한국 지사 B는 A의 수탁판매인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반송하는 경우, 당초 수출자가 아닌 A의 수리/회수센터에 반송하는 것이 수출허가 면제사유로 인정되는 것인가?

Answer
답변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포함)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동 거래의 경우와 같이 A의 수탁판매인이 수출하였다면 수탁판매인이 당초 수출자가 되며, A사가 지정한 수리/회수센터는 당초 수출자에 해당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수출허가의 면제) 5호, 즉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포함)에게 반송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 또한 '당초 수출자'란 물품을 아국으로 수출한 '개인' 혹은 '법인' 자신이며, 관계자나 관계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A의 수탁판매인이 수출하였다면 수탁판매인이 수출자가 되며, A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A사의 수탁판매인이 당초 수출자업체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한 물자를 A로 반송할 때, 동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16.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수출가액은 얼마인가?

Question
질의

한국 창고에 보관 중인 예비 장비(교환요구에 대비)를 타국 지사로 수출하고, 그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Answer
답변

가액(價額)은 물품의 가치를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출신고서 신고가격 등을 가액으로 판단하고 수출허가 면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다음과 같은 수출허가 면제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6조제1항제7호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과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로서 수출가액이 미화 3천불 이하인 경우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으로 수출되는 경우, 동일 수입자와의 연간거래가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액이라 함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거나 매매의 목적으로 주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국세법령시스템 용어사전)
- 따라서 가액(價額)은 물품의 가치를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17. 암호화품목의 수출허가 면제 여부?

Question

질의

바세나르체제 가입국 소재 해외 지사로 암호화품목 등(5A002.a.1,2,5,6,9, 5B002, 5D002, 5E002)을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출허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Answer

답변

최종사용자와 물품의 최종사용용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다음과 같은 수출허가 면제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6조제1항제10호 암호화품목등(5A002.a.1,2,5,6,9, 5B002, 5D002, 5E002)을 별표 6의 "가"지역 또는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민간 최종사용자의 내부개발 또는 생산 용도에 한하며,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동 호는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최종 사용자와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채 해외지사로 수출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8. 부득이한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송 시 수출허가 면제 여부?

Question
질의

해외 고객이 교환을 요구한 물품의 재고가 해당 지역지사에 없어 부득이 그 지사로 예비 장비를 일단 수출하고 향후 다른 지사로부터 수입해 오는 경우 따른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Answer
답변

수입한 전략물자를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더라도 동 거래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지에서 다음과 같은 수출허가 면제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6조제1항제5호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 (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포함)에게 반송하는 경우

■ 동 호는 국내로 수입한 물품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돌려보내는(반송) 경우로서 정상 물품을 해외 사용자가 이용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전략물자의 판정

법령

법률	시행령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① 삭제 <2009.4.22> ②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③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제2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2.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7조(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전문개정 2009.11.2]



해 설

- 판정이란 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판정 방법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전판정’이 있다.
 - 또한 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1항에 의거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전략물자에 비해당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대외무역법 제19조2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9조에 의거하여 상황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즉,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의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으로 한정된다.
- 품목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산업용 품목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 전략물자관리원
 - 일반 방산물자 : 전략물자관리원
 - 주요 방산물자 : 방위사업청 품목통제담당관
 - 원자력전용 품목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대북 반출입물자 : 전략물자관리원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이다.
 -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사전판정 및 자가판정 비교 〉

구 분	자가판정	사전판정
법적효력	자가판정과 사전판정은 동일한 법적효력 * 다만, 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 세관 등에서 전략물자 판정서 요청 시 자가판정서 제출 가능	
판정주체	판정자(해당 업체)	사전판정기관
유효기간	없음	전략물자 : 2년 * 단 통제품목개정시 개정 고시일에 만료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이 없으나 통제품목 개정 시 재판정 필요	판정기간 만료 후 사전판정 재신청
판정소요시간	실시간 확인 가능	15일 이내 * 단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별도의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연장가능
서류보관 의무	자가판정 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 및 등록 시 면제. 그렇지 않을 경우 판정관련 서류 5년간 보관 의무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판정을 할 경우 면제
비고	수출 진행을 위한 기간이 촉박한 경우 법적효력이 동일한 만큼 자가판정을 활용하여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만, 판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법적책임이 있음. 또한 민감품목이나 자가판정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기업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권해석

Q 19.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Question
질의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nswer
답변

전략물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가판정은 물품 등의 제조자 또는 무역거래자 스스로 사전에 취급물품 및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사전판정은 물품 등의 제조자 또는 무역거래자가 취급물품 및 기술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신청하고 이를 판정기관이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 판정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략물자 자가판정 및 사전판정은 전략물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yestrade.go.kr)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정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8조(자가판정) ①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무역거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 20. 전략물자 판정결과의 유효기간은?

Question
질의

고시에 보면 사전판정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판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Answer
답변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자가판정 결과는 그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않지만, 사전판정과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사전판정의 효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①제10조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판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품목에 대한 개정여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1. 전략물자 통제번호의 숫자 및 그 의미는 무엇인가?

Question
질의

전략물자 판정서에 통제번호가 출력되는데, 통제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답변

기본 체계는 다섯자리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숫자는 범주, 두 번째 영문은 제품그룹, 나머지 3단위 숫자는 통제체제를 의미합니다.

범 주	제품그룹	통제체제
1 :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A : 제품	000 ~ 099 : 바세나르체제
2 : 소재가공	B : 생산 및 테스트 장비	100 ~ 199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3 : 전자	C : 소재	200 ~ 299 : 핵공급국그룹
4 : 컴퓨터	D : 소프트웨어	300 ~ 399 : 호주그룹
5 : 통신 및 정보보안	E : 기술	400 ~ 499 : 화학무기금지협약
6 : 센서 및 레이저		900 ~ 999 : 독자통제
7 : 항법 및 항공전자		
8 : 해양, 조선		
9 : 미사일 추진장치, 우주		
0 : 원자력 전용품목		

Why
이유

■ 우리나라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서 통제대상으로 합의한 품목들을 근간으로 하여 수출관리 대상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제수출통제체제는 자체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수출관리 대상품목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보다 쉽게 확인·검색 할 수 있도록 ‘품목군별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2B004의 통제번호를 갖는 열간정수압프레스는 “소재가공 - 생산 및 테스트 장비 -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임을 통제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1C234의 지르코늄화합물은 “재료 - 소재 -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임을 번호 만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Q 22.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은 모두 관리대상인지?

Question
질의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과 관련된 기술은 모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nswer
답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수출(이전)시 예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일반 기술해설(General Technology Note)”에서는 “통제대상이 아니거나 수출 허가된 품목의 설치, 운용, 유지(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에 공개된 정보”, “기초과학연구” 또는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통제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Q 23. 자가판정 시 HSK를 모르는 경우는?

Question
질의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하려고 하는데 HS 코드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답변

H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협약(HS 협약)에 근거하여 21부, 97류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6단위 범위 내에서 10단위로 세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합니다. 또한 HSK코드를 찾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청(<http://call.customs.go.kr>) 또는 관세종합상담센터(전화 : 1577-8577)로 문의
2.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종합무역정보-품목별 수출입요령에서 조회
3. 'HS 통관편람' 책자에서 조회
4. 관세사에 의뢰

Why
이유

■ HSK코드(HSK코드, HSK번호, HS번호, HS세번 이라고도 함)란 통일 상품 분류 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의 준말로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세관에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됩니다.

Q 24.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은?

Question
질의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Answer
답변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이외에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www.yestrade.go.kr)의 운영 업무,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Why
이유

대외무역법제2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및 역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한다.

②전략물자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략물자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전략물자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4.22>

1.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판정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Q 25. 해외 판정기관의 판정결과 효력은?

Question
질의

해외 본사가 현지에서 판정받은 전략물자 판정서를 우리나라에서 세관통관할 때 또는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답변

국가별로 판정할 때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받은 전략물자 판정결과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판정기관에 의한 사전판정 결과 또는 무역거래자 스스로에 의한 자가판정 결과만이 인정됩니다.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장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등에 의거하여 판정의 유형은 자가판정 또는 사전판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등

제8조(자가판정) ①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무역거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2.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전략물자의 수입목적확인서

법령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0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해설

- 수입목적확인서는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 따라서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4조(허가기관)에 따른 전략물자 허가기관과 동일하다.
 - 일반산업용 품목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 일반 방산물자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주요 방산물자 : 방위사업청 품목통제담당관
 - 원자력전용 품목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대북 반출입물자 : 통일부 남북경협과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46조(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 이내이다.

유권해석

Q 26. 수입목적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Question
질의

국내에서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에 대하여 해외 거래상대방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답변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수입목적확인서 발행 등을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의 거래상대방이 영문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yestrade.go.kr 접속 → 영문 클릭 → 『Verify Certificate』 아이콘 클릭

Why
이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동일 웹사이트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략물자의 중개

법 령

법 률	시행령
제24조(전략물자의 중개) 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 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 물자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4.22> ②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중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전략물자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지식 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들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2.29> 제41조의2(전략물자의 중개허가의 면제) 법 제24조제 1항 단서에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

법 률	시행령
	[본조신설 2009.11.2] 제42조(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 2. 해당 물품등의 중개가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해당 물품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용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해 설

-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전략물자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때
 - 또는 해당 중개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 참고로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 가 지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
 - 나 지역 : 제1호 이외의 국가



유권해석

Q 27. 중개무역 시 허가가 필요한가?

Question
질의

해외 업체들의 무역을 중개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답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는 경우 중개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개허가 대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제2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전략물자의 중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4조(전략물자의 중개) 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42조에서 다음과 같이 중개허가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중개허가의 대상)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해당 중개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 따라서 전략물자를 중개하려는 자는 중개무역의 개념을 확인하고 중개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중개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Q 28. 중계무역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질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중계무역”의 경우 어떤 수출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거쳐 수출될 수도 있고, 제 3국에서 제3국으로 바로 운송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답변

수입한 중계무역 역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가목, 나목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3호와 제11호) 전략물자를 중계무역 하실 때에는 ‘수출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또한 전략 물자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제3국으로 바로 운송하는 중계무역도 마찬가지로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Why

이유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따라 중계무역은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Why
이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 제2조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 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14. "무환수출입"이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5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법령

법률	시행령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락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락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락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락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락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락물자를 중개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전락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3.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율적인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및 조직도 3. 그 밖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4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법 제19조에 따른 전락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출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전락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법 률	시행령
7. 삭제 <2009.4.22>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

해 설

-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전략물자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 또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무역거래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의 부여
 2.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중 일부 서류를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이 가능하며, 또한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서류제출 면제
 3. 최종사용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해외 본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일부 서류 면제
 4.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신청시 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수하인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 면제
 5.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시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유권해석

Q 29.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 시 혜택은?

Question
질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수출허가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답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 부여
2.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제출 면제
3. 포괄수출허가 신청시 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수하인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 면제
4.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시 또는 수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 제23조의 수출허가 처리 기간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다만, 원자력전용품목 · 군용물자품목은 제외)

Why
이유

■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관계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합니다.

■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1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Q 30. 포괄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Question 질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 포괄수출허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Answer 답변

일반포괄수출허가(가지역으로 수출)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특정포괄수출허가(나지역으로 수출)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2.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4.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5.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Why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1조(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에서 포괄수출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6 벌칙

법령

법률	시행령
제53조(벌칙) ①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8. 삭제 <2010.4.5> 9. 제43조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 전락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피할 목적으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등을 수출한자, 또는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락물자를 중개한 자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등을 수출 또는 중개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를 받은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C**ontents** (첨부)



1. 대외무역관리규정	295
2. 수출입공고	341
3. 통합공고	353
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425
5.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 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453
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469



1. 대외무역관리규정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1호, 2012.10.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화"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을 말한다.
2.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수출입공고를 말한다.
3. 영 제2조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8.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9. "임차수입"이란 임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10. "연계무역"이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의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 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14. "무환수출입"이란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15. "기자재"란 기계, 장치 및 자재를 말한다.
 16. "시설기자재"란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17. "수출유망중소기업"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 따라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18.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19.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 "평균 손모량"이란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손실량 및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한다)의 평균량을 말한다.
 21. "손모율"이란 평균 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22. "단위실량"이란 외화획득용 물품등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을 말한다.
 23. "기준 소요량"이란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고시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4. "단위자율소요량"이란 기준 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물품등 1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5. "소요량"이란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전량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6. "자율소요량계산서"란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해당 기업이 자체 계산한 서류를 말한다.
 27. "사후 관리기관의 장"이란 각종 수출 또는 수입승인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28. "유통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도매업 영위자), 조달청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공급) ①영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②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2.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3.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
4.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③영 제3조제1호차목에서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기통신업
2. 금융 및 보험업
3. 임대업
4. 광고업
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6. 교육 서비스업
7. 보건업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

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2. 음향·음성물
3. 전자서적
4. 데이터베이스

제5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영 제2조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한 후 인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무역 관련 시설의 지정) ①영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무역 관련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및 부속토지의 면적 등 시설계획, 조직, 사업운영 기본 방향 등 향후 2개년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기준과 무역진흥 관련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무역 관련 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무역 관련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삭제

제2장 수출입 거래 총칙

제1절 수출입승인 등

제8조(수출입 승인기관) 영 제91조제7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수출입공고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제9조(수출입승인 물품등) 영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물품등으로 지정·고시한 물품등"이란 수출입공고에서 정한 물품등(다만,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 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조(수출입의 승인 신청 등) ①영 제18조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신청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등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 신청이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지식경제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물품등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입승인의 요건)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수입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수출·수입하려는 물품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등일 것
3. 수출·수입하려는 물품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절할 것

제12조(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의 설정)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물가 안정 또는 수급 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물품등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물품등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등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둘 이상의 승인)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각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두 번째 이후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서상의 여백에 승인 사항을 표시한다.

제14조(수출입대금의 결제) 수출·수입대금(가공임, 임대료 및 임차료를 포함한다)은 외국환거래규정 제 1-2조제14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

제15조(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제16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원산지
2. 도착항(다만, 수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규격
4. 수출입 물품등의 용도(다만, 수출입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승인 조건

제17조(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신청 등) ①수출·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당초 승인을 받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사항 변경승인·신고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은 수출·수입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승인·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 변경승인·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당사자의 변경은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한 것일 것

제18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등) ①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입승인을 받은 후에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사항이 추가된 품목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의 허가 등을 추가로 요하는 품목일 때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수출 물품등의 단가를 인하하거나 수입 물품등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 가.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급거절 등이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출 물품등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 나. 물품등의 성질과 국제거래관행상 승인 시점에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다. 그 밖에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 등 변경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경하려는 내용이 수출신용장, 수출입계약서, 주문서, 물품등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다만, 수출신용장 등에 명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출대상국가의 변경은 수출제한 사유 등을 고려할 때 타국으로 변경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
- ②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수출·수입승인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수출입승인 면제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20조(그 밖에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등의 수입) 영 제19조제3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

제21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 대상 거래의 범위) ①영 제20조제1항의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은 제2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거래 중 영 제2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래(수출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래를 말한다.

1. 제2조제11호의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 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제14호의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을 별표 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2조제3호가목 전단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의 무환 수출. 다만 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은 제외한다.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계무역거래자가 수입대금 지급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절취선 이하 부분을 지정된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특정거래인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래요약서
2.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승인 대상 품목인 경우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타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3조(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의 유효기간)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의 유효기간은 신고수리(인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절 무역업고유번호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계(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 등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의 무역업고유번호를 유지 또는 수출입실적 등의 승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무역업고유번호의 승계 등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한국무역협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무역업고유번호관리대장 또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절 수출·수입실적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②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②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③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한다.

④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 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27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

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수출 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②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③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동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①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①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출입확인서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확인서의 발급현황 등에 관한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1절 외화획득의 범위

제31조(외화획득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 결제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
5.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6.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2조(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외화가득율(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 제31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 보수용 원료

제33조(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①영 제91조제7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유통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34조(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 중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품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입승인 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제35조(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시 확인 등)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기재사항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사후 관리기관(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사후 관리기관)
2.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승인 여부

제36조(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영 제31조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려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한 자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갑)지와 (을)지를 말하며, 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입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제36조의 단서에 따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세금계산서(제36조의 단서에 따라 구매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을 포함한다)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④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 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영 제31조제2항에 규정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이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⑥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전자무역문서로 신청한 자에게 발급사실을 알릴 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 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제38조 (발급신청 대행)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물품등(이하 "원료등"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 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3. 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부터 90류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등인 경우에는 10년

②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간 종료일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유서 1부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원료등으로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시·도지사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와 영 제91조제7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영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농림수산물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등)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은 원료등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는 제3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1조(원료등의 사후 관리의 대상) 제42조에 따른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에 따른 원료등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사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료등
 - 나. 외화획득의 이행을 위하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원료등

제42조(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 중 제34조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정한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제1호에 따른 원료등을 제외한 원료등의 사후 관리는 해당 외화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
3. 제2호에 따른 원료등 중 제43조에 따라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수입(국내구매 또는 양수를 포함한다)한 원료등의 사후 관리는 해당 자율관리기업의 장

제43조(자율관리기업)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 유공으로 포상(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만 해당한다)또는 중견수출기업
 2. 과거 2년간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 ②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기업은 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실적증명서
 2.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의 외화획득의무 성실히 이행확인서(제1항제2호의 사실 확인 내용을 포함한다)
 3. 자율관리규정
 4. 원료등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④제2항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는 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대응 외화획득이행내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술표준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된 기업은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선정될 수 없다.

1. 원료등을 타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원료등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한 때
2. 파산등으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할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44조(사후 관리 대상 원료의 분류 등) 원료등의 사후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 획득 이행의무자별로 원료등의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총량을 대상으로 한다.

1.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원료등의 성질상 같은 품목이거나 유사한 품목은 품명 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총량을 대상으로 관리한다.
2. 의류 및 가방 등의 부재료로 사용되는 지퍼는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양의 총길이를 관리한다.

제45조(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내역 신고) 제41조에 따른 사후 관리대상 품목을 구매한 자는 분기 중에 구매한 원료등의 건별내역을 제44조에 따라 품목분류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구매내역신고서에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사후 관리 카드정리)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구매내역신고서 및 제48조에 따라 신고받은 공급이행신고서를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로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원료등의 구매일 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원료등과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원료등에 대하여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또는 구매한 총량과 금액 등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외화획득 이행신고) ①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한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을 이행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원본
2. 자율소요량계산서

②외화획득 이행신고자와 수출신고필증의 명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 대행계약서 또는 물품등구매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표시된 원료등의 양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후 관리이행 정리 카드에서 차감하여 정리하고 해당 수출신고필증 원본(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원본)의 뒷면에 사후 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공급이행 신고) ①영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 품목을 원료등으로 공급한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 3부(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용,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용 및 인수자용)에 인수자의 날인 또는 물품등수령증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일부터 3월 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한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자율소요량계산서

②제1항에 따라 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47조제3항에 준하여 공급이행 정리하고 내국신용장 등의 원본서류 뒷면에 사후 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③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화획득용 원료 공급이행신고서에 확인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료등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자는 세관장이 발행한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47조제3항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이 사후 관리 대상 기업에 원료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이행신고서 2부를 작성, 공급일부터 3월 이내에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만 알린다.

제49조(사용목적 변경승인) 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료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 4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만기일 이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제4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2. 변경하려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신청하려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등으로는 외화획득 이행물품 등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 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수입 또는 구매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외화획득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제1항에 따라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한 기관의 장은 승인서를 신청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 기관의 장, 신청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50조(양도승인) ①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양도·양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등 양도승인 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제4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수·도계약서
2.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②자율관리기업이 다른 자율관리기업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양도인 및 양수인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승인한 원료 등을 제48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지도감독) 기술표준원장은 시·도지사,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및 자율관리기업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업무담당자의 교육
2. 사후관리대장 정리실태
3. 공급이행신고서 통보실태
4. 미이행 보고실태
5. 그 밖에 제규정 이행실태

제52조(보고)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원료등을 수입 또는 구매한 후 외화획득 이행만기일까지 외화획득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까지 미이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외화획득 미이행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물품등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 이외에 사후 관리 대상 업체의 파산 등으로 사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물품의 보고는 제2항의 단서와 같다.

제53조(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제34조의 물품등을 제외한 분은 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에 따라 보고된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자동 면제하며, 영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54조(기준 소요량 책정방법) ①기준 소요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책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2. 문헌조사
3.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
4.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
5.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②기준 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및 공정도
2. 공정별 손모율·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
3. 원료 등의 배합비율

제55조(기준 소요량의 고시) ①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 중 목재가구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그 밖의 품목은 기술표준원장)은 소관 품목 중 제41조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 원료등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 소요량을 고시할 수 있다.

②제42조에 따른 사후 관리기관 또는 수출업체는 기준 소요량이 고시되지 않은 해당 품목이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는 등 기준 소요량의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기준 소요량 책정자료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기준 소요량 고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시기관은 이를 가능한 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 소요량이 빈번히 바뀌거나 농산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수출 물품등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 중 목재가구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그 밖의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장)은 기준 소요량을 고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외화획득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①영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 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등으로 사용하거나 공급한 업체는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의한 자율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②자율소요량계산서는 단위자율소요량 또는 기준 소요량에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수량을 곱한 물량으로 표시하며 단위자율소요량의 산출근거를 품목 및 규격별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준 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에 소요원료의 품명·규격 및 수량 등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자율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7조(세부절차) ①기준 소요량 고시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해당 외화획득용 물품등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지도감독) 기술표준원장은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기준 소요량을 고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무에 대한 교육
2.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운용실태 조사
3. 자율소요량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제규정 이행실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59조(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이하 "관광용품센타"라 한다)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 물품 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 물품 공급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선용품
3.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제60조(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제59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제품(다만,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제한되는 품목만 해당한다)의 승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용품센타가 관광호텔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으로서 주방용품, 소모성기계, 기자재류 및 객실 또는 부대업장용 소모성 물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군납업자가 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기관에 공급하는 군납용 물품 : 제8조에 따른 승인 기관의 장

제61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 ①제60조제1호에 따라 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한 식자재 및 부대용품(이하 "관광호텔용 물품"이라 한다)은 승인권자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권자가 사후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 ①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1. 관광숙박업 중「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호텔업 및 명의이용허가를 득한 식음료업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외신기자클럽, 서울클럽 및 한국언론회관 내 멤버스 클럽과 기자클럽

3. 외화획득 및 관광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관광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별표 7에 열거한 시설
4.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된 서울올림픽파크텔
5. 올림픽, 이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대회의 선수촌, 기자촌, 프레스센터 등 관련 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급식장(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후의 잔여물량은 관광용품센터 또는 판매대상업소에 같은 기간 종료 후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관세법」에 따라 설영특허를 받은 외교관 면세매점
 - ②관광용품센터가 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용 물품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가 시설규모 및 식자재 구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3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 등) ①관광용품센터는 보관 중인 관광호텔용 물품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광용품센터는 관광호텔용 물품의 운송, 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해당 물품의 용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상실품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광용품센터는 관광호텔용 물품의 수입, 재고 및 판매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관광용품센터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구매 및 소비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광용품센터는 분기별 관광호텔용 물품의 수입 및 판매현황을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광용품센터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월별 구입 및 소비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광용품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용도와 사용금지) ①관광용품센터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광용품센터는 관광호텔용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 승인권자는 제64조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요청하거나「관광진흥법」제2장제6절에 따른 행정처분을(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6조(선용품의 사후 관리) ①수입 물품 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의 사후 관리는 관세청장이 행한다.

②수입 물품 공급업자는 수입선용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항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
2. 신조선박 및 수리선박



제67조(선용품의 관리 등) ①수입 물품 공급업자는 선용품의 수입, 재고 및 공급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수입 물품 공급업자는 선용품의 수입, 공급(외화 및 국내통화 구분) 및 재고현황을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선용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 관세청장은 제66조제2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9조(군납용 물품의 사후 관리 등) ①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군납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양도 또는 폐기하려면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입된 군납용 물품에 의한 군납계약 이행 후 15일 이내에 외화획득 상황을 군납대금회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요청한다.

제4장 플랜트수출

제70조(플랜트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설비"란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를 말한다.

제71조(플랜트수출승인의 신청) ①영 제50조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플랜트수출승인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50조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플랜트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서 사본
2. 변경사유서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 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2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지정)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로 한다.

제5장 원산지

제1절 적용범위 등

제7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12조, 제33조부터 제38까지 및 제41조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 원산지 판정 및 확인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4조(협의) ①이 장의 규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거래자·판매업자 및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원산지 표시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계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트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6.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②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⑥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6.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

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풋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①영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처리되어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풋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 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같은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별표 10에 열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81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①관세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의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

제83조(원산지 표시의 확인·검사) ①별표 8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수출·수입되는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수입신고 후 통관된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

제84조(원산지 표시의 확인 및 이의제기) ①관세청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적정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원산지 판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삭제(12.7)>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 가. 통풍
 -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 다. 냉동, 냉장
 -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 아. 시험 또는 측정
 -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 파. 퍼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제87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①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해당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제88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62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거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원산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또는 시·도지사의 원산지에 관한 결정 또는 확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해당 처분청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 절차 등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접수한 처분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0조(원산지의 판정자료 보정기간) 영 제63조제2항의 보정기간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1조(원산지의 확인) ①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2.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 ③제1항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해당 자료의 발행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제1항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한 자는 자료제출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관세법」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4.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5.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6.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93조(원산지 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원칙) ①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원산지 국가 이외의 국가(이하 "비원산국"이라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원산지 국가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비원산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세관 감시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2. 박람회, 전시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 후 우리나라로 수출한 물품의 경우
- ②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9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수출입 질서유지

제1절 분쟁조정 등

제94조(무역분쟁 관련 서류 제출)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무역분쟁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분쟁의 당사자
2. 무역분쟁의 발생경위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95조 삭제

제96조 삭제

제97조 삭제

제98조(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①영 제80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 5부를 대한상사중재원장(이하 "중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다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
2.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3.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②중재원장은 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접수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답변) 제98조에 따른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조정의 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반대신청) ①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조정신청과 병합하여 심리한다.

③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은 반대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1조(조정비용) ①영 제84조의 조정비용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조정위원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등 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경비가 중재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02조(예납방법) ①조정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제101조의 조정비용을 중재원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의 조정비용의 예납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중재원장은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끝낼 수 있다. 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조정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재원장은 조정이 끝난 때에는 예납된 조정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3조(조정명령의 기준) 영 제87조에서 규정한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3호가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제외하는 경우"란 물품등을 수출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다른 무역거래자를 제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6조제1항제3호나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해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 제46조제1항제3호다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영업정보의 부당사용 : 다른 무역거래자의 기술 또는 영업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무역거래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제104조 삭제

제105조 삭제

제106조 삭제

제7장 보칙

제107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요령) ①법 제5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8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보고) ①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임·위탁업무 처리결과와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안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가. 영 제9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91조제4항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91조제5항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91조제6항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91조제7항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91조제10항에 관한 사항
- 2. 해당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 가. 영 제91조제2항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9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91조제8항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91조제9항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91조제11항에 관한 사항
- 3. 영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 ②보고항목, 양식 등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수입·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영 제91조 각 항 각 호에 따른 위임·위탁업무별로 종합적인 처리결과와 특이사항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09조(과태료부과 협의 등) ①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과 시·도지사와의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세관장이 적발하여 시·도지사(시·군·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
- 2. 시·도지사(시·군·구)가 적발하여 세관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를 할 경우 협의대상 기관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반업체의 현황(수입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
 - 2. 위반물품 현황(물품명, 수량 등)
 - 3.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
 - 4. 관련 서류(위반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그 밖의 관련 서류)
 - 5. 적발일자 및 장소
 - 6. 처벌 여부 및 처벌 내용 등
- ③동일한 수입신고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지역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건으로 본다.

제1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 고시 2012-183호, 2012.7.31)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 고시 2012-261호, 2012.10.3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출승인의 면제

1.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출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별송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출국의 목적, 여행의 기간, 출국자의 직업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나. 외국에 주거를 이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출국하는 자와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출국하는 자 중 가족을 동반한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출국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출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이사물품이나 별송으로 반출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그 출국의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출국시에 반출하는 물품
- 마. 외국정부의 초청으로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게 속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 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및 원료 등의 물품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영 제19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러 상당액(신고가격 기준)이하의 물품
- 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다. 수출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라.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주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입한 나용선 또는 임차항공기의 반입을 위한 반출물품
- 바.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입된 원료의 잔량분 또는 수탁판매수입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판매되지 아니한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내용에 따라 기술대가를 현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아.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자.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차. 외국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반출하는 업무용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 카. 우리나라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시 반출하는 물품
- 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파. 외국업자의 주문으로 제작되어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후 반출하려는 금형
- 하. 그 밖에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제19조제2호라목에 따른 수출승인 면제

- 가. 무상으로 반입하여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 1) 금속제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될 용기 또는 기구
 - 2)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 및 기구
 - 3) 우리나라에 입국한 순회 흥행업자의 흥행용 물품
 - 4) 텔레비전 방송국이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반입한 영화필름
 - 5) 공사용(수리용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용의 기계 또는 기구
 - 6)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박람회 등의 종료 후 반출되는 물품
 - 7)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 8)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하여 반입한 기계 및 장치
 - 9) 대학 및 연구기관이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성능검사 등을 위탁받아 반입한 검사의뢰 물품 및 검사장비
- 나. 무상으로 반입할 예정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 1) 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될 용기 또는 기구
 - 2)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 3) 외국에서 영화(뉴스 포함)를 촬영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반출하는 영화촬영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로서, 해당 영화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다.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이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시 반출하는 물품

4. 영 제19조제2호마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외국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에서

무상 또는 계정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무상 또는 계정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및 동 시설보완용 부분품, 소모성 기자재 또는 시설재. (단,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영 제19조제2호바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우리나라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 나. 외국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훈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군공용물품
- 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우호의 목적으로 기증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마. 국제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기용 물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
- 바. 무상으로 반출하는 구호품
- 사.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에 반출하는 국내우표와 지식경제부장관의 해외우표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반출하는 국내우표
- 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통상대표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반출하는 공용물품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외무공무원 및 그 가족이 반출하는 자용물품
- 자. 국제협약 등에 의한 조사단 또는 사찰단이 협약 등에 의한 조사 또는 사찰을 위하여 반출하는 장비, 물품 및 그 구성원의 자용물품

6. 영 제19조제2호사목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 가.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 나. 뉴스를 취재한 필름이나 녹음테이프 등으로서 우리나라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의 특파원이 있는 본사, 지사 또는 주재원 등 앞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다.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 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인정된 용역계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무상으로 반출하는 국산영화
- 마.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무역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무역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반출하는 물품
- 바.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출하는 연구용 기자재·원료 또는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 사. 그 밖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반출의 목적·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1.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입승인 면제

- 가.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목적, 체류의 기간, 입국자의 직업 등의 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나.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라. 우리나라에 온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입국시에 반입하는 물품
- 마.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의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의하여 반입하는 업무용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을 받아 반입하는 물품
- 바. 정부의 초빙이나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사절단원의 업무용 물품

2. 영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조난선박의 수리 또는 구호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선박이 항해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그 선박의 적재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나. 긴급을 요하는 항공기의 부분품(항공용 유류 및 비상구급용품을 포함한다), 공항 내에서 항공기에 전용되는 지원장비의 부분품, 수리용품 및 수리용 원료를 구매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그 구매 절차에 의하여는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다. 긴급을 요하는 국제통신시설의 수리용 부품과 기기를 구매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적기에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라. 긴급을 요하는 해난구조용품으로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적기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해난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마. 긴급을 요하는 견품으로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적기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영 제19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유상

- 으로 반입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러 상당액(과세가격 기준)이하의 물품
- 나.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 제조용 원료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
 - 라. 수입된 물품이나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 마. 수입물품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동 물품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 바.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한 물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물품
 - 사.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로서 세관장이 해당 수출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아.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LABEL), 태그(TAG)등 부자재
 - 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주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입하는 나용선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반입하는 임차항공기. 다만, 장래 소유권이 이전되는 국적취득 조건부의 것을 제외한다.
 - 차.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된 원료의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카.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가 현지에서 사용한 후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타.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치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외국상사의 지사나 출장소 등에 무상으로 송부된 사무용품, 소모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파. 건설용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하. 우리나라에서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해당 운항사항업을 행하는 자(당해 사업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되어 오는 물품
 - 거.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소모성 자재 또는 시료로서 해당 수출물품의 성능, 시험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네. 항공산업용으로 도입하는 중고 치공구
 - 더. 그 밖에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 영 제19조제2호라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무상으로 반출할 예정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 1) 외국의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특파원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자가 뉴스의 취재용



으로 반입하는 필름 또는 녹음테이프

- 2) 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
 - 3)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기구로서 해당 영화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4)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 흥행업자의 흥행용 물품
 - 5) 텔레비전 방송국이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반입한 영화필름
 - 6) 공사용(수리용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용의 기계 또는 기구
 - 7)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 8)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 9)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기계 또는 장치로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이 추천하는 물품
 - 10) 대학 및 연구기관에 외국으로부터 품질이나 성능검사 등을 위탁받아 반입하는 검사의뢰 물품 및 검사장비
- 나. 무상으로 반출된 물품을 다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
- 1) 금속제 실린더, 컨테이너, 권사구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
 - 2)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
 - 3) 외국에서 영화(뉴스필름을 포함한다)를 촬영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자가 반출한 영화촬영용의 기계·기구
 - 4) 외국에서 개최된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된 물품으로서 반송되어 온 물품
 - 5)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합작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한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한 물품
 - 6)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한 물품
- 다.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5. 영 제19조제2호마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공장에서 가공할 것을 목적으로 무상 또는 계정 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원료 및 동 시설보완용 부분품, 소모성 기자재 또는 시설재(단,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나.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 설영특허를 받은 자의 판매용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6. 영 제19조제2호바목에 따른 수입승인 면제
- 가. 국가원수에게 반입되는 물품
- 나. 우리나라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훈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군대, 군함 또는 공관으로부터 반입되는 공용물품
 - 라. 사원, 교회 등에 기증된 식전용품 및 예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되는 물품
 - 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된 급영품 및 「관세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지정된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어 직접 사회복지용에 공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하는 물품
 - 바. 학교, 박물관, 박물관진열소 그 밖에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한 시설에 표본, 참고품,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반입되는 물품
 - 사. 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우호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반입되는 물품
 -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해당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물품
 - 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발행하는 유네스코구폰과 교환으로 송부되어 반입하는 물품
 - 차.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통상대표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반입하는 공영물품 그 밖에 그 기관에 소속 되는 외국공무원 및 그 가족이 반입하는 자용품
 - 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설립자가 법인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만 해당한다)이 같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물품
 - 타. 국제공동경기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단의 경기용 물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
 - 파. 국제협약 등에 따른 조사단 또는 사찰단이 협약 등에 따른 조사 또는 사찰을 위하여 반입하는 장비, 물품 및 그 구성원의 자용품
7. 영 제19조제2호 사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반입하는 선박
 - 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에 반입하는 해체물품 및 장비품
 - 라.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
 - 마.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외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품(현지 수리 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바.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용 또는 항공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사.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 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수출입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수출입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능한 경우에 해당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물품

- 1) 외항운송업자가 경상운항정비로 구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된 식용품 및 서비스 용품
- 2)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명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 3) 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식용품 및 「관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용품

차.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 추천하는 물품

카. 시험·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타.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해외자사에서 구입·사용 후 내용연한이 경과된 방송·촬영장비 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반입목적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추천하는 물품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HS류별	품 목 코 드
01류	0102, 0106(자라에 한함)
02류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3류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04류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0410
05류	0504, 0506, 0507, 0510
06류	0601, 0602, 0603, 0604
07류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08류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0814
09류	0901, 0902, 0903, 0904, 0906, 0907, 0908, 0910
10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류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2류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1, 1212
13류	1302
15류	1501, 1502, 1503, 1504,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20, 1521, 1522
16류	1601, 1602, 1603, 1604, 1605
17류	1701, 1702, 1703, 1704
18류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9류	1901, 1902, 1903, 1904, 1905
20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류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2류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3류	2301, 2303, 2308, 2309
24류	2401, 2402, 2403
25류	2501
28류	2815.11, 2853
30류	3003, 3004, 3005, 3006
31류	3101
32류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33류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4류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HS류별	품 목 코 드
35류	3504, 3505, 3506
36류	3604, 3605, 3606
37류	3702, 3703, 3704, 3707
38류	3808, 3814, 3820, 3824, 3826
39류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40류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1류	4114, 4115
42류	4202, 4203, 4205, 4206
43류	4303, 4304
44류	4402,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6류	4601, 4602
48류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3, 4814,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3
49류	4905, 4909
50류	5006, 5007
51류	5109, 5110, 5111, 5112, 5113
52류	5204,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53류	5309, 5310, 5311
54류	5401, 5406, 5407, 5408
55류	5502, 5508,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6류	5601, 5602, 5603, 5604
57류	5701, 5702, 5703, 5704, 5705
58류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9류	5909(소방호스에 한함)
60류	6001, 6002
61류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117
62류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6217
63류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6309, 6310
64류	6401, 6402, 6403, 6404, 6405, 6406
65류	6501, 6502, 6504, 6505, 6506, 6507
66류	6601, 6602, 6603
67류	6704
68류	6801, 6802, 6804, 6806, 6809, 6809, 6810, 6815
69류	6902, 6903, 6906, 6907, 6908, 6910, 6911, 6912, 6913, 6914
70류	7003, 7004, 7005, 7006, 7007, 7008, 7009, 7010, 7013, 7014, 7015, 7018, 7019, 7020

HS류별	품 목 코 드
71류	7113, 7114, 7116, 7117
72류	7208, 7210(전기, 용융, 착색 아연도금강판에 한함), 7216, 7219
73류	7307(플랜지에 한함), 7311, 7315,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 7325, 7326
74류	7415, 7418, 7419
75류	7508
76류	7607, 7612, 7613, 7615, 7616
78류	7806
79류	7907
80류	8007
82류	8201, 8202, 8203, 8204, 8205, 8206, 8207, 8208, 8209, 8210, 8211, 8212, 8213, 8214, 8215
83류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4류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16, 8417, 8418, 8419, 8421, 8422, 8423, 8424, 8425,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40, 8441, 8442, 8443, 8448, 8450, 8451, 8452, 8453, 8456, 8465, 8466, 8467, 8468, 8469, 8470, 8471, 8472, 8473, 8476, 8479, 8481, 8482, 8483, 8484, 8487
85류	8501, 8502,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5, 8526, 8527, 8528, 8529,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87류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1, 8712, 8713, 8715, 8716
89류	8903
90류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10, 9011, 9012, 9013, 9015, 9016, 9017, 9018, 9019, 9021,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1, 9032, 9033
91류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 9111, 9112, 9113, 9114
92류	9201, 9202, 9205, 9206, 9207, 9208, 9209
94류	9401, 9402, 9403, 9404, 9405
95류	9503, 9504, 9505, 9506, 9507, 9508
96류	9603, 9604, 9605, 9607, 9608, 9609, 9610, 9611, 9612, 9613, 9614, 9615, 9616, 9617, 9618, 9619



2. 수출입공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수출입 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25호, 2011. 2. 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공고와의 관계) 이 고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및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계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계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계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수출절차의 간소화)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별표2의 수출요령에도 불구하고 수출승인기관을 따로 정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부승인요령의 공고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요령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수출요령에서 정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합의(승인)를 얻어 동 세부승인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47호, 2008.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철강재수입신고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5호, 2006.11.27)은 2008.3.1일부로 폐지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6호, 2008. 4. 2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4.24일부터 시행한다.
2.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일괄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에 의거 제10조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출금지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고래고기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9	기타(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9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 동물)의 것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고래고기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1	화강암	
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12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자연석
2516. 20	사 암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H S	품 목	수 출 요 령
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개의 생모피
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에 적합한 것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19	기 타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개의 모피
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4303	모피의류·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9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개의 모피제품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0808			사과, 배 (신선한 것에 한한다)	
	10		사과	다음의 것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대만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20		배	다음의 것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 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배(대만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10		규 사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90		기 타	① 규산분(SiO_2)이 90% 이하의 것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 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 (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 는 제 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	1. 다음의 것은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① 구석, 싱글과 플린트
	41		대리석의 것	2.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H S			품 목	수 출 요 령
4707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10	00 00	표백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파형지 또는 판지제의 것	지식경제부에 사전 신고하여야 수출할 수 있음
	30	00 00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등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 신고기한 : 2011. 12. 31까지
	90	00 00	기타(선별하지 아니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별표 3] 수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3920.99.100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되지 아니한 것) 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11.30.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13.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20.1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중고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90.104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플랩중 항공기용의 것	
4013.90.1000	고무제의 인너튜브중 항공기용의 것	
4016.99.1010	가황고무제품(경질고무제품 제외)중 기구, 비행선, 비행기계류, 그라인더, 연, 로토슈트의 부품	
7007.11.0000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7007.21.0000	합판안전유리 중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8407.10.0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중 항공기용의 것	
8409.10.0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1.11.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12.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8411.21.1000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22.1000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8411.81.1000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91.1000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8411.99.1000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엔진의 부분품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12.1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8412.10.1090	기타 반동엔진 중 항공기용의 것	
8412.9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부분품	
8412.90.1090	기타 반동엔진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3.30.1000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함)중 항공기용의 것	
8414.10.1000	진공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1.1000	팬 중 항공기용의 것	
8802.20.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항공기	
8802.30.1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30.2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프로 펠러식 항공기	
8802.30.3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30.9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기타 항공기	
8802.40.1000	자중 15,000KG초과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2000	자중 15,000KG초과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3000	자중 15,000KG초과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40.9000	자중 15,000KG초과 기타 항공기	
8802.60.1010	인공위성	
8802.60.1090	기타 우주선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8802.60.3000	서보비탈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8803.20.0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3.30.1000	기타 부분품 중 비행기용의 것	
8803.30.2000	기타 부분품 중 헬리콥터용의 것	
8803.90.1000	글라이더, 행글라이더용의 부분품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 포함)용의 부분품	
8803.90.9000	기타 항공기의 부분품	



H S	품 목	수 입 요 령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 포함)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4.00.2000	로토슈트	
8804.00.9010	낙하산의 부분품	
8804.00.9020	로토슈트의 부분품	
8805.10.1010	군경용 항공기 발진장치	
8805.10.1090	기타 항공공기 발진장치	
8805.10.2010	군경용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2090	기타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9010	군경용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10.9090	기타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21.1010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1090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2010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1.2090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9.1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8805.29.1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8805.29.2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8805.29.2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9014.10.1010	자이로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9014.10.2010	자기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콤파스 제외)	
9014.90.1000	방향탐지용 콤파스와 기타 항행용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9.1000	기타 팬중 항공기용의 것	
8414.60.1000	후드 중 항공기용의 것	
8414.80.9110	기체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3.2000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9.4000	기타 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1.2000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9.9030	기타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66.20.1000	가공용 홀더 중 항공기용의 것	
8483.10.1000	전동축과 크랭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20.100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 롤러베어링 갖춘것) 중 항공기용의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8483.30.100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 롤러베어링 갖추지 않은 것)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83.40.1010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8483.40.1090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외 기타부품	
8483.50.1000	플라이휠과 폴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60.100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중 항공기용의 것	
8483.90.1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품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11.10.1000	점화플러그 중 항공기용의 것	
8511.20.100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중 항공기용의 것	
8511.30.1000	배전기와 점화코일 중 항공기용의 것	
8511.40.1000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50.1000	기타 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80.1000	기타 내연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90.1000	기타 내연기기 부품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26.10.1000	레이다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1010	항행용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2010	초단파 수신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3010	무선방향 탐지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9010	기타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 중 항공기용의 것	
8801.00.1010	글라이더	
8801.00.1020	행글라이더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801.00.9090	기타 무동력 항공기	
8802.11.1000	자중 2,000KG 이하의 군용 헬리콥터	
8802.11.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헬리콥터	
8802.12.1000	자중 2,000KG 초과하는 군용 헬리콥터	
8802.12.9000	자중 2,000KG 초과하는 기타 헬리콥터	
8802.20.1000	자중 2,000KG 이하의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20.2000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H S	품 목	수 입 요 령
8802.20.3000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제트식 항공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32.10.1020	가변식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1010	액면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2010	유량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9010	기타 조절기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2010	전압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3010	기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9010	기타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90.1000	자동조정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9401.10.0000	항공기용의 의자	



3. 통합공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통합 공고

개 정 [지식경제부고시 제12-256호(2012.10.23)]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품목”이라 함은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한다.
2.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 통관전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 승인 등의 수출입을 위한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를 말한다.
3. “요건면제물품”이라 함은 수출입시 이 고시 또는 제3조제1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의 적용이 면제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요건면제확인기관”이라 함은 이 고시 및 제3조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표 2에 규정된 수입요령의 적용면제를 확인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요건면제확인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요건확인기관을 요건면제확인기관으로 본다.
5.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법령등)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 | | |
|-----------------|-------------------------------|
| 1. 약사법 |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3. 화장품법 | 16. 계량에관한법률 |
| 4. 식품위생법 |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 5. 검역법 | 18. 원자력안전법 |
|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19. 전파법 |
| 7. 양곡관리법 | 20. 전기통신기본법 |
| 8. 비료관리법 | 21. 야생동·식물보호법 |
| 9. 농약관리법 |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 10. 가축전염병예방법 | 23. 대기환경보전법 |
| 11. 식물방역법 | 24. 소음·진동관리법 |
| 12. 종자산업법 | 25. 자동차관리법 |
| 13. 축산법 | 26. 산업안전보건법 |



- | | |
|---|--|
| 2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 |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28. 건설기계관리법 | 42. 하수도법 |
| 29. 먹는물관리법 | 43. 주세법 |
|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44. 지방세법 |
|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4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32. 축산물위생관리법 | 46. 출판및인쇄진흥법 |
|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47. 의료기기법 |
| 34. 농산물품질관리법 | 4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
| 35. 방위사업법 | 49.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 36. 수산물품질관리법 | 50.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
| 37. 수산업법 | 51. 사료관리법 |
|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52.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
|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② 제1항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 처, 청의 장(이하“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법령의 수출입 요령이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이 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법령의 대상물품 및 동 물품의 수출입요령 등을 정한 자료를 당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이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주무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물품의 수출입요령에 관한 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해당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1.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
3. 규제 대상물품의 범위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 여부
4.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
5. 기타 무역정책 기초의 일치여부

제4조(대상품목) ① 제3조 해당법령의 적용을 받는 수출입 물품은 제8조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는 별표 1의 품목별 수출요령과 별표 2의 품목별 수입요령에서 정한다.

② 당해물품이 요건확인품목으로서 이 고시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법령이 적용되는 범위내의 물품이어야 한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또는 해당법령의 적용범위의 모호로 수출입되는 물품간의 혼동 또는 전용의 우려가 있어 수출입 질서유지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물품의 수출입절차 및 요건등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출입되는 물품에 관한 요건의 확인이 당해법령에서 주무부처의 장의 허가(등록 또는 승인) 사항일지라도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이 고시의 요건확인 품목에서 제외된 물품 또는 별표 1, 2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서 당해품목의 요건 및 절차가 다르게 정하여진 물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 고시에 의한 당해물품의 수출입 요건확인에 따른다.

제5조(품목분류) 이 고시상의 요건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6조(품목별 수출입요령) ① 이 고시의 별표 1, 2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계기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용도 이외의 물품은 제8조에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 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세부요령의 공고 등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별표 1, 2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이 요건확인품목의 용도기준에 의한 분류 또는 물품의 소관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주무부처 의 장”이라 함은 해당 수출입 물품을 사용 또는 수요하는 업체와 가장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동 기관은 해당 수출입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관계 행정 기관에 해당 수출입 물품의 요건확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①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등과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00-75호 개정)

② 1개의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되어 별표 1, 2의 수출입요령에서 2개 이상의 요건확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확인 품목에 대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 물품이나 고시대상품목의 분류가 용도기준으로 된 물품이외에는 당해 물품에 부과된 2개 이상의 요건을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별도규정 품목)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물품은 별표1, 2의 수출입요령에 계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다음 각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하여야 한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3에 계기된 품목으로 하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별표4에 계기된 품목으로 하며, 그 수출입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매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은 수출할 수 없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중 원료인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03-52호 개정)

2. (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는 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조제6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동법 제3조제8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할 수 있다.(03-52호 개정)

3. (원료물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은 별표4-1에 계기된 품목으로 하며,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식품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마.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바. 수입이 금지된 것

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우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아.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5. (검역물품) 검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다.

가. 묘견(描犬), 원류(猿類)등의 동물로서 입항전 6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항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 진단서가 없는 것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 식물 또는 생과물, 야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6. (통관제한 품목)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7. (보호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는 동법 제21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출할 수 있고, 동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표본·

- 박재의 수출허가를 받은 때에는 수출할 수 있다.
8. (방산물자)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의 수출입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중에서 군用に 공하는 물자의 수출입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농약 또는 원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또는 원제의 수출입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가. 농약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및 원제에 한하여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등록을 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를 동일한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에 갈음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나.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0. (화학물질)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화학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 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 마.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 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 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11.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대상화학물질) 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통관 전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유해성심사대상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한다.
 -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것
 -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 및 이 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관찰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 라.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
- 마.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13. (유해성심사면제대상화학물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한다.
-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
- 다.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라.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학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마.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가호 내지 라호에 준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14.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 신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수입 신고서
- 나. 관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수입신고서
1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수입허가서 및 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수입허가서
- 나. 취급제한·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PIC)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
16. (이식용 수산동식물 검역물품)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관리원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 수산동식물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 및 제31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 가. <삭제>
- 나. <삭제>

17. (축산물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 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마.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 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18.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및 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홍콩은 제외)·베트남·인도네시아 및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15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01-157호 신설)
19. (건강기능식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마. 수입이 금지된 것
 - 바.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 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20. (수입금지물건 및 수산동물 검역물품) 다음 각목 중 가목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4조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나목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 가.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전염성질병에 감염된 수산동물 및 병원체(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 나.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21.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 17의 패류제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① 이 고시에서 요건확인기관으로 규정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대외무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관 물품의 수출입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소관물품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을 정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확인 세부요령에 따라 소관품목의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여 수출입 질서유지 및 무역정책의 기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소관 품목에 대한 요건확인서 발급실적 등을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① 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또는 해당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이 정한 별지서식 또는 통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 의한 수출입 요건 확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법령과 같이 형식승인, 형식검정,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유효성 검사등(이하“시험 및 검사”라 한다)을 수입요건 및 절차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하며, 시험 및 검사를 거친 동일규격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요건 확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법령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에 그 근거규정과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 |
|-----------------------|-----------------|
|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9. 야생동·식물보호법 |
|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10. 자동차관리법 |
| 3. 계량에관한법률(00-75호 개정) | 11. 소음·진동관리법 |
| 4. 전기통신기본법 | 12. 대기환경보전법 |
| 5. 전파법 | 13. 건설기계관리법 |
| 6. 약사법 | 14. 산업안전보건법 |
| 7. 식품위생법 | 1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16. 의료기기법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및 검사가 신고로 갈음된 물품이 요건확인 과정에서 착오·오류가 발견되거나 그 유통과정에서 최초의 시험 및 검사에서 받았던 기준, 규칙, 함량 등과 상이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지정하여 시험 및 검사를 다시 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통관의 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요건확인신청서 구비서류)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품목의 수출입을 위해 요건확인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공동 구비서류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또는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각 3부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계약서 사본 1부(수입의 경우)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수출의 경우) - 수출입 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출입 대행시에 한함)	해당품목에 적용되는 법령 및 이 고시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 계기된 요건 및 절차에 관련된 서류 등

제2절 요건면제물품의 수출입·통관 및 사후관리

제12조(요건면제) ① 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의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 식물방역법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5.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야생동·식물보호법
 8. 양곡관리법
 9.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다만, 제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1. 식품위생법 <단서 삭제>
 12. 전기용품안전관리법(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단서 삭제>
 1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15. 수산물품질관리법(다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이식용 수산식물에 한함)

제13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 ①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면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용 이외의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 면제수입확인



신청서[업체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2.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 신청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용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⑤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용 원자재의 것으로 동일회사, 동일제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선적·도착기일, 제조·가공기간 및 기타사유를 고려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20이상의 요건면제수입확인) 하나의 수입에 대하여 20이상의 요건면제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면제수입확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제16조(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 변경확인)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한다.

제17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당사자
2. 수량
3. 규격
4. 용도
5. 승인조건

②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운영목적에 감안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외에도 추가로 변경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변경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확인 신청등) ①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확인을 받은 요건면제수입확인서와 함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요건면제수입의 변경확인 신청은 당초 확인의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대금을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경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기관) 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관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제20조(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면제수입 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경우 대응수출의무 이행여부
2. 요건면제조건이 특정용도사용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하였는지 여부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항 각호의 이외의 요건면제조건에 대하여도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확인 할 수 있다.

제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① 제20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면제수입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소요량계산서 각 1부
2. 특정용도사용이 요건면제조건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요건면제확인과 관련된 사후관리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의 면제)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용을 요건면제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수출이행의무의 미이행율이 10%(다만, 수산물의 경우 3%)이하인 경우
2. 수출이행 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율이 10%(다만, 수산물의 경우 3%)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다만, 수산물의 경우 미화 1천달러) 상당액 이하인 경우
3. 수출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출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입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기타 수입 또는 양수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후관리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의 양도) ①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한 자는 양수 자가 수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면제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요건면제물품의 통관) 요건면제물품이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 고시에 규정된 물품인 경우 수입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내역의 신고) ①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후관리 대상인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7일이내에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면제물품의 수입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매월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요건면제물품의 통관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 ①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요건면제물품을 양도 받은 자는 2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1년 6월)이내에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1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6월)의 범위내에서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요건면제조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요건면제조건 이행사항 정리)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별로 요건면제조건 이행사항을 내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게 이행만기일 경과후 20일 이내에 미이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요건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② 소요량계산서등 소요량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특례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1절 의약품등의 수출입

제30조(적용범위) 이 절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품외품, 한약재, 방사성 의약품(이하“의약품등”)이라

한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원료포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류”라 한다)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1,2,3,4,41,5,6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계기 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각각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품목별로 또는 수출입 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승인 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취급자등) ①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출입시 구비요건은 이 고시 제11조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한 의약품등 수입자는 약사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화장품 수입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물품의 구분	수 입 자	위 탁 자	구 비 요 건
1. 원료의약품	○의약품등 수입자	○해당 수입 물품이 함유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를 받은 자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	-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증 또는 수입품목허가(신고)증 - CITES관련품목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 증명서 -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통합공고 제35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 원료의약품GMP(BGMP)증명서 1부
2. 완제의약품 및 진단용 의약품	○의약품등 수입자	○의약품등 수입자 ○의약품 도매업자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 약사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품목의 경우에는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반복수입시 구비서류 - 의약품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 기수입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5 (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에 계기된 품목의 가공품을 포함하는 경우 - 최초 또는 반복수입시의 구비서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 증명서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제11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2001-83호 신설)
3. 의약외품	○의약품등 수입자	-	○완제의약품 및 진단용의약품의 구비요건과 같음



물품의 구분	수 입 자	위 탁 자	구 비 요 건
4. 화장품	○화장품 수입자	-	○최초 수입시 구비서류 - 제조 및 판매증명서(다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화장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함을 확인받은 서류) - 화장품법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서류(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에 따른 서류)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품질관리시설내역서 또는 위탁계약서 1부 ○반복수입시 구비서류 - 동일수입자가 기수입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2001-83호 신설)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제11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2001-83호 신설)
5. 의료기기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수입업자 ○의료기기제조업자(단, 시험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의 성능을 갖춘 형태로 수입하여 포장, 멸균, 절단 등 추가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제조품목 허가(신고)를 받은자에 한함) ○(삭 제)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	○최초 수입 시 구비서류 - 당해물품의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단, 시험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반복수입시 구비서류 - 당해물품의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단, 검사시료의 경우에는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 기수입 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시험용 의료기기 수입시 구비서류 -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 통합공고 제35조제11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6. 마약류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대마)	○원료마약은 원료의약품의 구비요건과 동일 ○완제마약은 완제의약품의 구비요건과 동일
7. 소분용의약품	○수입자	○의약품제조업자(단, GMP실시 적격업소로서 당해 의약품 소분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완제의약품의 구비요건과 같음
8. 한약재	○수입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업자 (단, 규격품종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 이외의 한약재에 한함) ○의약품 제조업자 (단, 당해 수입물품이 함유된 의약품 등 제조 품목허가를 받은자에 한함)	○완제의약품의 구비요건과 같음

물품의 구분	수 입 자	위 탁 자	구 비 요 건
9.방사성의약품	○의약품등 수입자	○의약품등 수입자 ○의약품도매업자	○완제의약품의 구비요건과 같음
10.화장품원료	○화장품수입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수입업자 (2001-87호 신설)	○CITES관련품목에 대하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2001-83호 신설) － 최초 또는 반복 수입시의 구비서류

② 제31조제1항 구비요건 중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에 의한 서류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1.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 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한도를 지정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2.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③ 제1항 의료기기의 구비요건중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수입품목신고서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같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표>1의 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첨가제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체외진단용의약품·소독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 원료의약품 수입시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원료의약품GMP(BGMP)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규격으로 생산되지 않아 BGMP증명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의약품 GMP에 준하는 증명서로 같음 할 수 있다.

1. 단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당해 원료의약품이 WHO guideline 등에 준하는 GMP조건하에서 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발행일로부터 2년(다만, 당해 생산국 또는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발행주기가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생산국 또는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다만,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이 입증될 경우 공증한 서류

2. 반복 수입 또는 복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

동일 제조원으로부터 동일 수입자가 BGMP증명서 발행일로부터 2년(다만, 당해 생산국 또는 등록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발행주기가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반복 수입할 경우 또는 복수의 수입자가 수입할 경우에는 1호에 적합한 것으로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사본을 공증한 서류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증명서를 원본대조필 한 증명서 사본

제32조(국가검정의약품의 통관절차) ① 국가검정의약품중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검정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으로서 의약품등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로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수출국 정부가 발행한TSE(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미감염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 보고서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님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품목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과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 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2001-83호 단서 신설)

② 국가검정의약품등 원료의약품(이하 원료의약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으로서 의약품등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로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수출국 정부가 발행한TSE(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미감염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님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품목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과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제33조(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① 의약품등을 수입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준수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②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한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00-75호 개정)

③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단, 제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 제외)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단, 제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에 한함)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④ 별표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에 계기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중 한약재를

수입한 자는 통관시 제1항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 의약품과化粧품을 수입한 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제33조의 2(임상시험용 의약품등 및 의료기기의 통관)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원료, 대조약, 위약 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을 제출 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34조(의약품 등의 검정) ① 의약품등(원료의약품, 化粧품 및 그 원료 제외)을 수입한 자는 검정을 필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검사 면제대상의약품 등과 임상시험용의 경우에는 검정 또는 검사를 면제한다. (00-75호 개정)

②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化粧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입한 자는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미 수입된 化粧품과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외관 비교 검사(제품명 및 중량 또는 용량 포함)

2. 해당 化粧품의 용기 등에 기재된 성분 목록

③ 제2항에 따라 동일함을 확인받은 化粧품의 경우에는 化粧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으로부터 매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로 化粧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필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양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化粧품의 수입) ①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에 계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같다.(00-75호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원료의약품의 경우 별표에 계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③ 化粧품(원료포함)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化粧품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④ 별표5(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의약품 등을 수출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와 동 가공품을 함유한 화장품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약사법 제43조와 화장품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 제외)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에 한함)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⑥ 의약품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명 또는 화학명), 원료약품의 분량 및 규격(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공정서, 수재품목인 경우 공정서 명칭등),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제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번호와 허가(신고)사항 [별표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동·식물의 학명병기], 조건이행 확인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⑦ 별표5(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한약재(동일 생약명 한약재 포함)는 품질검사신청서에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명 또는 화학명), 원료약품의 분량 및 규격(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공정서, 수재품목인 경우 공정서 명칭등),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제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검체수거 예정일자 및 장소, 기준 및 시험방법번호와 허가(신고)사항, 조건이행 확인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⑧ 화장품(원료포함)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총금액, HS부호, 품명(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명 또는 화학명), 원료약품의 분량 및 규격(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공정서, 수재품목인 경우 공정서 명칭등),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제기간 및 가격조건, 통관예정일자, 최근 통관예정보고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5(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⑨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품목등 허가의 제한대상에 속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약사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⑩ 방사성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 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Cold Vial 제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에 계기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또한 같다.(00-75호 개정)

⑪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으로서 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TSE(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님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품목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과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2001-83호 신설)

제36조(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 ① 제8조에 따른 별도규정품목인 마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매 수출입 시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제조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 수입 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 ②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별표 3의 마약, 별표 4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별표 4-1의 원료물질을 수출입한 자는 통관후 10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필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삭 제>

제38조(수출입 특례)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1-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 획득을 위하여化粧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이 고시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化粧품수입자 자격을 갖추어 수입하거나化粧품수입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입대행을 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化粧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하며, 이 고시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면제한다. (00-75호 개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료의약품에 대하여는 한국제약협회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약재에 대하여는 대한한약협회장, 대한한약협회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 제외)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에 한함)이 국내공급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고 판단하여 건의할 경우에는 별표2의 수입요령상 절차 및 구비요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산의약품의 가격이 동일 또는 유사처방의 외국산 의약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라고 판단하여 대한약사회장 또는 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이 건의한 경우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국산의약품 가격이 현저히 고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수입요령상 절차 및 구비요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00-75호 개정)

④ 관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받은 자로서 특허지역에서 판매할 목적



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면제한다.(00-75호 개정)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약개발과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촉진과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제조약(위약 포함)의 수입은 이 고시 제31조제1항 및 별표2의 품목별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개발 등에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수입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된 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수입허가 신청서 1부
2.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신청사유서 1부
4. 개발(국산화)계획서 또는 임상시험승인서 1부(00-75호 개정)

제39조(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표 5(비고란에 ○만 표시된 조수제외) 및 별표 6의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인 한약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허가된 의약품을 수출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제40조(적용범위) 이 절은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이하“동물용 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에 계기한다.

제41조(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①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업검검사본부장으로부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아, 매 수입시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 규칙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조(수입)품목신고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수입금액, HS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제기간 및 가격조건, 국가검정품 여부, 생산계획(원료에 한함)등이 포함되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정하는 표준전자문서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는 수입할 수 없으며, 통합 공고 별표2 품목별 수입요령의 BSE 관련 관리대상품목에 속하는 물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통관예정보고서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할 수 있다.(2001-83호 신설)

1.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산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생산국(수출국)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미사용증명서 또는 BSE 미감염증명서
2.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 이외의 국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또는 BSE 미감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는 당해 품목 수입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품목의 성분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신설)

제42조(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 ①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소요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와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원료동물용의약품명 등이 포함된 제조 및 판매 증명서로서 생산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첨가제 등), 그 밖에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품(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원료동물용 의약품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 ② 수입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이 동·식품 추출물등으로 특정전염병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품목인 경우 특정병원체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완제동물용의약품 수입절차) ① 완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 ②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대상품인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한글표시서에는 수입자, 제조업체명, 제품명, 원료성분과 분량, 성상,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국가검정품 여부, 기타 주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④ 대한수의사회장이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하여 특례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동물용의약품 등의 수입절차) 동물성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45조(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통관절차) ①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국가검정을 필한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 또는 확인한 시험성적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인정하는 품목이나 특수 저장방법 등에 의하여 통관전 검정이 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검정신청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발체의뢰서를 관할 세관 주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체의뢰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포함)은 검정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국가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46조(수입특례) 동물용의약품 등을 동물병원,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수입하거나,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병원에서 동물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한 개발용 동물용의약품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수입신고를 필한 후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의 수입

제47조(적용범위) 이 절은 식품위생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류(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제48조(수입허용기준) 식품등은 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49조(식품등 판매업신고) ①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 영업허가(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0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식품등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 운송인 경우는 수입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1부(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한다)
5.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에 해당 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1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용 식품
 10.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 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 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 다.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 ② 제1항 각호의 식품등 외에는 수입할 때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수입식품등의 표시) ① 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2.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00-131호 개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6.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함
7.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10.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표시하는 농산물을 주요원재료로 1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수입 식품등은「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절 화학물질의 수입 및 유독물 등의 수·출입

제53조(적용범위) 이절의 적용범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수입과 동조 제5호에서 정한 취급

제한·금지물질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화학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화학물질
2.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취급제한·금지물질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 및 유해성심사면제대상 화학물질
5. 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협약대상물질

제54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 2(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제8조제10의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전에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 물분배계수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 시험성적서
3. 어류급성독성·물벼룩급성독성·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4. 피부자극성·눈자극성·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5.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합량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6.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54조의 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 신청) 제8조제10의4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전에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유해성심사면제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수입신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PIC)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통보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제5절 양곡류의 수출입

제58조(양곡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양곡류는 ‘수입허가대상미곡’과 ‘수출추천대상미곡’으로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그 구체적 품목은 별표1, 2에 제시한다.

제59조(요건확인기관등) 요건확인기관 및 수입허가(수출추천)대상은 다음과 같다.

요건확인(추천) 기관	추천대상자 (수출추천 대상자는 별표1에 계기)	구비 서류
1. 농림수산물부 장관	1.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미국수입허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2. 농수산물유통공사장(수출추천)	2.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미국수출추천신청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제6절 비료의 수입

제60조(적용범위) 이 절은 비료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료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00-75호 개정)

제61조(농업용비료의 수입 및 위해성검사)

- ① 농업용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법시행규칙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이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비료등을 수입하는 자는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해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별표2의 유기질비료
 2. 법 제4조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별표3의 부산물비료(단, 중금속의 함유량이 적어 비료의 공정규격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양 미생물제제 등의 비료는 제외)
 3. 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원료
 4. (삭제)
 5. (삭제)

제7절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의 수출입

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이 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건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② 이 절에서 “멸균”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범위와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조제1호의 규정과 같이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의 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로 실온에서 보관 유통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소해 면상뇌증(BSE) 관련물품과 BSE 관련 물품을 함유한 가공품(이하 “BSE 관련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기준(OIE)에 의한 BSE 불활화 조건을 적용한다.

③ 전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BSE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산 BSE 관련품목은 전항에 규정한 BSE 불활화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멸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은 별표16과 같다.

제63조(수입 신고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 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 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중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에 한한다) 또는 1년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것

③ 반추수 유래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검역 신청시 BSE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품 및 BSE 관련물품을 함유한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이 명기되거나 비사용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BSE 관련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되는 것을 증명한 국가라고 별도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5조 및 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신고하여야 할 대상 동물 및 신고서 제출기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동물 :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개·고양이(5두 이상에 한하며 포유 중인 어린 개·고양이를 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 개·고양이를 제외한다)
2. 동물수입신고서 제출기한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별도 정하는 요령에 의함.(01-157호 개정)

제65조(검역물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반송, 소각, 매몰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역물
 2.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검역물
 3. 수입검역시 불합격한 검역물
-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별표 2에 계기된 수입허용지역이나 물품이라 할지라도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지역 및 물품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 ③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산 BSE 관련품목은 수입할 수 없다.(01-157호 신설)

제66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지정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구 :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울산항·동해항·포항항·마산항·여수항·평택항·광양항·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 :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대구공항·광주공항·청주공항 및 양양공항
3.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및 통관장

제8절 식물 및 식물성생산물등의 수출입 검역

제67조(적용범위) 이 절은 식물방역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 및 금지품의 수입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8조(수출입식물의 검역) ① 식물이나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처분명령에 따라 당해 식물 또는 금지품을 소독·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과 그 용기·포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과 용기·포장에 대하여 검역을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우편물로 수출하거나 수입국이 검역합격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 “기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수입국에서 재배지검역을 요구하고 있는 식물은 수출검역을 받기 이전에 당해 식물의 재배중에 재배지검역을 먼저 받아야 한다.

제69조(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등) 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식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약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2. 냉동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3.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등

제70조(수입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 등을 수입할 수 있는 항만·공항·기차역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 :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선박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만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출입 허가를 받은 항만
2. 공항 :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의 이륙·착륙 허가를 받은 공항
3. 역 등 :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

제71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2조(식물검역증명서) ① 법 제8조에 의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



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택송 또는 이산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법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식물검역증명서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무환(無煥)으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公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식물
 5. 고열·건조·분쇄·압착 및 기타 밀폐포장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 고시한 식물
 6. 수출한 식물 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하는 경우

제73조(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 병해충·대상 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0와 같다.

제73조의 2(긴급수입제한)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긴급수입제한 식물은 수입할 수 없으며, 세부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이 정한다.

제73조의 3(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절 종자의 수출입

제74조(적용범위) 이 절은 종자산업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별표 1, 2와 같다.

제75조(수출입 신고범위등)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신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유전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입신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2. 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종자검정기관의 종자보증을 받은 종자

제76조(수입종자의 수입적응성 시험)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수출입신고의 특례) 법 제14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에서 정한 시험 또는 연구기관은 동규칙 제114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신고없이 수출입할 수 있다.

제78조(구비서류) 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법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종자보증서 1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함)

2. 품종목록등재 확인서 1부

제10절 종축등의 수출입

제79조(적용범위) 이 절은 축산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29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 또는 가축 인공수정용 정액, 난자 및 수정란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0조(수출입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한 『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제11절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수입

제81조(적용범위) 이 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자율안전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품질표시(이하“안전·품질표시”라 한다)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어린이보호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2조(안전인증 및 시료수입) ①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아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단,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는 경우 통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성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인증모델과 동일한 제조자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량별로 안전성 증명을 받은 공산품은 동일모델 확인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공산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82조의 2(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시료수입)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공산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한 자율안전확인시료확인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의 3(안전·품질표시) 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산품에 안전·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2조의 4(어린이보호포장 및 시료수입) ① 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과 동일모델의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와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한 공산품 사전통관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사전통관대상 공산품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85조(안전인증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안전인증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삭 제〉
6.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5조의 2(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대상)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신설〉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제12절 전기용품의 수입

제86조(적용범위) 이 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안전인증(이하“안전인증”이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자율안전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87조(안전인증 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2.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 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
3.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업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통관 전에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서”를 교부받아야 한다.(00-75호 개정)

제87조의 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용 확인서를 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안전인증의 표시등) 외국제조업체의 안전인증표시는 통관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표준원장이 고시한 사항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제88조의 2(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안전인증기관에 모델별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교부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2. 수입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
3.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 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통관 전에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88조의 3(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용 확인서를 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 4(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외국제조업체의 자율안전확인신고표시는 통관 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사항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절 계량기등의 수입

제89조(적용범위) 이 절은 계량에관한법률(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수입 및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형식승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90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등의 수입)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은 다음과 같다.(00-75호 개정)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신설>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신설>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② 삭제(2010.9.)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 2(형식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를 외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통관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정밀도 등의 표시 및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수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연구·개발·군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3.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

제91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시의 제출서류)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절 석유류의 수출입

제92조(적용범위) 이 절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1, 2와 같다.

제93조(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 별표 2에 계기된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대상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징수관으로부터 부과금확인서에 납부·납부면제 또는 납부유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절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

제94조(적용범위) 이 절은 원자력안전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또는 핵원료물질등(이하“핵물질”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방사성동위원소 등”이라 한다)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품 목	수출입신고대상자	요건확인 기 관
1. 핵연료 물질	법 제10조, 제20조, 제30조, 제35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	원자력 안전위원회
2. 핵원료 물질 등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필한 자	
3. 방사성 동위원소	가. 수출신고대상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사용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고를 필한 자 나. 수입신고대상자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허가를 받은 자	한국동위원소협회
4. 방사선 발생장치	가. 수출신고대상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고를 필한 자 나. 수입신고대상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허가를 받은 자	

제95조(수출입신고대상자 및 요건확인기관) ①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이하“수출입신고대상자”라 한다)와 요건확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6조(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요건확인절차) ①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은 각각 별표 1,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확인 세부요령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핵물질의 수출입대상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출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신고대상자는 한국동위원소협회장에게 수출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또한 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사용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는 통관전까지 법 제67조에 의한 시설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기기에 내장된 밀봉방사성동위원소 포함)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법 제67조에 의한 시설검사는 통관후 시행할 수 있다.

④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신고대상자는 법 제72조에 의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입 하는 경우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96조(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요건확인절차) ①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은 각각 별표 1,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확인 세부요령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핵물질의 수출입대상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출입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출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신고대상자는 한국동위원소협회장에게 수출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또한 법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사용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는 통관전까지 법 제56조에 의한 시설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기기에 내장된 밀봉방사성동위원소 포함)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의한 시설검사는 통관후 시행할 수 있다.

④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 신고대상자는 법 제60조에 의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입 하는 경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

제97조(적용범위) 이 절은 전파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중 별표 2에 계기된 품목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98조(수입요건) ①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시행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음
 - 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다.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2012.11.1 신설>
 - 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2012.11.1 신설>
 - 사.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종류의 기자재 <2012.11.1 신설>
 - 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2012.11.1 신설>
 - 자.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2012.11.1 신설>
 - 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2012.11.1 신설>
 - 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2012.11.1 신설>
 - 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2012.11.1 신설>
 - 파.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2012.11.1 신설>
 - 하.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2012.11.1 신설>
- ② <삭 제> <2012.11.1>

제17절 <삭 제> <2012.11.1>

제99조 <삭 제> <2012.11.1>

제100조 <삭 제> <2012.11.1>

제101조 <삭 제> <2012.11.1>

제18절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입

제102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수·출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수·출입등 허가의 취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및 법 제41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대한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부속서 I, II, III으로 규정된 규제대상종중에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파생물·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속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부속서 I :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2. 협약부속서 II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 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3. 협약부속서 III :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제103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승인)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품목)을 수출·재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제 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가.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함)
 - 다.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2. 재수출하는 경우
 - 가.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 I에 해당하는 동·식물)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가. 물품매도확약서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을 요하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을 기재한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부속서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함)

사.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부속서 Ⅲ에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② 협약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다음 각호의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식물방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을 검역받은 때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 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가 표기된 확인을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중 온시디움 팔레놉시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통관시 관계국가에서 발행한 수출등의 승인·허가서(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조항 후단의 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거래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되는 동·식물

2.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3.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수출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박물관용 동·식물 및 그 가공품과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제104조(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계획서

2.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3. 수송계획서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을 기재한 서류

제105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4.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106조(야생동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계기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수입 및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의 용도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 야생동물 관련학과가 설치된 실업계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이 그 야생동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소요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일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인 등이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명백하고, 앵무새·비둘기·고양이 등 애완용으로의 사육이 일반화된 동물로서 반입수량이 1인당 2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인공사육된 야생동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사육증명서를 첨부할 것
(나) 당해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야생동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고 야생동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등 수출·입, 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나. 당해 야생동물 등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라. 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cm, 세로 11.7cm 이상 크기의 사진(수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cm, 세로 4cm 이상 크기의 견본을 말함) 1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 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사용계획서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라. 보호시설의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의 경우에 한함) 1부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Ⅲ에 속하는 동물 등으로서 당해 동물등의 보호를 요청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바. 인공사육한 야생동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된 야생동물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제107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9의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수출(반출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생물자원이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108조(적용범위) 이 절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절에서는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09조(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의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1-83호 개정)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2001-83호 개정)
4.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등 당해 폐기물배출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하“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6.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별표 14-3의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을 적은 수출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입국
3. 수출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제110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인도일,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2. 인수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③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1조(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의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1-83호 개정)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 운반계약서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하“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입 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 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고자하는자의 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 첨부 (2001-83호 개정))
7.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8.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별표 14-3의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을 적은 수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국
3.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⑦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제1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당해 수입폐기물이 국내에 수입된 때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국내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 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을 반출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③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 이동서류”라 한다)를 지녀야 하며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인도일,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2. 수입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④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자

⑥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별표 14-4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⑧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⑨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1-83호 개정)

제114조(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①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표지부착등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재활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15조(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 제109조제1항제6호 및 제1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00-75호 개정)

1. 수출의 경우 : 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times 1 \div 1,000$

2. 수입의 경우 : 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 $\times 1 \div 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폐기물의 처리비용 $\times 1 \div 1,000$ (2001-83호 개정)

제20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116조(적용범위) 이 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이하 이륜차 포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자기 인증의 수입절차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출입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17조(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 별표 2에 계기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 및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자기인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인증서 제출자 및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한 수입자가 계속하여 동일 차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제출서류) ①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1부
2. 자동차 소음인증 신청서 1부
3. 자동차 상세제원 설명서 1부

②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자 : 동 규칙 제39조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 동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신청서 및 동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 또는 동 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동 규칙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측확인신청서

제119조(확인기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검사 및 자기인증의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다.(03-52호 개정)

1. 배출가스·소음확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형식승인등 확인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제120조(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의 면제) ①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면제한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 제작자, 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수입 하는 자동차
7. 전기·태양광 또는 수소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8.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 ②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생략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생략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시설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교통에 사용 되는 도로에서 운행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8. 관세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신규제작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10. 자동차 공해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개발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경유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말함),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등.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이하 제작하는 경우에 한함
 - ③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등을 면제한다.
 1. 이삿집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상 수입승인 면제규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
 2.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 가.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나.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 자동차
 - 다.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한 차량을 수입한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거나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제121조(자동차의 수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마친 후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

제21절 산업안전보건 관련품목의 수입

제122조(적용범위)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수입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23조(수입요건) ①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물질은 시험·연구용의 목적 외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별표 2에 계기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③ 별표 2에 계기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별표 2에 계기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전에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 별표 2에 계기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⑥ 제1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계기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중 개별제품심사 대상품, 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품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기관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수리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에 있어서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등은 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고, 가설기자재는 공단 및 한국가설협회로 하며,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는 공단, 한국승강기



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로 한다.

제124조(수입요건 구비서류 등) 제조등 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 구비서류와 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수입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실 수요자가 교부받은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수입신고) 별표 2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126조(적용범위) 이 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제127조(수출승인) 별표 1에 정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8조(수입허가) ① 별표 2에 정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② 별표 2에 정한 품목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특정물질(혼합물 포함) 수입업자는 법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5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금을 통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한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수출입신청등)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 년도 중에 수출 및 수입할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승인 및 수입허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0-75호 개정)

제130조(수출입가능국) ①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의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이절에서는 “의정서”라 한다) 가입국에 한한다.

②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Ⅲ군 내지 제Ⅴ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런던 개정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2011.12신설)

③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Ⅵ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및 북경 개정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 단, 코펜하겐 개정의정서 및 북경

개정 의정서 미가입국 중 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와의 수출입 제한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2011.12신설)

④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1의 제Ⅶ군 및 제Ⅸ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코펜하겐개정 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2011.12신설)

⑤ 별표 1, 2에 정한 품목 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Ⅷ군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북경 개정 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2011.12신설)

제131조(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의 수입제한) 다음에 계기한 범위에 속하는 제품중 시행령 별표 1의 제Ⅰ군 및 제Ⅱ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비가입국으로 부터는 수입할 수 없다.

〈 오존층 파괴물질 포함제품 목록 〉

제 품 명	H S
1.자동차 및 트럭 공기조절장치(차량에 부착여부 불문)	HS 8701~8705
2. 가정용 및 상업용 냉장고, 공기조절장치 및 열펌프	HS 8415.10~83, 8418.10~40, 8418.61~69
3. 의료용을 제외한 에어로졸제품	HS 0404.90, 1517.90, 2106.90, 2710. 3208~3210, 3212.90, 3303.00, 3304.30, 3305~3306, 3307.10~30, 3307.49~90, 3402~3403, 3405.10~20, 3606.10, 3808, 3809.10, 3814.00, 3910.00, 9304.00
4. 휴대용 소화기	HS 8424.10
5. 단열판재, 파이프커버	HS 3917.21~39, 3920.10~99, 3921.11~90, 3925.90, 3926.90
6. 원료수지(프리 폴리머)	HS 3901 ~ 3911

주) 개인용 또는 가정용 물품이나 관세가 면제된 비상업적인 물품을 탁송할 경우에는 제외함

제23절 건설기계의 수출입

제132조(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건설기계의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33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 품목별수입요령 별표 2에 계기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신고, 동일형식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이하 “형식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제출서류)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한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5조(확인기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와 시행령 제11조의 형식신고대상 건설기계는 검사대행자에게 신규등록검사를 받아야 한다. (03-52호 개정)

제136조(형식승인등의 면제) 다음 각호 1의 건설기계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 등을 면제한다.

1. 건설기계제작. 조립자가 신규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 건설기계
2.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건설기계

제137조(건설기계의 수출) 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까지 당해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등록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의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절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

제138조(적용범위) 이 절은 먹는물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 샘물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39조(수입허용기준) ① 먹는 샘물등은 법 제3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② 용기의 재질시험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40조(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수처리제 및 용기는 제외함).

제141조(먹는샘물등의 수입신고) 먹는 샘물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는 수입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포함)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부
2. 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먹는 샘물에 한함)
3. 내용증명서(송장) 사본 1부
4. 선적증명서 사본 1부
5.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1부 (먹는 샘물에 한함)
6.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
7.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함)
8. 먹는 샘물의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적합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142조(수입신고의 면제)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먹는 샘물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먹는 샘물
2. 제1호의 기관에 소속된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먹는 샘물

3.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먹는 샘플
4.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특성 및 수량이 연구목적에 합당한 것
5.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것
6. 「관세법」 제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먹는 샘플등 이외에는 수입할때 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3조(먹는 샘플등의 표시) 수입하는 먹는 샘플등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사항이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수출국의 언어등 병기 가능)

- | | |
|--------------------------|---------------------------|
| 1. 품목명 | 8. 보관상의 주의사항 |
| 2. 제품명 | 9. 반품 및 교환장소 |
| 3. 업소명(소재지, 전화번호 등) | 10. 수원지 및 원수원 |
| 4. <삭 제> | 11. 무기물질 함량표시 |
| 5. 유통기한 | 12. 원재료 및 함량(수처리제에 한함) |
| 6. 수입판매업 등록번호(먹는 샘플에 한함) | 13. 자가기준 및 규격표시(수처리제에 한함) |
| 7. 내용량(용량, 수량 또는 중량) | 14. <삭제> |

제25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수입

제144조(적용범위) 이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자원절약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6조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표 11, 이하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 환경성보장제 적용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45조(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삭제(2006.6.29)
3. 부동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한다)
4. 껌
5. 1회용 기저귀
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 제품과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

가. 별표12의「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수입제품 및 그 포장재

나. 별표12의「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입 제품의 포장재

다. 도·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2.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3. 별표12「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업종」에 해당되는 플라스틱제품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가.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한 제품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다.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획득된 차량

(2) 「군수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어선

(6) 「항공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7) 「철도사업법」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 차량

마.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 법 제21조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③ 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다.

1. 수입액 미화 9천불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투입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수입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0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제146조(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자원절약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 9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의한 먹는 샘물을 말한다)
 -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
 -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제품, 제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 바. 부탄가스제품
 -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2. 전자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종량제 봉투는 제외)
4. 다음 각목의 전지류(내장품·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 가. 수은전지
 - 나. 산화은전지
 - 다. 니켈·카드뮴전지
 - 라.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한다)
 -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6.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및 자동차
- 가. 텔레비전
- 나. 냉장고
- 다. 세탁기(가정용에 한한다)
- 라.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을 제외한다)
-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키보드를 포함한다)
- 바. 오디오(휴대용은 제외 한다)
- 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 아.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는 자원순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 자.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자원순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대상으로 한정한다)
- 차.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자원순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대상으로 한정한다)
- 카.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 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파.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재로 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제147조(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은 별표12와 같다.

제148조(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등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

- 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등을 수입하는 자는 자원절약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대상일 경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등을 수입하는 자는 자원절약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말까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15일

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③ 자원순환법 적용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선언 등 사전예방의무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후관리의무(별표 12-1)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제26절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

제149조(적용범위) 이 절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과 「화학 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0조(특정화학물질의 범위) 특정화학물질의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제151조(수출입 허가) ① 특정화학물질중 1종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른다.

제152조(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 특정화학물질중 1종화학물질의 수출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물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도일 또는 인수일의 4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입허가증 사본
2. 선하증권(B/L)사본 또는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3조(수출입 실적신고)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연간 수출입실적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절 염의 수입

제154조(적용범위) 삭제(02-53호)

제155조(수입신고) 삭제(02-53호)

제156조(수입부담금의 납부) 삭제(02-53호)

제157조(사용증명서의 제출) 삭제(02-53호)

제28절 축산물의 수입

제158조(적용범위) 이 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제159조(수입허용기준) 축산물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60조(축산물판매업신고) ①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 및 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축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15조 및 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지원장 및 출장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축산물수입신고서 1부(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법시행규칙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만 해당한다)
4.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2조(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2. 여행자가 휴대한 것·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4.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축산물
5. 그 밖에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제163조(수입축산물의 표시) 수입한 축산물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영업자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5. 유통기한
6. 내용량(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
7.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성분명과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10. 그 밖에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29절 사료 등의 수입

제164조(적용범위) 이 절은 사료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입신고대상 품목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료(이하 이 절에서 “사료 등”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2에 계기한다.(02-53호 개정)

제165조(수입허용기준) 사료 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료 등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제166조(사료 등의 수입신고) ① 사료 등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이하 이절에서는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이절에서는 “사료관련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며, 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제조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신 고 기 관	신 고 대 상 자	구 비 서 류
○농협중앙회 (2001-83호 개정) ○사)한국사료협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자 - 양축농가 등에서 자가용으로 수입할 때에는 농협중앙회에 신고	○사료성분등록증 사본1부(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수입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사료검정증명서 1부(법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검정인정기관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함)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따름)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제1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증명서 2부(BSE 관리 대상품목에 한함)
○사)한국단미사료협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미사료 · 보조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자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중 사료검정증명서는 사료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7 3호, 2009.9.2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02-53호 개정)



③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또는 잠정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한 국가로부터 생산된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등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유래 품목”이라 한다)은 사료등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통합공고 별표2의 BSE 관련 관리대상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료검사요령 제17조 및 제24조에 의거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국의 증명서를 사료관련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53호 개정)

1. BSE 관련 수입금지지역(국가)에서 BSE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등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증명서 또는 BSE 미감염증명서 2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등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에 대해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리대상품목을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2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제167조(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 등은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02-53호 개정)

1.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등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등

제168조(수입사료 등의 표시) 사료등을 수입하는 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등의 포장지 또는 내용 설명서에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02-53호 개정)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사료의 용도 또는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경우에 한함)
6. 주의사항
7. 실중량 kg(톤)
8. 제조(수입)연월일
9.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10. 재포장내용
11. 사료공정서(농림수산물식품부고시 제2011-125호, 2011.7.13) 별표 제8에서 정하는 사항

제30절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제169조(적용범위) 이 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제170조(수입허용기준) 건강기능식품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171조(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 및 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수입업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서를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72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8조 및 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1부(법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운반용 포장 등으로 포장지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3.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 필증의 교부 또는 부적합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제173조(건강기능식품표시) 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
6. 영양정보(영양소 및 함량과 그 기준치 또는 영양권장량에 대한 배율을 포함)
7. 기능정보(기능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의 지표성분 및 그 함량을 포함)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9. 원료명 및 함량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31절 인체조직의 수입

제174조(적용범위) 이 절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인체조직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은 제외한다.

1. 자가이식용 조직
2. 약사법·의료기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

제175조(인체조직의 수입허용기준) 인체조직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 제조원별로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인체조직안전성심사를 받아 적합한 조직만을 수입할 수 있다.

제176조(조직은행의 허가) ① 인체조직은 조직은행만이 수입할 수 있다

②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시행령 10조와 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조직은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7조(인체조직의 통관절차) ①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입인체조직안전성심사를 받은 후 매 수입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 표준통관예정보고서 1부.
 2. 수입 인체조직 안전성심사 결과통지서 사본 1부
- ② 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인체조직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조직은행, 납세의무자, 공급 조직은행, HS번호, 조직품목, 조직의 세부명칭, 수량, 단가, 금액, 결제기간 및 가격조건, 국내도착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절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제178조(적용범위) 이 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79조(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별표 2에 계기된 용기 등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동일형식의 용기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제출서류 및 확인기관)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법 영 제5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81조(제조등록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 등은 법에 의한 제조등록을 면제한다.

1.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검사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줄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 8의2.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제182조(수입신고) 별표 18의 고압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고자 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절 수출입 수산동물 검역

제183조(적용범위) ① 이절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이식용 수산동물(이하 이 절에서는 “이식용”이라 한다.)
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3. 수산동물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제184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법 제27조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한다.

1. 수산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이 공고한 경우
2. 법제24조제1항 단서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3.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이식용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5.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
6.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인 경우



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정검역물은 별표 2와 같다.

제185조(수출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제186조(수입금지) ① 법 제24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인 수입허가 증명서를 제출한 수산동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

제187조(수입장소) 법 제29조에 따른 수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항구 :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동해항·평택항·목포항·통영항·삼천포항·여수항·포항항·완도항·속초항

2. 공항 :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제188조(검역시행장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시행장 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이 지정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서 실시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189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1-83호, 2001. 7.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200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1-157호, 2002. 1. 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표>1.원료의약품 수입시 구비요건중 원료의약품GMP(BGMP)증명서 구비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02-53호 개정)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2-53호, 2002. 5.18)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31조제1항<표>1.원료의약품 수입시 구비요건중 원료의약품GMP(BGMP) 증명서 구비는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2. IOTC, ICCAT 협약상의 수산물중 [별표1]의 '0302-34', '0303-44', '0304-10', '0304-20', '0304-90', '1604-14' [별표2]의 '0302-34-0000', '0302-44-0000', '0304-10-1090', '0304-20-9000', '0304-90-1090', '0304-90-9000', '1604-14-1011', '1604-14-1012', '1604-14-1019', '1604-14-1031', '1604-14-1032', '1604-14-1039', '1604-14-9000' 품목의 동 협약상 개정 수출입요령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2-88호, 2002. 9.2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2-131호, 2003. 1. 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중 2호, 6호 금지식물의 개정분은 2003.5.15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3-52호, 2003. 7.24)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향정신성의약품 품목중라호 6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66.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의 수출입요령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3-94호, 2004. 1. 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4-79호, 2004. 7.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5-41호, 2005. 4. 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5-64호, 2005. 6.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산자부고시 제2006-3호, 2006. 1. 1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42호, 2006.12.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66호, 2008.1.7)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호, 2008.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중 천일염(2510-00-10-20)의 수입요령은 2008.3.28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7호, 2008.1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4호, 2008.12.)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호, 2009.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1호, 2009.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2호, 2009.8.)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2호, 2009.1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9.12.20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6호, 2009.12.)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67호, 2010.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4.5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2호, 2010.1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9호, 2011.01.)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74호, 2011.04.)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196호, 2011.09.)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000호, 2011.12.)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01.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256호, 2012.10.23)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 11.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전문

14차 개정 2012. 05. 0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과 국가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삭제 (2009.11.02)
3. 「원자력법」
4. 「방위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
2.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전략물자의 이전을 위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代價)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기타 거래(무상 이전 포함)에 관한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분할선적”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탁가공무역”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최종수하인으로 본다.



8. “최종사용자”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등(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2조에 따른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본문, 별표, 별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3조(허가의 유형) ①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중개허가, 상황허가 및 경유·환적허가로 구분한다.

- ②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 ③포괄수출허가는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기관) ①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5 (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별표 3 (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및 기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반방산물자 제외)와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 으로 사용할 경우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전략물자와 함께 수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이 수출허가를 한다.
- ③제3조제1항의 상황허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제5조(사전판정기관) ①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 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12항제1호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업무를 위 탁한다.

-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전략물자관리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으로부터 판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과 같다.

제2장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등

제7조 삭제 〈2009.11.02〉

제8조(자가판정) ①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

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기술 해당여부 확인은 사전판정기관에 의뢰하는 판정에 한한다.

제9조(사전판정의 신청)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하는 무역거래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2부(신청자용, 사전판정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2. 그 밖에 사전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사전판정의 처리) ①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판정의 효력) ①제10조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당초 전략물자로 사전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12조(통제품목에 대한 의견제출)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의 기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제13조 삭제 (2009.11.02)

제14조 삭제 (2009.11.02)



제4장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1절 수출허가 총칙

제15조(수출허가의 일반원칙) ①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16조(수출허가의 지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수출시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적용하며, 재수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수출의 경우,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가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으로 규정된 모든 전략물자의 불법사용,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조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통제품목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약정을 각각 체결하여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수출을 허가한다.
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한다.
2. 별표 6의 “나”지역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최종 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수출허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관련 일반 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품목1 및 품목2를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3항 E호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포함하는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 1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수출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수입자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한다.
2. 제15조제1항의 수출허가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5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2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
4. 3종 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재인도 금지, 종류 및 양, 최종사용 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술된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 시 군사용으로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3(군용물자)중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 기술 수출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개별수출허가

제18조(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라 함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신청 전에 대하여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허가지역의 구분)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1. 가 지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
2. 나 지역 : 제1호 이외의 국가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 ①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
 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7.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2. 기술수출계약서(국·영문) 1부
 3.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수출허가 기술 명세서 1부
- ③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핵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 분말(순도 99.9% 이상),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물품등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수출자는 이 경우 이미 제출한 판정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발급번호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한 수출건의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④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관련 원자력전용품목 및 이중용도품목을 핵공급국그룹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⑤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한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진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되 재반입 조건인 경우
3.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제5항은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기관의 장의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가
 3.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②별표 4의 핵공급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 여부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동·설계·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부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산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 여부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 여부

③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미칠 영향
2. 해당 품목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준
3.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4.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증된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5.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협정에 적합한 지 여부

④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신청자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수출허가의 처리) ①전략물자 수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수입국 현지 조사

②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기술 수출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최종 목적지(국가) 및 최종 사용자의 변경
2. 해당 품목의 사용용도의 변경
3. 해당 품목 이외의 통제번호가 다른 기술의 추가 등

③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출허가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락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수출자(당초 수출자가 지정한 수리업체 포함)에게 반송하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전락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락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후 전락물자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락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과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로서 수출가액이 미화 3천불 이하인 경우(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으로 수출되는 경우, 동일 수입자와의 연간거래가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별표4의 “2B001”(공작기계와 전용설계된 부품), “2B201”(공작기계와 그 부품), “2B350”(화학물질 제조설비, 장비 및 부품)에 해당하는 전락물자를 별표 6의 “가”지역(“나”지역을 경유할 경우 제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9.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다만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암호화품목등(5A002.a,1,2,5,6,9, 5B002, 5D002, 5E002)을 별표 6의 “가”지역 또는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에 수출하는 경우(민간 최종사용자의 내부개발 또는 생산 용도에 한하며,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지역 수출시 또는 전락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물자 수출시 최종사용자가 해외 본사 또는 현지법인(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만 해당)인 경우. 다만,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품목 및 민감·초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되어 수출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 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은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 ③제1항제8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허가의 유형) 각 항에 속하는 제반 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 ②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세관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수출허가서의 반환) 제23조에 따른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수출허가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포괄수출허가

제29조(일반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일반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 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6의 “가”지역으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별표 6의 “가”지역에 소재한 위탁자와 수탁자공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목적지가 “나”지역일 경우라도 일반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8(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에 정한 전략물자를 일정기간 수출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제2항에 따른 일반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특정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특정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 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6의 “나”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같은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출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권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특정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자 및 수출품목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별표 8에 정한 전략물자를 특정포괄수출허가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2. 향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 대하여 별표 8에 정한 전략물자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포괄수출허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제2항에 따른 특정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1조(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제29조에 따른 일반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를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 제2항의 특정포괄수출허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0조에 따른 특정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2.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4.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5.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2조(포괄수출허가의 처리) ①제29조 또는 제30조의 포괄수출허가신청을 받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제32조에 따라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포괄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HS 번호 및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다른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2. 최종수하인이 추가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9조의 일반포괄수출허가 : 3년 이내
2. 제30조의 특정포괄수출허가 : 2년 이내

제35조(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59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64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6조(적용배제)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의 기술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재수출허가 및 경유·환적허가

제37조(재수출허가) ①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재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재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제2절 개별수출허가에 정한 관련 조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수출허가를 한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재수출허가의 면제 및 적용배제) ①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출 허가를 면제한다.

1. 해당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이하(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이하)인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 그 물품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②제1항은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전략물자등의 경유·환적허가)

①법 제23조 제3항에서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라 함은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경유·환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
2.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제2항의 경유·환적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2절 개별수출허가에 정한 관련 조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

제39조(상황허가의 대상) ①「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 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나”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해당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 등이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우려거래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상의 특별조치 관련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로서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게시된 자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 2에 해당되는 품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별표 6의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대량파괴 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그 물품등을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 하였거나 또는 그 해당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제1항제13호나 제14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호의 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 허가를 면제한다.

제40조(상황허가의 신청) 제39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상황허가신청서 3부에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판정을 받은 품목의 허가신청시 신청서에 사전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제41조(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 ①제40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 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2. 제16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40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39조와 제40조에 따른 상황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허가서 반환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보고에 관한 사항

제42조(중개허가의 대상)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해당 중개관련 당초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제43조(중개허가의 신청) 제42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중개허가신청서 2부에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가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1부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중개품목의 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4조(중개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 심사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1. 제15조의 수출허가의 일반원칙
2. 제16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43조에 따른 중개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
2. 허가서 반환

제6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45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제45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47조(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 ①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 및 일자

제48조(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신청) ①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제47조 또는 제48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목적 확인서에 반환사유서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0조(관인날인 및 적용배제) ①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18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①제45조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다시 수출(유상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된 전략 물자·기술의 제3국 유출 및 불법수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53조(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의 최종목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 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통관증명서 미획득 보고) 전략물자 수출자가 해당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53조제1항의 통관증명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수입목적확인서가 요구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 등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3부



(신청비용, 수출비용, 세관용)에 전락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6조(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제55조에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등

제7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57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다)를 갖추고, 「전락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락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제58조(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①제57조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을 위한 「자율수출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2. 전락물자 해당여부 판정,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및 수출심사 절차
3. 출하관리
4. 감사
5. 교육
6. 문서관리
7.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8. 보고
9. 벌칙

②무역거래자가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별표 7의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안)」을 참고할 수 있다.

제59조(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 원칙)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은 자사의 사업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독립성 : 자율수출관리기구는 자사의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2. 책임성 : 전락물자 해당여부 판정, 거래상대방에게 통지, 거래 심사 의뢰, 수출허가신청, 출하 등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수출통제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60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신청) ①자율준수체제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무역거래자는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3.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율수출관리규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을 한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40일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및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보유 여부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 및 사용용도 파악 능력 보유 여부
3.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보유 여부
4.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제61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9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의 부여
2. 제20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이 가능하며, 또한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제출 면제
3. 최종사용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2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해외 분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제20조의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면제
4. 제31조의 포괄수출허가 신청시 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수하인에게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의 서류 제출 면제
5. 3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2조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다만, 이 경우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6. 전략물자가 소관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동 물자 수출시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시 제23조의 수출허가 처리기간을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다만, 원자력전용품목·군용물자품목은 제외)

제6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2. 반기보고 :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중개 실적 및 심사자료, 포괄허가 수출실적 및 포괄



수출허가 변경내용. 다만, 실적 등 보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보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개와 관련하여 제4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실적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제62조의 보고의무 사항과 전략물자생산·수출 실적 및 자율준수체제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변경 및 특례 제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0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정·보관·거래상대방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2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후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 또는 제61조제2호의 서류 제출 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61조에 따라 부여받은 자율관리 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적용배제) 기술만을 수출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의 전략물자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66조(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정관련: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략물자 사전판정서 등의 판정 자료
2. 삭제 (2009.11.02)
3.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4. 수입 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제67조(자료의 공개)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사전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전략물자 품명
2. 규격 및 성능
3. 통제번호

제9장 보 칙

제68조(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의 지정 및 공고) 제4조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략물자 수출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69조(벌칙의 적용) ①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및 제57조(양벌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방위사업청장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는 「방위사업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70조(보고·검사 등) ①「대외무역법」 제4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국
2.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거래자 및 사용목적
3.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운송수단·환적국(換積國)·대금결제방법
5.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수출한 경우)

②별표 2의 제10부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법」 제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4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1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 전에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삭제 (2009.11.02)

제72조(교육명령) ① 대외무역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교육이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 발송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 : 허가의무 위반자 등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 관련교육기관의 장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제73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식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74조(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 그 변경사유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소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정 2004.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략기술수출공고에 따라 전략기술수출승인과 관련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②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23호(2002. 12)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5호(2003.5)는 폐지한다.

부 칙 (2차개정 2005.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3차개정 2006. 9.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과학기술부 고시 제2005-34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7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4차개정 2007.4.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2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4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② 이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이전까지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장”으로 본다.



부 칙 (5차개정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1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6차개정 2008. 8.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61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7차개정 2009.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18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8차개정 2009. 7.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고시를 재검토 한다.

부 칙 (9차개정 2009.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부 칙 (10차개정 2009. 11. 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5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부 칙 (11차개정 2010. 11. 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부 칙 (12차 개정 2011.3.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7호)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3차 개정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차 개정 2012.05.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수출에 대해 상황허가 의무위반 등에 따른 수출입의 제한, 벌칙, 과태료, 보고와 검사 및 교육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5.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 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시행 2012.10.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9호, 2012.10.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수출·수입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착항”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또는 수출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김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라 함은 WTO에 가입한 별표2-1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다이아몬드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를 말한다.
3.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함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 분류에 의하여 HS 7102.10, 7102.21, 7102.3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4. “분쟁 다이아몬드”라 함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국 내의 반군이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군비조달목적으로 거래하는 제3호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말한다.
5. “김벌리 프로세스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라 함은 제2호의 김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에 대하여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김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한다.
6.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제한내용과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1-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의 허가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 정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김벌리 프로세스 관련 다이아몬드 원석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절 수출입제한 및 수출허가기관 등

제2-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국가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모든 국가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2-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별표 2-1에 규정된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수입을 금지한다.

② 회원국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국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2절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절차

제2-3조(수출허가신청)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수출허가 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한 전자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1항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출허가처리)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 증명서 3부(수출허가기관용, 선적용, 신청자보관용)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거나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2-1에 규정된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3.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 거래하려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분쟁 다이아몬드로 판명되는 등 국제정세 변화 및 안보상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증명서의 반환)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가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초과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그 증명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증명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3. 분실된 증명서의 경우 발견 시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서약서

제2-9조(증명서 기재내용의 변경) 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분할선적을 하는 등 사정의 변화에 따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신청 시와는 무역거래자, 거래품목, 수량, 금액, 교역대상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수출신고 전까지 즉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0조(삭 제)

제2-11조(선적요령)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역거래자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증명서를 동봉하여 선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하는 용기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 외 다른 물품 등을 함께 동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2조(세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 세관장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통관시에 증명서의 유무 및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증명서가 없거나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세관장은 수출물품과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증명서가 동봉된 용기에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의한 확인증을 포장이음새에 붙여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상대 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가 동봉되지 않았거나 수입물품과 상대회원국이



발급한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통관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 세관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통관시킨 경우 통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 회원국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제3절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관리체제의 수립

제2-13조(통계자료 구축)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전산처리
가 가능한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에 관한 사항
2.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에 관한 사항

제2-14조(무역거래자의 의무) ①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수입하는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상대 회원국 무역거래자의 상호 및 주소
 2. 수출·수입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 및 수량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증명서
 4. 제2-12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국내 유통할 경우 거래자 상호, 주소, 거래량
및 거래금액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거래자에게 제1항 각호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역거래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5조(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수입
한 무역거래자가 지켜야할 자체적인 수출입 관리의 기준이 되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및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수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라크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라크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이라크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3-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은 이라크에 수출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라크정부 및 이라크에 주재하는 미·영
등 연합당국에 대한 물품 등은 제외한다.

1. (삭 제)

2. (삭 제)
- ② (삭 제)
- ③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HS 97류)은 수입할 수 없다.

제4장 라이베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4-1조(적용범위) 이 장은 라이베리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4-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라이베리아 UN평화유지군(UNMIL)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자,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라이베리아 정부에 대한 물품 등
 4.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4-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4-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시에라리온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5-1조 (삭 제)

제5-2조 (삭 제)



제6장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6-1조 (삭 제)

제6-2조 (삭 제)

제7장 소말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7-1조(적용범위) 이 장은 소말리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소말리아에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3.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군용장비, 기술훈련 및 지원
 4. 소말리아 안보체제의 개발지원을 위한 공급 및 기술지원
 5. 소말리아 과도연방정부의 해적 소탕에 협조하기 위한 회원국 및 지역 기구용 무기, 군용장비 및 기술지원

제7-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7-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7-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장 르완다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8-1조 (삭 제)

제8-2조 (삭 제)

제9장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9-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코트디부아르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코트디부아르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9-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코트디부아르에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 ②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이아몬드 원석은 수입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코트디부아르 UN평화유지군(UNOCI) 및 프랑스군 사용 및 지원용도의 공급 및 기술지원
 2.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3.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4. 국제법에 따라 자국민 대피를 위한 군병력의 사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공급
 5. 리나-마르쿠시스(Linas-Marcoussis) 협약에 따른 국방 및 보안군 재건을 위한 무기 및 관련물자, 기술훈련 및 지원
 6. 코트디부아르 정부보안군의 공공질서 유지용 비살상용 장비(단, 차량 제외)

제9-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9-2조제3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9-2조제3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장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0-1조(적용범위) 이 장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비정부단체 및 콩고민주공화국의 개인에 수출할 수 없다.〈별표10-1 삭제〉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콩고임무단(MONUC) 사용 및 지원용도의 무기 및 관련물자,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10-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10-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0-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장 수단공화국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1-1조(적용범위) 이 장은 수단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Darfur 지역 내 Janjaweed를 비롯한 모든 비정부 단체 및 개인, N'djamena 휴전협정 당사자 및 여타 교전 당사자들에게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UN의 승인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평화활동을 위한 공급 및 관련 기술훈련 및 지원
 2. UN, 인권유린 감시,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한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3. 인권유린 감시,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훈련, 지원
 4. 수단 남북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 및 공급

5. 수단 정부의 요청에 따라 UN 수단 제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한 Darfur 지역으로의 군용물품 등 이전

제11-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11-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장 에리트레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2-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에리트레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에리트레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12-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제13장 레바논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3-1조(적용범위) 이 장은 레바논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레바논 정부 또는 UN레바논평화유지활동(UNIFIL)이 승인한 무기
2. 1호와 관련된 물자, 훈련, 지원

제13-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13-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3-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장 리비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제14-1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리비아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
2. 리비아를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

제14-2조(특별조치의 내용) 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출·수입 및 제공 또는 이전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무장용병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2. UN, 언론매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단체 인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방탄복, 군용헬멧 등 방어용 의류, 소형무기, 경무기 및 그와 관련된 물자
3. 리비아당국에 대한 치안유지 및 비무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무기와 그와 관련된 물자 및 기술적 지원, 훈련, 금융 및 기타 지원

제14-3조(수출허가절차) ① 제14-2조제2항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4-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장 재검토기한

제1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219호, 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1〉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회원수 (77개국)
한글표기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 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가나,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콩고공화국,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카메룬
* 베네수엘라는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을 중지함 *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UN 제재하에 있으며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하지 않음
영문표기 Angola, Armenia, Australia, Bangladesh, Belarus, Botswana, Brazil,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in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ote D'Ivoire*, Croatia, the European Community, Ghana, Guinea, Guyana, India, Indonesia, Israel, Japan,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Laos, Lebanon, Lesotho, Liberia, Malaysia, Mauritius, Mexico, Namibia, New Zealand, Norway, Russian Federation, Republic of the Congo, Sierra Leone, Singapore, South Africa, Sri Lanka, Switzerland, Tanzania, Thailand, Togo,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Venezuela*, Vietnam, Zimbabwe, Swaziland, Republic of Cameroon
* Venezuela has voluntarily suspended exports and imports of rough diamonds untill further notice. * Cote d' Ivoire is currently under UN sanctions and is not trading in rough diamonds.

〈별표 9-2〉 삭제
 〈별표 9-3〉 삭제
 〈별표 10-1〉 삭제



[별지 2-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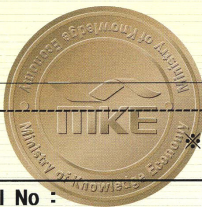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 신청서

처리기간 : 7일

수출 다이아몬드 세부명세					
HS code	carat 혹은 중량	포장갯수	원산지	가격(US\$)	목적지
선적항 :			도착항 :		
수출자			수입자		
무역업고유번호 :			국 가 :		
상 호 명 :			상 호 명 :		
주 소 :			주 소 :		
대표성명 :			대표성명 :		
대외무역법 제5조 및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상기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출 하려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동 조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 다이아몬드가 아님을 확인하며, 분쟁 다이아몬드로 판정될 경우 수출허가가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210m/m × 297m/m

[별지 2-2호 서식]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Republic of Korea)					
Approval No : KR - - -					
Description of rough diamonds					
HS code	carat weight/mass	number of parcels	country of origin	value in US\$	country of destination
Exporter			Importer		
Name of Firm :			Name of Firm :		
Address :			Address :		
Name of Rep :			Name of Rep :		
Date of issuance :			Date of expiry :		
" The rough diamonds in this shipment have been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at the 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Scheme for rough diamonds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지식경제부 장관 					
					
※ Confirmation of Import					
Approval No :					
Country of Destination :					
Importing Authority :					
Date of Receipt :					
Signature or Stamp of the Importing Authority _____					
Return to : Export Control Policy Divisio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 JungAngDong, Kwachon, Korea					



[별지 2-3호 서식]

This parcel has been inspect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Scheme for rough diamonds. This can be opened by the authorized agency of importing nation



6.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개정 제2011- 28호 (2011. 7. 07)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에 따른 원산지확인과 같은 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8. 12.9, 2011.6.21)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라 함은 세관직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시확인”이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21)
3. “최종구매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내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개정 2008.12.9)
 -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동 물품의 실질적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자
 -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증자
4. (신설 2008.12.9, 삭제 2009.7.27)
5.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이란 상표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의해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요구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7.27)
6.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11.6.21)

제1-3조(적용범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협정 관련 법령 등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산지 확인서류 및 절차

제2-1조(원산지증명서)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1.6.21)

1.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양허관세(APTA)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GSTP)

5. 기타 협정 등에 의해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편익관세(법 제74조) 등 특혜관세율을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적용배제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③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는 별표3, 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는 별표3-1,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협정이 변경되거나 발행기관이 변경 통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⑤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회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원산지증명서는 동일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원산지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①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별지 제3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 관련 입증 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 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서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21)

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규정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경유지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후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 내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상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B/L사본 및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허가서 등 운송서류에 의해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B/L사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적 또는 일시장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우리나라로 수출하였으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하였고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3.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및 직접운송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2항의 증명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④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원산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행기관·발행일자와 함께 당해 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4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 또는 법령에 따른 적용 양식과 일치여부
 2. 증명서 발행기관명, 스탬프, 발행담당자 및 서명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원산지증명 인증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Origin Criterion)이 법령·협정 및 제2-1조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 ②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Reference No), 발행일자
 2. 발행국가, 발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 ③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스탬프·서명 등의 식별곤란 및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 되는 경우 원본을 징구하여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 ④세관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원산지소명서 등 구비자료가 협정 또는 법령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조회) 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이하 “원산지증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 등의 진위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 등의 원본 또는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 ②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 등을 발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조회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그 처리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7.27)
- ④원산지증명 등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월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9, 2011.6.21)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 확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6.21)
5. 국내 보세공장·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실질적변형을 초래하는 제조·생산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협정상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 하도록 규정된 경우로서 당해 제조업체에서 부가가치·세번변경 등 협정이나 법령에 의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경우

제2-7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 ①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개정 2008.12.9)

1.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2. GSP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GSTP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GATT TNDC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 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홈페이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 및 수출신고번호 등 원산지증명 발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③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 (별표2)에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용, 수입자용)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분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발급” 또는 “Reissue”등의 표현으로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전자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⑥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자의 제조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인사იდ동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등록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을 경유 특혜 공여국에 등록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법, FTA이행특례법,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지식경제부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9)



제3장 원산지표시의 원칙

제3-1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원칙적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 하여야 한다.

④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6.21)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

③별표5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약사법·식품위생법·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12.9)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로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8.12.9)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⑤별도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물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9.17)

제3-3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6과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8.12.9)

②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08.12.9)

제3-4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9)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
(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을 UK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개정 2010.9.17)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신설 2011.6.21)

제3-5조(원산지표시의 면제) ①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에 포함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1.6.21)

제3-6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개정 2008.12.9) ①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날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제1항에 의한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12.9)

1.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7)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같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9, 2010.9.17)

③ (신설 2008.12.9, 삭제 2010.9.17)

④ (신설 2008.12.9, 삭제 2009.7.27)

⑤ (신설 2008.12.9, 삭제 2009.7.27)

제4장 원산지확인

제4-1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된다.(개정 2008.12.9, 2009.5.1, 2011.6.21)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개정 2008.12.9, 2009.5.1, 2011.6.21)
2.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장(개정 2008.12.9)
3.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개정 2009.5.1, 2011.6.21)
4. 관세청 특수통관과장(개정 2009.5.1, 2011.7.7)
5.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개정 2009.5.1, 2011.7.7)
6. 관세평가분류원장(개정 2009.5.1, 2011.7.7)
7.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 만료되거나 3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21)
- ⑤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11.6.21)

제4-2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확인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물품
4. 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개정 2011.6.21)

③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입품 또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3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한 후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6.21)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21)

③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4-4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27)

④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7.27)

제4-4조의2(원산지 판정)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9.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판정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9.17)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원산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판정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산입 제외는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원산지확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원산지 관계부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원산지심사위원회) 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21)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 통관국장(광주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21)

③ 위원회는 해당 세관 및 산하세관으로부터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1.6.21)

1. 원산지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4.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
 5.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상정할지 여부
 6. 그 밖에 원산지확인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6.21)
-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결정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21)

제5장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제5-1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12.9)

1.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이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 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 경우
 2.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12.9)
 3.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제 원산지국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더라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8에 예시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오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로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 9>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
 2. 오인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 ②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③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지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



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 스티커 등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5-3조(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부적정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제1항의 부적정표시물품에는 별표10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미표시물품의 판정) ①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12.9)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미표시물품에는 별표11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라 함은 원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원산지표시와 관련 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9)

제5-7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수입신고물품 중 원산지표시대상품물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규격 물품을 수입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 법 제248조 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②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동일하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지표시가 동일한 경우로서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침해대상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수출신고물품 중 원상태수출(72)·반송(78)·중계무역(79)·수리검사 재수출(84)·전시박람회 참가 후 재수출(86) 및 계약상이 재수출(93)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장 원산지 위반물품의 처리

제6-1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 규정에 의거 통관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9.17)

③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④(삭제 2010.9.17)

⑤제2항의 규정은 관리대상화물 등 신고 전에 적발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허위표시는 제외), 수입신고 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제6-2조(시정조치 요구) ①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세관장이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 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한 후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각호의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중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1. OECD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 (신설 2008.12.9)

2. 기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신설 2008.12.9)

④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교부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화주의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신고인에게 EDI방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화주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를 전달 하여야 한다.

제6-3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에 대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수정명령(개정 2010. 9.17)

②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단, 제6-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세관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당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당 전산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통관포탈시스템 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의 처리) ①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9.7.27, 2010.9.17)

②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후 선적을 허용한다.

③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6-5조(고발(송치)의뢰) ①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0.9.17)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2. (삭제 2009.7.27)
 3.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 ②(삭제 2009.7.27)
- ③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시 적발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 또는 조사담당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제6-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제6-6조(과징금 부과) ①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개정 2008. 12.9, 2009.7.27)

- ②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09.7.27)
- ③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과징금부과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7.27)

제6-7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 ①세관장이 대외무역법·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입업체 등을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별지 제15호 서식)을 하여 시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월 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9)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당해 의무를 불이행한 때
-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한 당해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한다.
- ⑤검사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⑥보세구역 반입 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표시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통보하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신설 2009.7.27)

제7-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7.27, 개정 2010.9.17, 2011.6.21, 2011.7.7)

부 칙 (제정 고시 제1991-687호, 1991.6.3)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이 되었거나 우리나라로 운송 또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보관 중에 있는 물품은 이 세칙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1994-850호, 1994.1.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 또는 상호 등이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6-8조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이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수출국에서 이미 선적되었거나 우리나라로 운송 또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경우인 때에는 동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명칭개정 고시 제1996-29호, 1996.6.17)

1. 원산지관리세칙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로 명칭 변경한다.
2.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고시 제1997-20호, 1997.5.21)

이 고시는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1999-23호, 1999.6.8)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1-1호, 2001.1.12)

이 고시는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2-17호, 2002.4.24)

이 고시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고시 제2005-11호, 2005. 4.12)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7조와 제6-2조, 제6-3조 중 전산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해당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폐지지침)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원산지표시 방식 및 위반물품처리에 관한지침(통관기획 47215-658호, 2000.7.24)은 폐지한다.

부 칙 (고시 제2006-06호, 2006.1.16)

이 (일괄개정)고시는 고시한 날(2006.1.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6-40호, 2006.9.29)

①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품목별 적정표시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7-20호, 2007. 6. 28)

제1조 ①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6-6조제1항의 과징금은 이 고시의 직전 시행일인 2006년 10월 1일 이후 적발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회수는 적발회수로 계산한다.

부 칙 (고시 제2008-39호, 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2의 품목(수입쇠고기)에 대한 제3-6조 제3항부터 제5항 관련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유통경로 추적관련 전산시스템 운용시까지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별표6의 일반원칙 중 OEM수입식품류의 원산지 한글표시 및 표시크기(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적용)는 수입자 등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 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고시 제2009-26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237호 품목(베어링, 롤러베어링)에 대한 사항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72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2010-119호,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고시 제2011-24호, 2011.6.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고시 제2011-28호, 2011.7.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대외무역법 유권해석사례집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파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내 정보 - 간행물 -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수출입 거래 (무역정책과)	(02) 2110 - 4833
▶ 원산지 관리 (수출입과)	(02) 2110 - 5336
▶ 전락물자 수출입관리 (전락물자관리팀)	(02) 2110 - 5328

본 유권해석 사례집의 내용은 대외무역법과 관련한 개별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써 동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과 공익의 변천 등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의 취지와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유권해석 사례집은 지금까지의 대외무역법령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써 무역업무에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 행 일	2012년 11월
발 행 처	지식경제부
발 행 인	홍석우
편 집 장	한진현
부편집장	이운호
편집간사	윤상흠, 조영태, 주소령
편집위원	박경민, 정동현, 박경숙
디자인 · 제작	나모기획 (02)503-5454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